

#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 저작권 안내서

최진원 \_ 대구대학교



## Q&A

### 이용 상황별 색인

#### 저작권 일반

- Q. 그림 동화책의 삽화를 보여주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경우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5
- Q. 유치원생이 그린 그림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11
- Q.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13
- Q. 지상파 방송에서 볼 수 있는 축구 중계방송도 저작권이 있는지? 19
- Q. 제작비를 지원해 준 사람도 저작자가 될 수 있는지? 20
- Q. 대필, 대작 계약을 한 경우에도 실제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가 될 수 있는지? 20
- Q. 내가 직접 연예인 사진을 찍었다. 저작자가 '나'이므로 마음대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21
- Q. 외국인의 저작물도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는지? 23
- Q. 1인 창작자로 활동하다가 최근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회사에 가입하였다. 이제 회사에 소속되었으니 내가 제작하는 영상들은 MCN 회사가 저작자가 되는 것인지? 25
- Q. 책 뒷면에 ©,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등이 표시된 경우가 많다. 저작권 표시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하라는 의미로 보면 되는지? 28
- Q. 인터넷에 올릴 영상물에 음악을 이용하고 싶다. 이용허락을 받고 합법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작곡가와 작사가에게만 허락받으면 되는가? 52
- Q. 신문기사, 칼럼 등을 보여주면서 소개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려고 한다. 신문기사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허락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는지? 76
- Q. 저작인격권도 신탁관리단체에서 허락받을 수 있는지? 104
- Q. 권리자를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연락주면 언제든지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기재하고 내 연락처를 남겼다. 침해의 의사가 없음을 표현한 것인데, 이 경우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 106



##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는 경우

- Q.** 외국인이 한국 음식을 먹은 뒤 '리액션'을 촬영하고 있다. 내 채널이 유명해지자, 외국인 리액션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는지? **19**
- Q.** 유명 작가가 촬영하여 유명해진 섬을 비슷한 위치에서 촬영하려면, 최초 촬영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57**
- Q.** 자율 감각 쾌락 반응(ASMR) 영상이 유행을 하여, 다른 사람이 한 것과 같은 소재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개발했다. 저작권 문제가 있는지? **59**
- Q.** '먹방'으로 유명한 창작자가 A 식당에 가서 대왕 돈가스를 먹는 방송을 하여 인기를 끌었다. 같은 식당에 가서 같은 메뉴를 먹으면서 개인 방송을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60**
- Q.** 1인 방송에는 다양한 방송 포맷이 있다. 만약 다른 사람의 방송 포맷을 비슷하게 따라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61**
- Q.** 요리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게시하려고 한다. 요리책에 있는 레시피(요리법)를 그대로 따라하여 요리를 만드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62**
- Q.** 최근 건강 관련 콘텐츠, 그 중에서도 헬스나 요가 등 운동 영상이 인기가 많다. 다른 사람의 운동 방법을 참고하여, 내가 운동 순서를 바꿔가면서 촬영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64**
- Q.** 유명한 책이나 TV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목을 유튜브 채널 이름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66**
- Q.** 채널 태그에 유명 채널 이름이나 유튜브 이름 등을 적어 검색이 잘 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내 채널명을 태그에 넣어서 구독자를 유치하는 유튜버를 발견했는데, 방송하는 내용도 먹방으로 나와 동일하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는지? **68**
- Q.** 우리 댄스 팀은 항상 노란색 정장과 빨간색 모자를 쓰고 댄스 공연을 하고 있어서 일종의 상징이 되었다. 그런데 같은 색의 옷과 모자를 쓰고 춤을 추는 영상이 올라왔다. 우리의 독특한 콘셉트를 보고 베낀 것인데,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는지? **140**



## Q&A

### 이용 상황별 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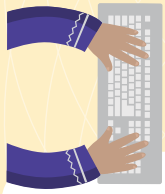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 Q. 북한의 조선중앙TV 영상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것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지? 24
- Q. 신문 기사를 영상물에 이용하고 싶다. 기자에게 허락을 받으면 저작권은 해결된 것인지? 24
- Q. 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를 모아, 교육용 콘텐츠를 만들려고 한다. 시험을 치르고 나온 학생들에게 5천 원씩 주고 문제지를 구입하였다. 그럼에도 시험 문제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한다고 들었다. 출제한 교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26
- Q. 유튜브 영상에 '내가 직접 연주'한 음원을 사용하려고 한다. 내가 직접 연주한 것이니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해도 저작권 문제는 없는지? 52
- Q. 영화의 일부 장면을 이용하고 싶다. 극작가, 촬영 감독, 배우 등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각 허락을 받는 수밖에 없는지? 53
- Q. 일반인이 해외여행을 가서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고 싶다. 사진작가나 전문가의 사진도 아니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사진이므로, 허락 없이 이용해도 되는지? 66
- Q.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모델에게 '비 더 레드(Be the Reds)' 티셔츠를 입고 '비 더 레드(Be the Reds)'가 잘 나오게 촬영하여 그 사진을 판매하려면, 이 도안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는지? 97
- Q.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을 영상에 활용하려고 하는데, 출처만 잘 표기하면 문제가 없는지? 99
- Q. 인터넷에 글자체(폰트) 파일이나 이미지가 공개되어 있다. 이미 무료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것인데, 이를 이용할 때에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109
- Q. 웹툰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으므로 마음대로 퍼가도 문제가 없는지? 109
- Q. 수능 시험 문제나 교과서 등의 해설 영상을 제작하고자 시험 문제와 교과서를 이용하려고 한다. 교육 목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것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는지? 109
- Q. 저작권자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는데, 허락한 것으로 봐도 되는지? 111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수정, 변형해서  
이용하는 경우

- Q. 게임 방송을 하고 있는데, 게임 홍보에도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127
- Q. 영화 리뷰 채널을 운영하면서 최신 개봉작을 소개하고, 스틸컷 이미지를 활용하여 재미있게 편집하여 영화사의 수익 창출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 129
- Q.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글(DC인사이드, 네이트판, 에브리타임, 페이스북 대나무숲 등)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유튜브 동영상으로 만드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 10
- Q. 소위 '짤방'을 만들려고 한다. 기존 영상물과 사진을 편집하여 재미있게 만들려고 하는데, 저작권자의 허락만 받으면 문제없는지? 37
- Q. 책을 읽어 주는 '북튜버'이다. 장편 소설을 요약해서 읽어 주는데, 동일성유지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37
- Q. 영상을 편집하여 새로운 내용의 영상을 만들 때,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았으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밖에 주의할 사항은 없는지? 38
- Q. 기존 드라마의 대사를 바꿔서 새로운 영상물을 만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38
- Q. 기존의 영상에 대사나 노래 제목 등을 자막으로 추가하는 것도 모두 위법한 것인지? 39
- Q. 미국 드라마를 보고 직접 한국어 자막을 만들었다. 내가 번역한 것이므로 자막을 자유롭게 공유해도 되는지? 43
- Q. 책이나 영화를 소개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책과 영화를 구입하여 본 뒤, 이를 요약하여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한다. 원저작물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가급적 본래의 내용 그대로 전달하고자 노력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44
- Q. 기존 저작물을 '참고'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려면, '항상'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44



## Q&A

### 이용 상황별 색인

- Q. 최근 건강 관련 콘텐츠, 그 중에서도 헬스나 요가 등 운동 영상이 인기가 많다. 다른 사람의 운동 방법을 참고하여, 내가 운동 순서를 바꿔가면서 촬영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64
- Q. 유명한 음악을 패러디하여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려고 한다. 패러디이므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지? 90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비상업적, 공익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 Q. 유튜브를 하면서 광고 수익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 비영리 목적이라면 음악, 영상, 소설 등을 이용해도 되는지? 6
- Q.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책을 읽어 주는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게시하려고 한다. 비영리 목적이면 전체를 모두 읽어 주어도 괜찮은지? 6
- Q. 다른 사람의 음악을 편곡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려고 한다. 수익은 전부 기부할 예정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 6
- Q.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를 이용할 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11
- Q. '사회 비평'을 하고자 널리 알려진 영화의 장면들을 이용하는 것도 적합한 패러디인지? 92
- Q. 질병관리본부의 홍보 포스터에 마블 캐릭터가 이용된 것을 보았다. 공익적 목적이면 캐릭터를 허락 없이 이용해도 되는가?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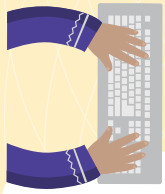
####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

- Q. 지역의 유명한 건물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건물을 촬영해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16
- Q. 표준어 표기법이 바뀌어서 원저작물의 자막을 수정하려고 한다. 이것도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는지? 39
- Q. 취미와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는 전업 창작자이다.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28조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인용'할 수 있는지? 78



- Q.** 개봉 예정 영화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면서 영화 장면을 삽입하였다. 합법 여부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79**
- Q.**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수록 인용·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다. 감상용으로는 쓸 수 없을 정도로 사진의 해상도를 낮추면 인용이나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83**
- Q.** 이용된 분량이 적을수록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85**
- Q.** 5살 아이가 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촬영했다가, 블로그에 영상을 올렸다. 작곡가나 작사가에게 허락을 받지는 않았는데,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86**
- Q.** 텔레비전 방송에 나온 영상을 5분 이내로 사용하려고 한다. 5분 이내의 이용은 공정이용이므로 허락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87**
- Q.**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패러디'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는지? **91**
- Q.** 촬영을 하는 과정에 이순신 장군상이 함께 찍혔다.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94**
- 
- Q.** 베토벤의 교향곡도 저작권이 살아 있는지? **71**
- Q.** 책을 읽어 주는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오래된 책은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읽어 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72**
- Q.**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노래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났을까? **74**
- Q.** 자유이용허락표시(CCL)가 있으면, 항상 영리적으로 이용해도 되는지? **113**
- Q.** 국가의 공공저작물인 것이 분명하нде, 공공누리(KOGL) 마크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는지? **116**
- Q.** 소위 '짤방'에 일본 만화의 이미지를 사용했다가 저작권 문제가 되었다. 이미지를 무료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119**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Q&A

### 이용 상황별 색인

#### 내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 Q.** 인터넷에서 무료 음원 사이트를 찾았다. 편곡 등 변형해서 영리적으로 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120
- Q.** 믿을 수 있는 사이트를 찾고 있는데, 국가·공공기관에서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무료 저작물을 모아 놓은 사이트도 있는지?

121
- Q.** 아프리카TV에서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중계를 하고 있는 비제이(BJ)이다. 축구 중계영상의 저작권 문제를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지금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

124
- Q.** 시, 소설, 동화 등 책을 읽어 주는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게시해도 되는지?

13
- Q.** 연극을 소개하고자 연극 영상을 직접 촬영하여 유튜브에 게시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13
- Q.** 영화 리뷰를 작성할 때 사용하려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촬영했다. 인터넷에 올리지 않더라도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14
- Q.** 아이돌 안무를 따라 추는 댄스커버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15
- Q.** 글자체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경고장을 받았다. 글자체 파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18
- Q.** 유튜브에 그림 그리는 영상을 올리고 있다.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은 후 그 사진을 그대로 따라 그려서 올리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

42
- Q.** 제품 자체를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한 광고 사진도 허락 없이 가져다 쓰면 안 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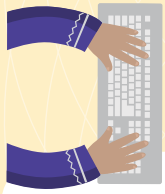
65
- Q.** 옛날 만화 영상(1990년대 말~2000년대 초)을 유튜브에 게시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72

## Q&A 이용 상황별 색인



- Q.** 저작물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개인 방송을 진행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95**
- Q.** 내가 유명 캐릭터를 직접 그려서 이용하는 것은 괜찮은지? **101**
- Q.** 책을 읽어 주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항상 책의 '저자'에게 허락을 받고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무시해도 되는지? **102**
- Q.** 권리자를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연락 주면 언제든지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쓰고 내 연락처를 남겼다. 침해의 의사가 없음을 표현한 것인데, 이 경우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 **106**
- Q.** 개인 채널에서 편파 중계방송을 하고 싶다. 지상파 방송의 야구 중계 영상을 수신하여 내 목소리를 더빙한 뒤 중계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123**
- Q.** 문화방송(MBC)에서 방송하고 있는 음악 프로그램을 해외에서도 볼 수 있도록 아프리카TV로 재송신하였다.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124**
- Q.** 내가 그린 그림과 비슷한 그림을 누군가가 먼저 그렸다면, 나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인지? **138**
- Q.** 유튜브나 아프리카TV의 저작권 필터링에 걸리지 않았으면, 저작권 걱정은 안 해도 되는지? **142**
- Q.**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유튜브에 신고하여 내 영상은 차단되었다. 유튜브로부터 경고도 받았는데, 저작권자가 추가적으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지? **145**
- Q.** 취미로 유튜브에 케이팝(K-Pop) 영상을 올리는 16세 학생이다. 14세가 넘으면 성인과 똑같이 처벌된다고 들었는데, 몇 년 전에 올린 영상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고소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너무 무섭고 두렵다. 나는 이제 교도소에 가게 되는 것인지? **160**



## Q&A

### 이용 상황별 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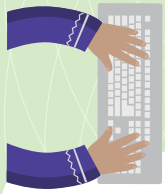
#### 다른 사람이 나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 Q. 내가 만든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저작권 등록을 한 적은 없다. 등록하지 않으면 나에게 저작권이 없는 것인지? 28
- Q.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면, 굳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지? 29
- Q. 4살인 딸이 그린 그림을 게시하였는데, 그 그림을 허락도 없이 캡처해서 사용하는 게시물을 발견했다. 잘 그린 그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양해도 구하지 않고 가져다 쓰는 사람에게 화가 나는데,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136
- Q. 내 동영상의 일부를 잘라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서 게시하고 있다. 이 사람들에게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할 수 있는지? 137
- Q. 영화 하이라이트를 편집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영화사로부터 저작권 경고를 받아 영상을 내린 상태이다. 그런데 내가 편집하여 올렸던 하이라이트 영상을 무단 게시한 사람을 발견했다. 나도 내가 편집한 영상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137
- Q. 내 창작물을 무단 도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144
- Q. 수없이 많은 영상물이 인터넷에 올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단 사용한 사례를 찾아내고 또 일일이 신고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사전에 플랫폼 사업자에게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147
- Q. 민사소송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할 수 있는지? 150
- Q. 내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154
- Q. 내 저작물이 유튜브에서 무단 공유되고 있는데, 게시자를 찾아서 고소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힘든 것 같다. 유튜브에서 불법 저작물이 공유되고 있고, 유튜브는 광고 수익의 많은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데 유튜브를 고소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 158
- Q. 아프리카TV에서 '가짜 뉴스'로 나를 비난하는 내용의 방송을 발견했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는지? 159



## 기타 사항

- Q.** 텔레비전에 소개된 식당을 찾아가 먹방을 진행하는데, 식당 주인이 장사에 방해된다며 촬영을 거부한다. 개인 방송을 강행하면 안 되는지? **22**
- Q.** 저작권을 넘기면서 저작권격권도 함께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저작물에 내 이름을 표시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33**
- Q.** 내가 작곡한 노래를 이용하도록 허락했다. 계약서에 적지는 못했는데, 내 이름을 적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 만약, 대가를 받고 허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35**
- Q.** 음악저작물을 배경 음악(BGM)으로 이용하도록 허락받았다. 창작자의 이름을 표시해 주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편곡자의 이름도 적어야 하는지? **35**
- Q.** 케이팝(K-Pop) 캠방을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격권에 따라 노래의 작곡가, 작사가를 적고 있는데, 가수나 연주자 이름도 적어야 하는지? **50**
- Q.** 그룹 퀸(Queen)의 보헤미안 랍소디(Bohemian Rhapsody)는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나? **73**
- Q.** 인터넷에서 '펌글'한 경우, 출처 명시는 사이트 주소를 적어 두는 정도로 하면 되는지? **92**
- Q.** 내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광고 수익의 일부를 유튜브가 가져가고 있는데,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대가로 받아 가는 것인지? **123**
- Q.**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있는 오디오 라이브러리 음원을 이용하여 만든 영상을 페이스북에도 올리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131**
- Q.**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 없는 음원을 허락 없이 이용하면 모두 차단되는지? **132**
- Q.** '해피 잉글리시(Happy English)'라는 영어 교육 관련 콘텐츠를 창작하고 있다. 나름 인지도를 쌓아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이름으로 블로그를 만들었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는지? 혹은 저작권 등록을 한다면 유리한지? **140**
- Q.** 공정이용에 해당하는데 저작권 침해라고 내 영상물이 잘못 차단되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148**
- Q.** 2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게시했는데 그 중 10여초 정도 침해 저작물이 사용되었다고 영상 전체가 차단되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149**



## Q&A

### 저작물유형별 색인

#### 어문저작물과 관계된 경우

소설, 시, 시험 문제,  
뉴스 기사,  
인터넷 게시물,  
강연, 연설 등

- Q.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책을 읽어 주는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게시하려고 한다. 비영리 목적이면 전체를 모두 읽어 주어도 괜찮은지? 6
- Q.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물(DC인사이드, 네이트판, 에브리타임, 페이스북 대나무숲 등)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유튜브 동영상으로 만드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 10
- Q.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를 이용할 때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11
- Q. 시, 소설, 동화 등 책을 읽어 주는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게시해도 되는지? 13
- Q. 신문 기사를 영상물에 이용하고 싶다. 기자에게 허락을 받으면 저작권은 해결된 것인지? 24
- Q. 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를 모아, 교육용 콘텐츠를 만들려고 한다. 시험을 치르고 나온 학생들에게 5천 원씩 주고 문제지를 구입하였다. 그럼에도 시험 문제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한다고 들었다. 출제한 교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26
- Q. 책을 읽어 주는 '북튜버'이다. 장편 소설을 요약해서 읽어 주는데, 동일성유지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37
- Q. 기존 드라마의 대사를 바꿔서 새로운 영상물을 만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38
- Q. 책을 읽어 주는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오래된 책은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 헌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읽어 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72
- Q. 신문 기사, 칼럼 등을 보여주면서 소개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려고 한다. 신문기사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허락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는지? 76
- Q. 책을 읽어 주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항상 책의 '저자'에게 허락을 받고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무시해도 되는지? 102
- Q. 수능 시험 문제나 교과서 등의 해설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와 교과서를 이용하려고 한다. 교육 목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것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는지? 109



## 음악저작물과 관계된 경우

음원, 노래 가사,  
커버, 연주,  
효과음 등

- Q. 다른 사람의 음악을 편곡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려고 한다. 수익을 전부 기부할 예정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 6
- Q. 내가 작곡한 노래를 이용하도록 허락했다. 계약서에 적지는 못했는데, 내 이름을 적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 만약, 대가를 받고 허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35
- Q. 음악저작물을 배경 음악(BGM)으로 이용하도록 허락받았다. 창작자의 이름을 표시해 주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편곡자의 이름도 적어야 하는지? 35
- Q. 케이팝(K-Pop)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격권에 따라 노래의 작곡가, 작사가를 적고 있는데, 가수나 연주자 이름도 적어야 하는지? 50
- Q. 인터넷에 올릴 영상물에 음악을 이용하고 싶다. 이용허락을 받고 합법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작곡가와 작사가에게만 허락받으면 되는가? 52
- Q. 유튜브 영상에 '내가 직접 연주'한 음원을 사용하려고 한다. 내가 직접 연주한 것이니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해도 저작권 문제는 없는지? 52
- Q. 베토벤의 교향곡도 저작권이 살아 있는지? 71
- Q. 그룹 퀸(Queen)의 보헤미안 랍소디(Bohemian Rhapsody)는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나? 73
- Q.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노래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났을까? 74
- Q. 5살 아이가 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촬영했다가, 블로그에 영상을 올렸다. 작곡가나 작사가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는데,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86
- Q. 유명한 음악을 패러디하여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려고 한다. 패러디이므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지? 90
- Q. 인터넷에서 무료 음원 사이트를 찾았다. 편곡 등 변형해서 영리적으로 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120
- Q.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있는 오디오 라이브러리 음원을 이용하여 만든 영상을 페이스북에도 올리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131
- Q.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 없는 음원을 허락 없이 이용하면 모두 차단되는지? 132



## Q&A

### 저작물유형별 색인

#### 미술저작물과 관계된 경우

동상, 조각, 그림,  
서예, 캐릭터, 만화,  
웹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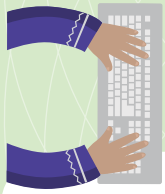
- Q. 그림 동화책의 삽화를 보여주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경우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5
- Q. 유치원생이 그린 그림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11
- Q. 유튜브에 그림 그리는 영상을 올리고 있다.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은 후 그 사진을 그대로 따라 그려서 올리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 42
- Q. 촬영을 하는 과정에 이순신 장군상이 함께 찍혔다.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94
- Q. 저작물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개인 방송을 진행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95
- Q.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모델에게 '비 더 레드(Be the Reds)' 티셔츠를 입히고 '비 더 레드(Be the Reds)' 글자가 잘 나오게 촬영하여 그 사진을 판매하려면, 이 도안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는지? 97
- Q. 질병관리본부의 홍보 포스터에 마블 캐릭터가 이용된 것을 보았다. 공익적 목적이면 캐릭터를 허락 없이 이용해도 되는가? 100
- Q. 내가 유명 캐릭터를 직접 그려서 이용하는 것은 괜찮은지? 101
- Q. 웹툰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으므로 마음대로 퍼가도 문제가 없는지? 109
- Q. 소위 '짤방'에 일본 만화의 이미지를 사용했다가 저작권 문제가 되었다. 이미지를 무료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119
- Q. 4살인 딸이 그린 그림을 게시하였는데, 그 그림을 허락도 없이 캡처해서 사용하는 게시물을 발견했다. 잘 그린 그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양해도 구하지 않고 가져다 쓰는 사람에게 화가 나는데,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136
- Q. 내가 그린 그림과 비슷한 그림을 누군가가 먼저 그렸다면, 나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인지? 138



## 사진저작물과 관계된 경우

작품 사진,  
광고 사진,  
제품 사진,  
여행 사진,  
일상 사진,  
음식 사진,  
스마트폰 사진 등

- Q.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13
- Q. 내가 직접 연예인 사진을 찍었다. 저작자가 '나'이므로 마음대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21
- Q. 유명 작가가 촬영하여 유명해진 섬을 비슷한 위치에서 촬영하려면, 최초 촬영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57
- Q. 제품 자체를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한 광고 사진도 허락 없이 가져다 쓰면 안 되는지? 65
- Q. 일반인이 해외여행을 가서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고 싶다. 사진작가나 전문가의 사진도 아니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사진이므로, 허락 없이 이용해도 되는지? 66
- Q.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수록 인용·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다. 감상용으로는 쓸 수 없을 정도로 사진의 해상도를 낮추면 인용이나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83
- Q.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을 영상에 활용하려고 하는데, 출처만 잘 표기하면 문제가 없는지? 99
- Q. 인터넷에 글자체(폰트) 파일이나 이미지가 공개되어 있다. 이미 무료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것인데, 이를 이용할 때에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109
- Q. 믿을 수 있는 사이트를 찾고 있는데, 국가·공공기관에서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무료 저작물을 모아 놓은 사이트도 있는지? 121



## Q&A

### 저작물유형별 색인

#### 영상저작물과 관계된 경우

영화, 드라마,  
TV프로그램,  
애니메이션,  
스포츠 중계,  
게임 중계, 직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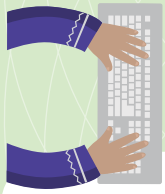
- Q. 영화 리뷰를 작성할 때 사용하려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촬영했다. 인터넷에 올리지 않더라도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14
- Q. 지상파 방송에서 볼 수 있는 축구 중계방송도 저작권이 있는지? 19
- Q. 북한의 조선중앙TV 영상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것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지? 24
- Q. 1인 창작자로 활동하다가 최근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회사에 가입하였다. 이제 회사에 소속되었으니 내가 제작하는 영상들은 MCN 회사가 저작자가 되는 것인지? 25
- Q. 허락 받고 강연을 녹화하였다. 영상물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20분짜리 강연을 5분으로 줄이고, 강연 내용 중 일부의 배열을 바꿨다. 이런 것도 저작권법에 문제가 되는가? 36
- Q. 영상을 편집하여 새로운 내용의 영상을 만들 때,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았으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밖에 주의할 사항은 없는지? 38
- Q. 기존의 영상에 대사나 노래 제목 등을 자막으로 추가하는 것도 모두 위법한 것인지? 39
- Q. 영화의 일부 장면을 이용하고 싶다. 극작가, 촬영 감독, 배우 등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각 허락을 받는 수밖에 없는지? 53
- Q. 옛날 만화 영상(1990년대 말~2000년대 초)을 유튜브에 게시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72
- Q. 개봉 예정 영화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면서 영화 장면을 삽입하였다. 합법 여부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79
- Q. 텔레비전 방송에 나온 영상을 5분 이내로 사용하려고 한다. 5분 이내의 이용은 공정이용이므로 허락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87
- Q. 개인 채널에서 편파 중계방송을 하고 싶다. 지상파 방송의 야구 중계 영상을 수신하여 내 목소리를 더빙한 뒤 중계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123
- Q. 문화방송(MBC)에서 방송하고 있는 음악 프로그램을 해외에서도 볼 수 있도록 아프리카TV로 재송신하였다.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124



- Q.** 아프리카TV에서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중계를 하고 있는 비제이(BJ)이다. 축구 중계영상의 저작권 문제를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지금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 **124**
- Q.** 게임 방송을 하고 있는데, 게임 홍보에도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127**
- Q.** 영화 리뷰 채널을 운영하면서 최신 개봉작을 소개하고, 스틸컷 이미지를 활용하여 재미있게 편집하여 영화사의 수익 창출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 **129**
- Q.** 취미로 유튜브에 케이팝(K-Pop) 영상을 올리는 16세 학생이다. 14세가 넘으면 성인과 똑같이 처벌된다고 들었는데, 몇 년 전에 올린 영상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고소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너무 무섭고 두렵다. 나는 이제 교도소에 가게 되는 것인지? **160**
- 
- Q.** 다른 사람의 음악을 편곡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려고 한다. 수익을 전부 기부할 예정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 **6**
- Q.** 소위 '짤방'을 만들려고 한다. 기존 영상물과 사진을 편집하여 재미있게 만들려고 하는데, 저작권자의 허락만 받으면 문제없는지? **37**
- Q.** 미국 드라마를 보고 직접 한국어 자막을 만들었다. 내가 번역한 것이므로 자막을 자유롭게 공유해도 되는지? **43**
- Q.** 기존 저작물을 '참고'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려면, '항상'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44**
- Q.** '사회 비평'을 하고자 널리 알려진 영화의 장면들을 이용하는 것도 적법한 패러디인지? **92**
- Q.** 인터넷에서 무료 음원 사이트를 찾았다. 편곡 등 변형해서 영리적으로 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120**

## 2차적저작물의 작성과 관계된 경우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화 등



## Q&A

### 저작물유형별 색인

- Q.** 개인 채널에서 편파 중계방송을 하고 싶다. 지상파방송의 중계 영상을 수신하여 내 목소리를 더빙한 뒤 중계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123
- Q.** 책이나 영화를 소개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책과 영화를 구입하여 본 뒤, 이를 요약하여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한다. 원저작물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가급적 본래의 내용 그대로 전달하고자 노력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141

## 기타 다른 유형의 저작물과 관계된 경우

연극저작물,  
건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

- Q.** 연극을 소개하고자 연극 영상을 직접 촬영하여 유튜브에 게시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13
- Q.** 아이돌 안무를 따라 추는 댄스커버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15
- Q.** 지역의 유명한 건물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건물을 촬영해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16
- Q.** 글자체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경고장을 받았다. 글자체 파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18
- Q.** 우리 댄스 팀은 항상 노란색 정장과 빨간색 모자를 쓰고 댄스 공연을 하고 있어서 일종의 상징이 되었다. 그런데 같은 색의 옷과 모자를 쓰고 춤을 추는 영상이 올라왔다. 우리의 독특한 콘셉트를 보고 베낀 것인데,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는지?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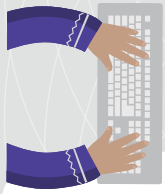


## 제 1 장      저작권, 왜 알아야 하나요 ..... 1

- 가. 저작권 - 창작자의 친구 ..... 2
- 나. 1인 미디어의 '필수 지식' - 저작권 ..... 4
- 다. 인터넷에 저작물을 올릴 때는 저작권 확인 ..... 5

## 제 2 장      저작권 제도의 개요 ..... 7

- ▶ 10분 만에 저작권 이해하기
- 가. 저작권 ..... 8
  - 1) 저작물 ..... 9
    - 가) 저작물의 개념 ..... 9
    - 나) 저작물의 종류 ..... 12
  - 2) 창작한 자에게 ..... 19
    - 가) 창작자 = 저작자 ..... 19
    - 나) 업무상저작물 ..... 24
  - 3) 권리를 준다 [저작권] ..... 28
    - 가) 무방식주의와 저작권 등록 ..... 28
    - 나) 저작자의 권리 ..... 33
- 나. 저작인접권과 제작자(투자자) 보호 ..... 48
  - 1) 창작자도 아닌데 권리가 있다? ..... 48
  - 2) 어떤 권리가 있는가 ..... 48
    - 가) 저작인접권의 내용 ..... 48
    - 나) 보호기간, 제한·양도·이용허락·권리소멸·등록 ..... 50
  - 3) 저작인접권자에게 허락 받기 ..... 51
  - 4) 투자 보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영상제작자 ..... 52
    - 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53
    - 나) 영상제작자 ..... 53



제 3 장

창작을 위해 ‘저작물’을 최대한 활용하자..... 55

가. 저작물 이용을 위한 확인 목록 ..... 56

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 57

- 1) ‘저작물’이 아니라면 마음대로 이용하세요 ..... 57
  - 가)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아요 ..... 57
  - 나) ‘창작성이 없는’ 표현도 보호받지 못한다 ..... 65
- 2) 저작물 중에도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이 있어요 ..... 70
  - 가) 오래된 저작물: 보호기간 만료 ..... 70
  - 나) 법령, 판결 등은 마음대로 가져다 쓰세요 ..... 76

다.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경우 ..... 77

- 1) 인용, 공정이용 ..... 77
  - 가) 인용의 요건 ..... 77
  - 나) 공정이용 일반 조항 신설 ..... 81
  - 다) 인용·공정이용 확률 높이기 ..... 82
  - 라) 출처 표시는 잊지 마세요 ..... 92
- 2) 영상에 함께 찍히는 저작물들 ..... 93
  - 가) 거리의 건축물·조각상 (파노라마의 자유) ..... 93
  - 나) 배경에 ‘그림 하나’: 부수적 이용 ..... 95

라. 허락 받고 이용하기 ..... 99

- 1) 저작권자에게 허락 받기 ..... 99
  - 가) 사전 허락의 원칙 ..... 99
  - 나) 권리자를 찾아라: 권리자 탐색 방법 ..... 101
  - 다) 조건 협의와 계약 체결 ..... 107

# CONTENTS



- 2) 미리 허락 의사를 밝힌 ‘고마운 사람들’ ..... 108
  - 가) 저작권자가 미리 허락의 의사를 밝힌 경우 ..... 108
  - 나) 자유이용허락표시(CCL), 공공누리(KOGL) ..... 112
  - 다) 저작권 포기/기증 ..... 116
  - 라) 무료 저작물의 보고를 찾아서 ..... 118
- 3) 저작권 문제를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들 ..... 122
  - 가) 스포츠 중계방송 등 방송 프로그램 ..... 123
  - 나) 게임 영상, 게임 방송 ..... 127
  - 다) 음악저작물의 이용 ..... 129
  - 라)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의 글자체 파일, 이미지 등 저작권 지원... 133

## 제 4 장

### 내 저작물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쓰네요 ..... 135

#### 가. 내 저작권이 침해되었어요 ..... 136

- 1) 나도 권리자 ..... 136
- 2) 침해당한 게 맞나: 의거 + 실질적 유사성 ..... 137
  - 가) 의거: 내 것을 ‘보고’ 빼졌어요 ..... 137
  - 나) 실질적 유사성 ..... 139
- 3) 침해 여부를 유튜브가 판단해 주나요 ..... 142

#### 나. 이렇게 대응하세요 ..... 143

-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게시 중단 요청 ..... 145
- 2) 민사: 침해정지(예방), 손해배상청구 ..... 149
- 3) 형사 고소 ..... 154
- 4) 소송까진 부담스러운데: 조정 ..... 161

#### 다. 분쟁의 예방 - 교육, 저작권상담센터 ..... 162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 제1장 저작권, 왜 알아야 하나요

가. 저작권 - 창작자의 친구

나. 1인 미디어의 '필수 지식' - 저작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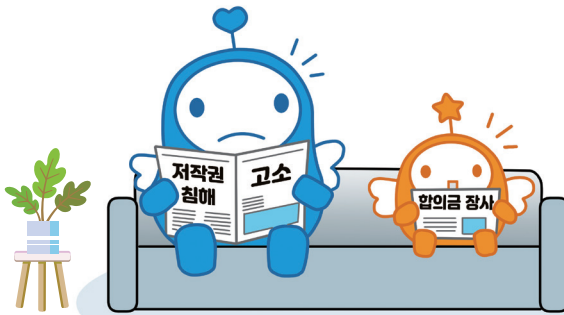
다. 인터넷에 저작물을 올릴 때는 저작권 확인



## 제1장

# 저작권, 왜 알아야 하나요

### 가. 저작권 - 창작자의 친구



“저작권 고소, 합의금 장사, 저파라치……”. 저작권 연관 검색어의 모습은 범죄자, 도둑 등 **부정적 표현**으로 가득하다. 저작권 때문에 창작이 어렵다는 푸념도 들려온다.

하지만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 저작권 제도는 ‘권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방패인 동시에,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며 창작을 장려하는 고마운 존재이다. 창작을 하는 순간에도, 내 창작물을 보호 받는 순간에도 항상 **나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가 된다.

## 저작권법이 두려운 것은, 단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작권법 제1조에서는 권리 보호와 이용도모를 통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최종 목적으로 함을 선언하고 있다.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며 문화를 발전시키는 **창작자들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제도**이다. 즉, 창작을 하려고 기존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도 제3장 내 창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항의할 때에도 제4장, 저작권법은 항상 나에게 힘이 되는 존재이다.

### 저작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법의 목적

## 나. 1인 미디어의 '필수 지식' - 저작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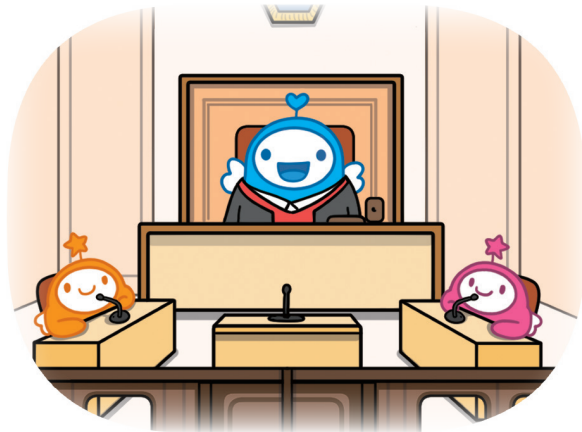
창작자가 바로 '출판사'이자 '방송국'입니다.

저작권도 '출판사나 방송사만큼' 알아야만 합니다.

저작권법은 개인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 서점에서 책을 사는 독자나, 텔레비전을 보는 시청자가 저작권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때문에 과거 **저작권법은 출판사나 신문사, 방송사 등 극소수만 관심을 가져도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저작물의 복제·전달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출판사나 방송사가 하던 일들을 이제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시각에서 보면 이들도 출판, 방송에서 문제되는 저작권 분쟁의 요소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출판사나 방송사 등의 대중 매체를 다루는 기업은 고소, 고발 등의 수많은 법정 분쟁을 거치며 저작권의 이해를 넓혀 왔다. 반면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은 경험이 적고 저작권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여 이의 인식이 부족하다. 저작권 침해는 돈을 물어 준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질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에는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가 가능하다. [\[저작권법 제140조\]](#)



## 다. 인터넷에 저작물을 올릴 때는 저작권 확인

저작물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영리, 공익적 목적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이용할 때 항상 허락을 받으라는 제도는 아니다. 혼자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경우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설령 불법 복제된 책이거나 음원이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하거나 공연·방송, 전송 등 전달하는 경우에는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림 동화책의 삽화를 보여주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경우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O**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 저작물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 동화책의 삽화도 저작물이며, 이를 영상으로 촬영(복제)하여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에 저작물을 올리는 경우 사전에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비영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인터넷에 개봉 중인 영화 파일이나 만화책 스캔 파일이 마구 돌아다니한다고 생각해 보라.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돈을 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

▶▶▶ **참고** 종종 교육 목적, 연구 목적 등 좋은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역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저작권 처리가 필요한 것이다.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는 [\[제3장 다. 1\]](#) 참조.



유튜브를 하면서 광고 수익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 비영리 목적이라면 음악, 영상, 소설 등을 이용해도 되는지?

**X** 비영리적인 이용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가 자유이용허락표시(CCL)와 같이 미리 허락의 의사를 밝혀 놓은 경우에는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저작물의 일부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용·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제3장 다. 1) 참조]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책을 읽어주는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게시하려고 한다. 비영리 목적이면 전체를 읽어 주어도 괜찮은지?

**X** 비영리·공익적 목적이어도 인터넷으로 저작물을 전송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각 장애인을 위해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만 가능한데,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에서 책을 읽어 주는 창작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

-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 ②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른 사람의 음악을 편곡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려고 한다. 수익을 전부 기부할 예정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

**X** 수익금을 좋은 곳에 쓴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 제2장

# 저작권 제도의 개요

### 가. 저작권

- 1) 저작물
- 2) 창작한 자에게
- 3) 권리를 준다 [저작권]

### 나. 저작인접권과 제작자(투자자) 보호

- 1) 창작자도 아닌데 권리가 있다?
- 2) 어떤 권리가 있는가
- 3) 저작인접권자에게 허락 받기
- 4) 투자 보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영상제작자



## 제2장

# 저작권 제도의 개요

10분 만에 저작권 이해하기

저작권 분쟁은 '재수가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상식이 된 저작권법을 모르고 살면, 저작권 분쟁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창작자라면 저작권 제도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을 모르고 1인 미디어에 콘텐츠를 올리면 저작권 분쟁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 저작권 제도의 큰 틀을 알면 그 내용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 가. 저작권

저작권, 어렵지 않아요.

Ⓐ저작물을 Ⓑ창작한 자[저작자]에게 Ⓒ권리[저작권인격권/저작권재산권]를 주는 제도

저작권 제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저작물을 Ⓑ창작한 자[저작자]에게 Ⓒ권리[저작권인격권/저작권재산권]를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누가 저작(권)자이며, 그 권리가 무엇인지만 알면, 이용자 입장에서 “어떤 경우에,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를, 권리자 입장에서 “어디까지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인지”를 알 수 있다.

☑ 저작권 보호의 체계<sup>1)</sup>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	보호의 제한과 예외	저작인접권자	권리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문저작물</li> <li>음악저작물</li> <li>연극저작물</li> <li>미술저작물</li> <li>건축저작물</li> <li>사진저작물</li> <li>영상저작물</li> <li>도형저작물</li> <li>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li> <li>2차적저작물</li> <li>편집저작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가</li> <li>- 작사·작곡가</li> <li>- 디자이너</li> <li>- 화가</li> <li>- 사진사</li> <li>- 설계사</li> <li>- 안무가</li> <li>- 프로그래머 등</li> </ul> </li> <li>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li> <li>- 기업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작인격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표권</li> <li>- 성명표시권</li> <li>- 동일성유지권</li> </ul> </li> <li>저작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제권</li> <li>- 배포권</li> <li>- 대여권</li> <li>- 공연권</li> <li>- 공중송신권</li> <li>- 전시권</li> <li>- 2차적저작물 작성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호기간</li> <li>아이디어/ 표현 이분법</li> <li>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li> <li>법정 허락</li> <li>저작재산권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목적 복제</li> <li>- 사적복제</li> <li>- 도서관에서의 복제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연자</li> <li>음반제작자</li> <li>방송사업자</li> </ul> <p><b>기타권리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데이터베이스 제작자</li> <li>출판권자</li> <li>프로그램배타적 발행권자</li> <li>영상물제작자</li> </ul> <p><b>저작권위탁관리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탁관리업</li> <li>대리중개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사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해배상</li> <li>- 금지명령</li> </ul> </li> <li>형사구제</li> </ul>

1) 저작물

가) 저작물의 개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어문, 음악, 사진이라고 하여 모두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② **표현한** ③ **창작물**이어야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된다.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사실이나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되지 않는다.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흔한 표현도 저작물이 아니다. 법원은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눈으로 확인하세요.” 등은 저작물이 아니라고 하였다.

1)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 31면.

또한 저작물성 여부를 판단할 때 저작자의 나이, 예술성이나 경제적 가치 등은 상관이 없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글(DC인사이드, 네이트판, 에브리타임, 페이스북 대나무숲 등)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유튜브 동영상으로 만드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

**O**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글도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얼마든지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이외수 선생님의 트위터 글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 이에 트위터 단문 54개를 모아 ‘이외수 어록 24억짜리 언어의 연금술’이라는 전자책 파일로 무단 이용한 출판사에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트위터 글이 140자 제한이 있는 짧은 글이지만 이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형사벌을 부과한 것이다.

‘이외수 어록 24억짜리 언어의 연금술’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3노822 판결>

"일반적으로 트윗 글은 140자 이내라는 제한이 있고 신변잡기적인 일상적 표현도 많으며, 문제된 이 사건 트윗 글 중에도 문구가 짧고 의미가 단순한 것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외수의 그러한 트윗 글조차도 짧은 글귀 속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표현이나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고 약자들의 아픔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각 글귀마다 이외수 특유의 함축적이면서도 역설적인 문체가 사용되어 그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이외수의 트윗 글은 전체적으로 이외수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글로서 저작물이라 보는 것이 옳다."



유치원생이 그린 그림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 당연히 어린이도 창작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는다. 또한 예술적 가치 또는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작물로 인정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를 이용할 때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 교과서도 당연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도8981 판결). 교과서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의 범위가 제한된다거나 그 저작권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에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대책의 하나로 추진한 EBS '교과서 과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도 교육부는 교과서 출판사들과 저작권 협상에 나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수록된 저작물의 권리자뿐만 아니라, 교과서 집필자 등 교과서의 저작권자에게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저작권 제도의 개요



EBS 교과서 진도 특강

교과서의 저작권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도8981 판결>

저작물이 교과용 도서인 경우 그러한 사정을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인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교과서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의 범위가 제한된다거나 그 저작권에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나)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9가지 저작물의 종류를 예시하고 있다.

말 그대로 예시(例示)이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저작물성(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 갖춘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연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O**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종류에서 사진저작물을 언급하고 있다. 물론 사진 중에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경우에만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것이지만, 전문가가 아닌 어린이가 특수 장비 없이 예컨대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도 대부분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법원은 보호받는 사진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시, 소설, 동화 등 책을 읽어 주는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게시해도 되는지?**

**X** 시, 소설, 동화 등 책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며**, 이를 읽어 주는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게시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연극을 소개하고자 연극 영상을 ‘직접 촬영’하여 유튜브에 게시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O** 연극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연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연극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다. 내가 직접 연극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연극저작물을 복제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촬영하여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소개를 하려고 최소한의 분량만 이용하는 것은 인용 등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 [제3장 다. 1) 인용, 공정이용 참조]



뮤지컬 '맘마미아' 직캠 영상<sup>2)</sup>



뮤지컬 랭보 직캠 영상<sup>3)</sup>

## Q

영화 리뷰를 작성할 때 사용하려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촬영했다. 인터넷에 올리지 않더라도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O** 영화의 경우 소위 도촬(도둑촬영)<sup>4)</sup> 금지 규정이라고 하는 특별한 조문이 2011년 신설되었다. 유튜브에 올리지 않더라도, 극장에서 영화를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적 행위가 되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2) GGu3net, "160223 뮤지컬 맘마미아 프레스콜 머니머니머니 서현 직캠 Musical Mammamia Money Money Money Seohyun fancam", <<https://www.youtube.com/watch?v=dPzvaR5VxA8>>

3) PlayDB, "[플디IN직캠] 뮤지컬 '랭보' 프레스콜 박영수 편", <<https://www.youtube.com/watch?v=8zBehCstE9Q>>

4) '도둑 촬영'을 줄여 부르는 말로 상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촬영을 의미한다.

저작권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 36. “영화상영관등”이란 영화상영관, 시사회장, 그 밖에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자에 의하여 입장이 통제되는 장소를 말한다.



아이돌 안무를 따라 추는 ‘댄스커버<sup>5)</sup>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오** 유튜브에 댄스커버 영상을 올릴 때는 안무 저작권도 주의해야 한다. 안무 역시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에 속하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실제로 걸 그룹 시크릿의 ‘샤이보이’ 안무가 법원에서 저작물성을 인정받았다. 방송 댄스를 가르치는 ○○학원이 4인조 여성 그룹 ‘시크릿’의 ‘샤이보이’ 안무를 이용한 교육 장면을 촬영해 해당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에 해당 안무가는 댄스 학원 측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샤이보이’의 안무를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인정했고 ○○학원에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렸다.

샤이보이 안무의 저작물성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나104668 판결)

이 사건 안무에 사용된 각종 동작의 요소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면 각종 댄스장르의 전형적인 춤 동작, 그리고 이미 공개된 여러 춤에서 발견되는 특징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이 사건 안무는 '노래의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 가사 진행에 맞게 종합적으로

5) ‘커버(cover)’란 음악 분야에서 이미 발표되었던 노래를 다른 음악가가 다시 연주하거나 재녹음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댄스커버’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안무, 춤 등을 따라서 추는 것을 말한다.

재구성된 것이고, 4인조 여성 그룹 구성원의 각자 역할(랩, 노래, 춤 등)에 맞게 춤의 방식과 동선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존에 알려진 다양한 춤 동작도 악곡의 느낌에 맞게 상당한 창조적 변형이 이루어졌고, 각 춤 동작들이 곡의 흐름에 맞게 완결되어 이 사건 안무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안무는 전문 안무가인 원고가 노래에 맞게 소녀들에게 적합한 일련의 신체적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배열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지역의 유명한 건물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건물을 촬영'해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Q** 저작권법 제4조에서는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과 같이 건축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종류로 예시하고 있다. 독특한 형상의 건축물이면 건축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파주 헤이리 '유브이하우스' 사건에서 법원은 '유브이하우스'의 모양, 공간 및 각종 구성 부분의 배치와 조합 등을 보면, 위 '유브이하우스'가 '고도의 미적 창작성을 갖춘 건축저작물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12. 선고 2006가단208142 판결).

하지만 건축저작물이라고 하여, 이를 촬영하는 것이 모두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위의 파주 헤이리 '유브이하우스' 사건은 국민은행의 프라이빗 बैं킹 '골드 앤드 와이즈(Gold & Wise)' 광고에 '유브이하우스'란 건물이 배경으로 나온 것이 문제된 사안이었다. 그런데 저작권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로 끝나 법원의 입장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TV 광고의 배경으로 등장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저작권'을 인정해, 광고제작사 측이 저작권자인 건축가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라고 보도하였으나, 법원이 저작권 침해로 판결한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은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향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락없이도 촬영하여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촬영 중에 뒤에 흐릿하게 건축저작물이 함께 찍힌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브이하우스’ 사건도 1심에서는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 참고 ▶▶▶ 반면 해당 건축저작물이나 조각상 등을 엮서로 만들어 파는 경우라면 곤란하다.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3장 다. 2] 참조



‘골드 앤드 와이즈(Gold & Wise)’ 광고



파주 헤이리 ‘유브이하우스’

### 저작권법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글자체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경고장을 받았다. 글자체 파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오** 컴퓨터 등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 글자체를 디지털화한 글자체 파일('궁서체.TTF', '고딕체.OTF' 같은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된다.

법원은 글자체 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호된다는 입장이다. 즉 글자체 파일도 저작권법 제4조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허락받지 않고 유료 글자체 파일을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질 수 있다.

글자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 폰트 파일의 소스코드는……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폰트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



**도움말**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책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접속 후, [자료] - [발간자료] - [조사·연구] 게시판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지상파 방송에서 볼 수 있는 '축구 중계방송'도 저작권이 있는지?

**O**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 [상세한 사항은 제3장 라. 3) 참조]  
 다수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을 하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편집하며 중요 장면은 느린 화면도 보여준다. 여기에 캐스터·해설자의 목소리도 들어간다. 방송 중계 영상은 엄연히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영상저작물'이다.

따라서 지상파에서 방송되는 축구 중계방송을 개인 채널로 무단 재송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크다. 축구 영상을 만들면서 월드컵 경기 등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2) 창작한 자에게

가) 창작자 = 저작자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며, 저작권을 가진다. 이처럼 창작한 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을 '창작자주의'라고 한다.

따라서 자료를 수집해 준 사람이나, 제작비를 지원해준 건축 의뢰자, 그림 주문자 등은 저작자가 아니다. 또한 소위 대필 계약을 하여 '책 표지에 자신의 이름을 저작자로 적어 넣기로 실제 창작자와 합의한 자'도 저작자가 될 수 없다.



외국인이 한국 음식을 먹은 뒤 '리액션'을 촬영하고 있다. 내 채널이 유명해지자, 외국인 리액션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는지?

**X**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이다.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 저작자가 창작을 하도록 영감을 제공한 자, 조수·감수·교열자 역시 '저작자'가 아니다.

법원은 해양정책론 사건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해양정책론 사건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사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제작비를 지원해 준 사람’도 저작자가 될 수 있는지?

**X** ‘저작물’을 실제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가 된다(창작자주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자료를 수집 또는 교정, 교열을 도와주는 사람은 저작자가 아니다.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작비를 지원한 사람도 저작자가 아니다. 그림을 주문하거나 건축을 의뢰한 사람도 저작자가 아니다.

제작비를 지원한 투자자는 저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계약을 하여’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때에도 ‘저작자’는 여전히 창작자이지 투자자는 아니다.



### ‘대필, 대작 계약’을 한 경우에도 실제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가 될 수 있는지?

**O** 이 경우에도 ‘실제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이다. 계약서를 작성하여 저작자의 지위를 양도하고 자신이 저작자임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경우에도[대작(代作) 계약], 창작하지 않은 사람이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료 수집을 도왔거나 집필 비용을 지불한 사람, 아이디어를 제공한 경우에도 자신이 실제로 집필하지

않았다면 저작자가 될 수는 없다.

▶▶▶▶ **참고** 하지만 창작하지 않은 사람도 계약을 하여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 즉 저작자가 항상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이 양도, 상속되는 경우 등 [제3장 라. 1) 나] 권리자를 찾아라 : 권리자 탐색 방법 참조] 돈으로 '저작자'가 될 수는 없지만, '저작권자'는 될 수 있는 셈이다. 저작권을 양도 받으면 저작권자가 되기 때문이다.

## Q

**내가 직접 연예인 사진을 찍었다. 저작자가 '나'이므로 마음대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X** 연예인 사진을 내가 직접 촬영했다면, 해당 사진의 저작권은 나에게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상의 문제는 없다. 하지만 이를 마음대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초상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설령 당사자가 나에게 '사진 찍어 달라'고 요청한 경우에도 이를 이용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예인의 경우,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는 범위가 좁다. 초상권은 사생활을 평온하게 유지할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인데, 연예인의 경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방송국 앞에서 기다리다가 걸 그룹의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는 정도는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인의 사진은 오히려 연예인보다 초상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만약 원치 않는데 촬영되어 유튜브 등에 게시까지 되는 상황이라면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해당 영상을 차단할 수 있다. 나아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201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피해구제센터 누리집에 초상권 침해를 신고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튜브 내 초상권 침해 정보 25건을 심의하여 6건의 차단을 결정하였다.

창작자는 '초상권' 등 개인 정보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영상에 출연하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법**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 ④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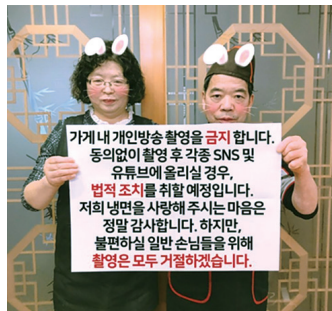
**텔레비전에 소개된 식당을 찾아가 먹방을 진행하는데, 식당 주인이 장사에 방해된다며 촬영을 거부한다. 개인 방송을 강행하면 안 되는지?**

**O** 저작권의 문제는 아니지만, 촬영 과정에서 영업장에 피해를 주는 것은 곤란하다. 게다가 분명하게 촬영을 거부하고 있다면, 개인 방송을 강행하다가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최근 텔레비전에 소개되어 유튜버들이 즐겨 찾았던 한 냉면집에서는 다른 손님들을 위해 개인 방송 촬영을 거절한다는 안내를 붙여 놓기도 했다.

참고로 식당 등 건물 내에서 영화 촬영을 하려면, 해당 소유주의 허락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창작자가 주의할 사항은 저작권만이 아니다. 영업점에서 허락 없이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의 얼굴,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영상을 게시하는 것 등은 위법한 행위이다.

에스비에스(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해 인기를 끈 오복함흥냉면 주인 부부가 가게에서 개인 방송 촬영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는 사진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했다.



식당 내 개인 방송 촬영 금지를 요청한 오복함흥냉면 주인 부부



**‘외국인의 저작물’도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는지?**

**Q** 우리나라가 가입 체결한 조약에 따라 외국인의 저작물도 보호된다 (저작권법 제3조). 미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베른협약)’,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WTO TRIPS)’ 가입국이고, 더구나 우리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이다. 따라서 미국인의 저작물은 우리나라에서 보호된다(반대로 우리나라의 저작물도 미국에서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

외국인이 창작했다라도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대한민국에서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도 마찬가지로 보호된다.

우리나라는 베른협약,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이외에도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로마협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CT)’ 등 저작권 관련 주요 국제협약에 대부분 가입하고 있다.<sup>6)</sup>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에만 2019년 9월 현재 177개국이 가입하고 있다.<sup>7)</sup> 따라서 대부분의 외국 저작물이 우리나라에서 보호된다.



**저작권법**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①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②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6) 국제협약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고 싶다면, 최경수(2017), 『국제지적재산권법』(개정판), 한울 ; 박덕영·이일호(2009), 국제저작권과 통상문제, 세창출판사 등을 참조할 수 있다.

7) 가입국 명단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wipo.int/treaties/en/ShowResults.jsp?lang=en&search\\_what=B&bo\\_id=7](https://www.wipo.int/treaties/en/ShowResults.jsp?lang=en&search_what=B&bo_id=7)



**북한의 조선중앙TV 영상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것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지?**

**O** 북한 사람의 저작물도 우리나라에서 보호가 된다. 북한은 베른협약 가입국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따라 북한 저작물은 ‘국내 저작물’로 해석된다. 북한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방송사들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 왔다.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 ☎ 02-3142-4925

### 나) 업무상저작물

창작자주의에 하나의 예외가 있으니, 바로 ‘업무상저작물’이다.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면 실제 창작한 직원이 아닌,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를 저작자로 본다. 예컨대 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저작자를 ‘신문사’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신문 기사를 이용하려고 할 때, 기자에게 허락받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저작권법

제2조(정의)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신문 기사를 영상물에 이용하고 싶다. ‘기자에게 허락’을 받으면 저작권은 해결된 것인지?**

**X**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면, 기자가 아닌 신문사가 저작자의 지위를 가진다.

창작자주의에 예외가 있다. 그것은 ‘업무상저작물’이다.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면 실제 창작한 직원이 아닌,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를 저작자로

본다.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이 되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는 요건을 정리하면,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법인등”)의 기획하에(요건 ①)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요건 ②)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요건 ③)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요건 ④)되는 것이다.

- 요건 ① :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 요건 ② :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 요건 ③ :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 요건 ④ :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함
- 요건 ⑤ : 계약 및 근무조건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sup>8)</sup>



1인 창작자로 활동하다가 최근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회사<sup>9)</sup>에 가입하였다. 이제 회사에 소속되었으니 내가 제작하는 영상들은 MCN 회사가 저작자가 되는 것인지?

**X** 여전히 창작자가 저작자이다. 업무상저작물이 되려면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하고,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한다. MCN 회사에 소속되었더라도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사례는 드물기 때문에 업무상저작물이 되지 않는다.

만약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다면, MCN 회사와의 계약서에 저작자의 지위는 여전히 창작자에게 있음을 명시하는 것도 좋다.

8) 요건 ⑤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저작자의 지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요건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실무에서 계약 등으로 다르게 정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9)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트위치TV,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기획사를 말한다. 위키백과, “멀티 채널 네트워크”, <[https://ko.wikipedia.org/wiki/멀티\\_채널\\_네트워크](https://ko.wikipedia.org/wiki/멀티_채널_네트워크)>, (최종방문일 : 2019. 10. 10.)



### 심화학습

#### 저작자 결정의 원칙: 창작자주의

-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호).
-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저작인격권과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저작재산권을 가진다(저작권법 제10조).

#### 창작자주의의 예외: 업무상저작물

-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 요건: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 업무 범위내 +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



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를 모아, 교육용 콘텐츠를 만들려고 한다. 시험을 치르고 나온 학생들에게 5천 원씩 주고 문제지를 구입하였다. 그럼에도 시험 문제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한다고 들었다. 출제한 교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X** 시험 문제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여 교사에게 저작권이 없는 경우가 많다.

시험 문제도 저작물에 해당한다. ‘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공립 학교의 경우, 시험 문제의 저작자가 이를 출제한 교사가 아니라 설립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라고 본 판례가 있다. ‘업무상저작물’로 본 것이다.

‘대학입시 문제’의 저작물성 인정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1993년 말 시행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의 대학입학 본고사의 입시문제에 관하여 보건대, 위 입시문제가 역사적인 사실이나 자연과학적인 원리에 대한 인식의 정도나 외국어의 해독능력 등을 묻는 것이고, 또 교과서,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그 출제한 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시험문제의 저작자는 서울시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다5004 판결>

○○고의 실질적 지휘·감독하에 있는 ○○고 교사인 원고들의 업무에는 소속 학생들의 내신 성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로서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시험문제지 우측 하단에 ‘○○고등학교’라고 명기되고 출제자 표시는 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고 시험문제가 특정 다수인인 ○○고 해당 학년 학생들에게 시험 평가를 위하여 배포되고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 시험문제는 ○○고 명의로 공표되었다고 할 것인바, ○○고의 기획하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고 교사들이 업무상 작성한 이 사건 ○○고 시험문제가 ○○고의 명의로 일반공중인 소속 학생들에게 공표되었으므로, 저작자는 설립 경영 주체인 서울시라고 보았다.

시험문제를 업무상 저작물로 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8. 선고 2005가합73377 판결>

공립 고등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교내 중간·기말 고사 시험문제가 당해 고등학교의 기획 하에 소속 교사들이 업무상 작성한 것이고, 문제지에 학교 명칭만이 기재되고 출제자 표시는 되어 있지 않으며, 특정 다수인인 위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들에게 배포되고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당해 고등학교의 명의로 공표된 단체명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제9조에 의해 그 저작권이 위 학교의 설립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 3) 권리를 준다 [저작권]

#### 가) 무방식주의와 저작권 등록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 등기나 등록 등 어떠한 방식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한다.

저작권법 제10조에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베른협약 가입국들은 모두 무방식주의를 따르고 있으므로, 다른 나라에서 저작권 행사를 할 때에도 등기나 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다.

####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내가 만든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저작권 등록'을 한 적은 없다. 등록하지 않으면 나에게 저작권이 없는 것인지?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유튜브에 올렸는지 여부도 권리 발생 여부와 관계가 없다.



책 뒷면에 ©,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등이 표시된 경우가 많다. 저작권 표시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하라는 의미로 보면 되는지?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즉시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등기, 등록, 어떠한 표시도 필요치 않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한다. 그렇다면 예컨대 'Copyright©최진원, All rights reserved.'와 같은 표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결론적으로 오늘날 큰 의미가 없는 문구라고

보면 된다. 과거 베른협약에 가입하기 전에, 세계저작권협약에서 이와 같은 표시를 하면 각국이 개별적으로 정한 방식이 있어도 저작권 보호를 해주기로 약속한 적이 있다. 베른협약에 가입한 이상, 이와 같은 문구를 붙이거나 저작권 등록을 할 필요 없이,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한다.

하지만 '저작권 등록'이 의미 없는 행동은 아니다. 등록을 하면 '추정력', '대항력' 등 추가적인 법적 효과를 부여받을 수 있다. 즉 '저작자 추정'과 '저작시기 추정'의 효과와 더불어, 저작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 양도 등록을 먼저 한 사람에게 이른바 대항력이 주어진다. 이는 특히 분쟁 발생 시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

- 예1) 저작자 논란이 발생했을 때:  
등록증을 제시하면, 저작자로 추정 받을 수 있다.
- 예2) 창작 시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등록으로 창작일·공표일이 추정되므로, 창작 시점이나 공표 시기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을 때 요긴하게 활용된다.
- 예3) 서로 저작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할 때:  
예컨대 저작권자 A가 저작권을 B에게 양도한 뒤에 다시 C에게도 양도한 경우, 즉 저작권을 2번 판 경우에 B와 C 중 저작권 양도 사실을 먼저 등록한 사람이 권리를 가지게 된다. 즉 B가 먼저 계약을 했더라도 등록을 C가 먼저 했다면 C가 B에게 '대항력'을 가진다.

**Q**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면, 굳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지?

**X** 저작권을 등록하면 추정력, 대항력 등 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실무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



## 심화학습

### 추정력

등록을 하면 '저작자 추정'과 '저작시기 추정'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상대방이 반대의 사실을 입증(반증)하지 못하는 한, 등록부에 적힌 사항이 '사실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매우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다.

- 저작자 추정: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된다 (무명저작물인 경우 실명 등록으로 보호기간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sup>10)</sup>
- 저작시기 추정: 창작 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 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된다.

### 대항력

저작권의 양도(또는 처분제한 등) 사실을 등록하면,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가진 자(예, 이중 매매)에게 대항할 수 있다.

먼저 추정력을 살펴보면, '저작자'와 '저작시기'가 법률상 추정(推定)된다. 상대방이 이를 뒤집는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는 한, 등록증의 제출만으로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저작권을 양도 받은 경우와 같이 권리가 변동된 것을 등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른바 대항력이라는 법적 효과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저작권 양도의 등록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즉 A가 B와 C 등에게 저작권을 여러 번 양도한 경우에, 등록된 사람이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B가 A와 먼저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라도, C가 먼저 등록하면 B보다 우선하는 것이다(B는 등록된 C에게 대항 불가: 대항력).

10)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저작권법**

**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③ ……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이밖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로 등록한 사람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신설되었는데, 법정손해배상이 바로 그것이다.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소송 절차상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저작권 등록은 분쟁 발생 시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게 해준다.



**심화학습**

**법정손해배상 청구**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 침해로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저작물당 1천만 원 이하(영리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나도 전문가

저작권 등록을 해보자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쉽게 할 수 있다. 직접 방문, 우편, 온라인(www.cros.or.kr) 중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비용은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 시 23,600원(컴퓨터프로그램은 53,600원), 양도 등 권리 변동 등록은 78,240원(컴퓨터프로그램은 84,000원)이다(2019년 11월 기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누리집

## 나) 저작자의 권리

저작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가진다.

### 저작권법

제10조 ①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 (1) 저작인격권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을 가진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를 말한다.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저작자'가 보유하고 있다.

**참고**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하므로,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달라질 수 있다.



저작권을 넘기면서 '저작인격권도 함께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저작물에 내 이름을 표시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O** 계약서에 저작인격권을 양도하겠다고 적었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을 잘 몰라서 모두 양도한다고 약속했더라도, 창작자는 성명표시권이나 동일성유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 저작권법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으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3가지를 부여하고 있다.<sup>11)</sup>

11) 넓게는 배타적 발행과 출판에서 저작물의 수정증감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제58조의2(저작물의 수정증감) ① 배타적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제63조의2(준용)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

저작 인격권	공표권	(제11조)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
	성명표시권	(제12조)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
	동일성유지권	(제13조) 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가 갖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변경을 금지하여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공표권이란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이다. 공표를 원치 않는데, 제3자가 억지로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경우에 공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경우, 공표권이 침해되는 일은 흔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명표시권은 창작자의 이름을 적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창작자의 실명 또는 예명, 아이디 등을 창작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창작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창작자 성명의 표시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자.

**참고** 실연자에게도 성명표시권이 있다(저작권법 제66조). 예컨대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작곡자·작사가 등 저작자의 표시는 물론, 가수나 연주자 등 실연자의 성명도 표시해야 한다. [\[제2장 나. 2 가\) 저작인접권의 내용 참조\]](#)

### 저작권법

**제12조(성명표시권)** 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성명표시권)** ① 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그 실연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실연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가 작곡한 노래를 이용하도록 허락했다. 계약서에 적지는 못했는데, '내 이름을 적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 만약, 대가를 받고 허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오** 당연한 권리이며, 이용을 허락한 것과 성명표시권은 별개의 권리이다.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도 관계없다.



음악저작물을 배경 음악(BGM)으로 이용하도록 허락받았다. 창작자의 이름을 표시해 주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편곡자의 이름'도 적어야 하는지?

**오** 작곡, 작사가뿐만 아니라, 편곡자도 저작자이다. 나아가 실연자도 성명표시권이 있기 때문에, 가창자나 연주자도 적어야 한다. [제2장

나. 2) 가) 저작인접권의 내용 참조]

저작인격권 중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동일성유지권이다. 짧은 영상을 만들면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일부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원저작물을 왜곡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소위 '짤방<sup>12)</sup>'을 만들면서 원저작물을 희화화하거나, 편집을 하여 원 작품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만드는 것 등은 동일성유지권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12) '잘림 방지'를 줄여 부르는 말로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나 영상(주로 움직이는 이미지 파일)을 의미한다. 주제 게시판과 관련된 사진을 첨부하지 않으면 게시물이 삭제되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 정책 때문에 이용자들이 자신의 글이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를 같이 첨부한 데에서 유래되었다.

###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허락을 받고 강연을 녹화하였다. 영상물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20분짜리 강연을 5분으로 줄이고, 강연 내용 중 일부의 배열을 바꿨다. 이런 것도 저작권법에 문제가 되는가?

**O** 허락을 받고 촬영한 것이라도, 강연을 축약하고 영상의 순서를 바꾸며 편집하는 것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강연의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배열을 바꾸는 과정에서, **강연자의 의도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른바 ‘한상진 강연 방송 사건’을 보면, A방송사는 서울대 교수 한상진의 강연을 방송하기로 허락받고, 약 60분 동안 ‘중민화의 길’이란 제목으로 녹화하였다. 그런데 방송국은 강연의 20분 분량을 삭제하고 40분만 방영하였다. 이에 한상진 교수가 명예훼손 등을 문제 삼으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법원은 “원칙적으로 녹화 강연의 내용, 배열을 변경할 수 없고, 불가피한 상황이 일어나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강연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질이 나쁜 부분을 제거하거나 배경 음악, 색상 등을 바꾸는 정도의 편성 권한만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한상진 강연 방송 사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2. 5. 14. 선고 90가합1404 판결>

텔레비전 방송사가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외부강사들을 출연시켜 강연을 방영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방송법 제3조 소정의 편성권에 해당하여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으나, 위 방영결정에 따라 방송출연계약을 체결한 강연자에게 강연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전망을 강연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강연자가 제시된 방향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녹화강연한 이상 편성권은 이미 행사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녹화강연의 내용, 배열을 변경 할 수 있고, 불가피한 상황이 일어나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강연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질이 나쁜 부분을 제거하거나 배경음악, 색상 등을 바꾸는 정도의 편성권한만 있다.



소위 '잘방'을 만들려고 한다. 기존 영상물과 사진을 편집하여 재미있게 만들려고 하는데, 저작권자의 허락만 받으면 문제없는지?

**X** 기존 영상물과 사진의 내용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과는 별도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이 문제될 수 있다. [제3장 라. 1) 나) 권리자를 찾아라 : 권리자 탐색 방법 참조]



책을 읽어주는 '북튜버'이다. 장편 소설을 '요약'해서 읽어 주는데, 동일성유지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O** 이른바 '소설마당' 사건에서 법원은 장편 작품들을 축약하여 게재하였다면,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인하여 그 저작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1996. 7. 12. 선고 95나41279 판결).

Q

영상을 편집하여 새로운 내용의 영상을 만들 때,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았으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밖에 주의할 사항은 없는지?

**X** 저작물을 일부만 잘라서 사용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저작권자에게 복제나 전송 등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사용료를 내고 허락을 받았더라도, 짜깁기를 하여 본래의 저작물과 다른 내용으로 바꾸려면 '저작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 저작자에게는 양도되지 않는 일신전속적인 권리 '저작인격권'이 있기 때문이다.

Q

기존 드라마의 대사를 바꿔서 새로운 영상물을 만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O**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더라도 저작물을 왜곡, 훼손하여 이용하는 것은 안 된다. 창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돈을 받고 양도했더라도, 자신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변형되어 이용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이를 저작인격권 중에 동일성유지권이라고 한다. 굳이 변형해서 이용해야 한다면,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동의는 저작자에게 받아야 한다.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제목)의 동일성을 변경하려면 저작권자가 아니라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저작권은 최초에 저작자에게 있지만, 양도가 가능하므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장 다. 참조]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판단 기준은 원저작물의 '왜곡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창작자가 의도한 바와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하여 이용하려면, 창작자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다. 오타를 수정하는 정도는 원 저작물을 왜곡한 것으로 보지 않아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예컨대 영상물에 설명의 의미로 자막을 삽입하거나, 노래 미리듣기와 같이 전체가 아닌 일부만 들려주는 경우도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표준어 표기법’이 바뀌어서 원저작물의 자막을 수정하려고 한다. 이것도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는지?

**X** 맞춤법이 바뀌어서 영상의 자막을 수정하는 정도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도 된다. 동일성유지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기존의 영상에 대사나 노래 제목 등을 자막으로 추가하는 것도 모두 위법한 것인지?

**X** 영상에 조그마한 변경을 하는 것 모두가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93 서태지 라이브 콘서트’ 사건을 보면, 계약을 하여 영상물의 편집 등 수정 금지를 약속했는데도 ‘서태지와 아이들 93 LIVE 콘서트’라는 자막과 각 공연되는 노래 첫 부분에 원고들이 이미 붙인 노래 이름 자막을 화면 구석에 삽입하였다. 또한 자막 중 ‘이제는’이라는 노래에 대하여 ‘이 밤이 깊어 가지만’이라는 자막을 삽입하였다. 이에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보았는데, “단순히 영상물의 내용에 따른 설명의 의미로 자막을 삽입하는 행위는 위 영상물에 대한 동일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들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한 위 영상물의 편집 등 수정의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93 서태지 라이브 콘서트’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9. 2. 선고 94가합28760 판결>

영상물에 대한 편집 등 수정이라 함은 위와 같은 영상물 자체에 대한 편집이나 수정 내지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영상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그 동일성을 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영상물의 내용에 따른 설명의 의미로 자막을 삽입하는 행위는 위 영상물에 대한 동일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들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한 위 영상물의 편집 등 수정의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도 전문가

야구장에 응원가가 사라졌어요

### 삼성라이온즈 응원가 저작권 소송

야구장의 흥을 돋우던 응원가가 사라진 적이 있다. 저작자들이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당시 프로야구단들은 응원가로 사용하려고 원래의 음악의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사를 바꿔 부르는 것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프로야구장에서는 가사를 바꿔 부르던 기존 응원가의 사용을 중단하였다. 이 문제는 법정 분쟁으로 치달았는데, 1심 법원은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가사를 바꿔 부르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만든 수준이어서 원저작자의 작품이 왜곡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즉 삼성라이온즈 응원가 저작권 소송의 하급심 판결에서 가사 변경과 관련하여 법원은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노래 가사를 바꾼 경우 작사가에게 동일성유지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원래 가사 중 창작성이 있는 기존의 표현이 잔존해 있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가사를 만든 경우 또는 기존 표현의 상당부분을 변경하여 원래 가사와 변경된 가사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가사는 독립된 저작물로 볼 수 있어 동일성유지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8. 선고 2018가합516867 판결 참조).

(2) 저작재산권

(가) 권리의 부여

우리가 흔히 '저작권'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저작재산권'에 해당한다.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7가지가 있다.

<b>저작 재산권</b>	복제권	(제16조)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다운로드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권리이며, 건축물의 경우 건축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권리가 포함됨
	공연권	(제17조)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이나 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하는 권리이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 제외)이 포함됨
	공중송신권	(제18조)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
	전시권	(제19조) 미술·사진 및 건축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일반 공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할 권리
	배포권	(제20조) 저작물의 원작품 혹은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일반 공중에게 양도 혹은 대여할 권리
	대여권	(제21조)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용 컴퓨터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 DVD, 도서대여는 자유. * 무상 대여도 자유.
	2차적저작물 작성권	(제22조)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

2 저작권 제도의 개요

**도움말** 권리 범위 외에는 자유 이용

저작권자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이용자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된다. 예컨대 저작권은 위에 적은 7가지뿐이다. 여기에 없는 형태는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대여권(제21조)을 보면,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용 컴퓨터프로그램'에만 대여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책 대여점에서 책을 빌려주는 것은 영리목적이라도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중 1인 미디어 창작자가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은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다.

먼저 복제권과 관련하여, '저작권이 걱정되어서 직접 손으로 베껴어요'라는 문구를 종종 보게 된다. 많은 창작자들이 오해를 하는데 복제의 수단은 중요하지 않다. 즉 손으로 비슷하게 그린 것이나, 기계로 복사한 것이나 저작권 침해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필사도 복제에 해당한다.

## Q

**유튜브에 그림 그리는 영상을 올리고 있다.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은 후 그 사진을 그대로 '따라 그려서' 올리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

**O**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것도 '복제'이다. 저작권법상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와 같이 기계를 이용한 경우는 물론 손으로 직접 베끼는 '필사(筆寫)'도 포함한다. 상담 사례를 보면 창작자의 노력이 들어갔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두 원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복제에 해당한다.

저작물을 직접 보고 베낀 것은 물론 기억을 되살리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 자료를 참고하여 복원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한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1고단1583 판결).

다음으로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다. 유튜브 등에 게시된 영상 중에는 기존의 저작물을 활용한 '2차적저작물'이 많은데, 이를 창작하려면 원저작물에 대하여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에게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A저작물을 참고하였더라도 아이디어만 차용하였다거나 변형의 정도가 너무나 커서 원저작물과는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즉 창작에 앞서 다른 작품들을 참고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창작자들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서 많은 영감을 받고 이를 새로운 창작에 활용하여야 한다.

### 저작권법

#### 제2조(정의)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미국 드라마를 보고 직접 한국어 자막을 만들었다. 내가 번역한 것이므로 자막을 자유롭게 공유해도 되는지?**

**X** 미국 드라마 작가의 창작물을 번역한 것이므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이처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2차적저작물작성권). 예컨대 윤태호 작가의 ‘미생’을 드라마로 만들려면 윤태호 작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원저작자와 2차적저작물작성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내가 번역한 것이지만, **드라마 작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Q

책이나 영화를 소개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책과 영화를 구입하여 본 뒤, 이를 '요약하여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한다. 원저작물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가급적 본래의 내용 그대로 전달하고자 노력한다. 책이나 영화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O 공정이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도서를 요약하여 인터넷으로 요약본을 제공한 '더 파워 오브 위(THE POWER OF WE)' 사건에서 법원은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THE POWER OF WE' 사건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는,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기본으로 되는 개요, 구조, 주된 구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요약물이 원저작물을 이루는 문장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발췌한 것이거나 발췌한 문장들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 원저작물과 비교한 요약물의 상대적인 분량, 요약물의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영문(英文)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한 영문 요약물을 丙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아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피고인 甲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

Q

기존 저작물을 '참고'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려면, '항상'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X 아이디어만 얻어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이라면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의 모방은 문제 삼지 않기 때문이다. [제2장 가. 1) 가) 저작물의 개념 참조] 또한 변형의 정도가 너무나 커서 원저작물과는 유사성이 없는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

또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 여부가 분쟁의 대상이 되곤 했는데, 2차적저작물이 되려면 원저작물을 기초로 수정·증감이 가해지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저작물을 기초로 한 영상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된 경우에는,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등 참조). [제4장 가. 2) 나) 실질적 유사성 참조]

### (나) 저작재산권의 제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라 부르는 것은 주로 '저작재산권'이다. 저작재산권의 범위를 이해하려면 저작재산권과 그에 대한 제한 규정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제23조~제35조의3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언급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자는 이하의 '저작재산권 제한'이 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sup>13)</sup> **창작자의 입장에서 허락 없이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하겠다. 예컨대 저작권자에게는 복제권이 있지만 제30조에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이용하려고 복제하는 것에는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제30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적 이용을 위해서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 제23조 재판절차, 입법·행정 자료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 제24조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법정·국회·지방의회에서의 진술등의 이용
-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13) 따라서 복제권 등 7가지 권리를 규정한 내용과(제16조~제22조)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항(제23조~제35조의3)을 함께 살펴보면, 창작자가 권리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범위와 창작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제25조 교과용 도서 게재, 학교 교육 목적 등への 이용
-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 **제30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제31조 도서관 등에 보관된 자료의 복제 등
- 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에 의한 복제 등
- 제33조의2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한국수어(수화) 변환 등
- 제34조 방송사업자의 자체방송을 위한 일시적 녹음·녹화
- **제35조 미술저작물 등의 일정한 장소에서의 전시 또는 복제**
- 제35조의2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일상생활에서는 ①비영리 공연(제29조) ②사적복제(제30조) 조항이 많이 활용된다. 예컨대 거리에서 음악 공연을 할 때, 반대급부(이익, 대가 등)를 받지 않고 비영리 목적이라면 작곡가·작사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개인적 이용을 위해 저작물을 촬영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은 주로 인터넷에 ‘공중송신’하므로, 인용(제28조)·공정이용(제35조의3) 조항이 더 중요하다. 이의 사례들은 [제3장 나]에서 상세히 살펴본다.

### 저작권법

**제2조(정의)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

## 나. 저작인접권과 제작자(투자자) 보호

### 1) 창작자도 아닌데 권리가 있다?

저작권법은 '①창작자에게 ②저작권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창작자는 아니지만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저작인접권'이다.

**저작인접권**이란<sup>14)</sup> 저작물의 해석이나 확산에 도움을 주어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자들에게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복제권 등 저작인접권이 주어져 있다.

이들은 비록 저작물의 '창작'에 처음부터 관여하지는 않지만, 문화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이에 저작권과는 별도로 이들의 법적 보호가 마련되었다(저작권자보다는 다소 제한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국제적으로는 1961년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 체결되어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가입하였으며, 저작권법 제1조에서도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언급하고 있다.

### 2) 어떤 권리가 있는가

#### 가) 저작인접권의 내용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저작권자의 권리보다는 약하다.

실연자의 경우,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등 인격권이 주어져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14) 'neighbouring right(specific right neighbouring on copyright)'의 우리말 번역이다.

☑️ 저작인접권

실연자	인격권	성명표시권	(제66조)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동일성유지권	(제67조) 그의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배타적 재산권	복제권	(제69조)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
		배포권	(제70조) 그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
		대여권	(제71조) 그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공연권	(제72조) 그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할 권리
		방송권	(제73조)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
전송권	(제74조)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		
실연자	채권적 권리	보상청구권	(제75조)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6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6조의2)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음반제작자	배타적 재산권	복제권	(제78조)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
		배포권	(제79조)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
		대여권	(제80조)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전송권	(제81조)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
	채권적 권리	보상청구권	(제82조)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3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3조의2)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방송사업자	배타적 재산권	복제권	(제84조)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
		동시중계방송권	(제85조)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
		공연권	(제86조의2)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

Q

케이팝(K-Pop) 캠방을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따라 노래의 작곡가, 작사가를 적고 있는데, 가수나 연주자 이름도 적어야 하는지?

O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권뿐만 아니라 실연자인격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케이팝(K-Pop) 채널 중에 노래 제목만 적어주고 작곡, 작사가 등 저작자나 가수, 연주자 등 실연자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성명표시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적어야 한다.



아프리카TV의 음악방송<sup>15)</sup>

나) 보호기간, 제한·양도·이용허락·권리 소멸·등록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제86조)

- 실연: 실연을 한 때로부터 70년
- 음반: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권리 발생)
- 방송: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

권리의 제한·양도·이용허락·권리 소멸·등록 등은 저작권과 유사하다(제87조~제90조).

15) <http://bj.afreecatv.com/since821>

### 3) 저작인접권자에게 허락 받기

음악, 영상 등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에게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저작인접권자로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이 있다. 내가 이용하려는 저작물에 이들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에게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음악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 외에도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를 고려해야 한다.

- **실연자**: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또는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 - 예컨대, 배우·가수·연주자·지휘자 등
- **음반제작자**: 음반을 최초로 제작함에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 - 예컨대, SM엔터테인먼트·YG엔터테인먼트 등
- **방송사업자**: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 - 예컨대, KBS·MBC·SBS 등

예컨대 트와이스의 팬시(FANCY)를 인터넷에서 전송하고 싶다면 작곡자, 작사가, 편곡자 등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노래를 부른 트와이스, 연주자 그리고 음반제작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더구나 저작권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도 양도가 가능하므로, 현재 권리자가 누구인지는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이처럼 저작인접권자가 관여된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제3장 라. 1) 나) 권리자를 찾아라 : 권리자 탐색 방법 참조]

물론 음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노래도 하고 연주도 하는 것이라면 작곡가, 작사가 등 저작권자에게만 허락받으면 된다.

Q

인터넷에 올릴 영상물에 음악을 이용하고 싶다. 이용허락을 받고 합법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작곡가와 작사가에게만 허락받으면 되는가?

X 음악은 이용허락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저작물이다.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에게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즉

저작권자 - 작곡, 작사, 편곡

실연자 - 가창자(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 연예 기획사, 음반 회사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며, 한 명이라도 거절할 경우 사용할 수 없다.

더구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양도가 가능하므로, 작곡가·작사가로 표기된 사람이 현재의 저작권자라는 보장도 없다. 즉 허락을 받을 때에는 창작자나 가창, 연주자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현재의' 관리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3장 라. 1) 나) 권리자를 찾아라 : 권리자 탐색 방법 참조]

Q

유튜브 영상에 '내가 직접 연주'한 음원을 사용하려고 한다. 내가 직접 연주한 것이니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해도 저작권 문제는 없는지?

X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내가 직접 부른 노래라도 작곡·작사 등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내가 직접 연주했으므로, 실연자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제작된 음반을 이용한 것도 아니므로 음반제작자에게도 허락 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저작권은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 4) 투자 보호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영상제작자

저작물 창작에 단순히 경제적 투자만 하였다면 이 사람은 저작자가 아니다. 하지만 투자자 역시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에 저작권법에는 저작인접권외에도 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와 ②영상제작자 등 투자자를 배려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일정한 권리 부여 (제90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이다.'<sup>16)</sup>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5년간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이 주어진다 (권리의 제한·양도·이용허락·권리 소멸·등록 등은 저작권과 동일).

나) 영상제작자

- **영상저작물 특례:**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및 유통 등을 위해, 특례 규정을 통해 제작자에게 허락·양도된 것으로 추정된다(제99조~제101조).

- 소설 등 저작물의 영상화: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권리를 포함해 제작자에게 허락한 것으로 추정
- 스태프 등의 저작권 양도 추정: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의 저작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
- 실연자의 저작권 양도 추정: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데 필요한 복제권·배포권·방송권 및 전송권 등이 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

**Q** 영화의 일부 장면을 이용하고 싶다. 극작가, 촬영 감독, 배우 등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각 허락을 받는 수밖에 없는지?

**X** 영상저작물은 다수의 저작자들이 참여하여 만드는 종합 예술 작품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저작자가 다수 존재하고 이들에게 각각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16) 저작권법의 '데이터베이스'는 사전적 의미와는 다소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제2조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용 및 유통 등을 위해 극작가나 스태프, 배우 등의 권리가 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을 마련해 두었다. 실무상으로도 영화의 경우 대부분 제작자에게 권리가 집중되어 있어, 이용하기 편하다.

## 저작권법

###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①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101조(영상제작자의 권리)** ① 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제3장

# 창작을 위해 '저작물'을 최대한 활용하자

### 가. 저작물 이용을 위한 확인 목록

#### 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 1) '저작물'이 아니라면 마음대로 이용하세요
- 2) 저작물 중에도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이 있어요

#### 다.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경우

- 1) 인용, 공정이용
- 2) 영상에 함께 찍히는 저작물들

#### 라. 허락 받고 이용하기

- 1) 저작권자에게 허락 받기
- 2) 미리 허락 의사를 밝힌 '고마운 사람들'
- 3) 저작권 문제를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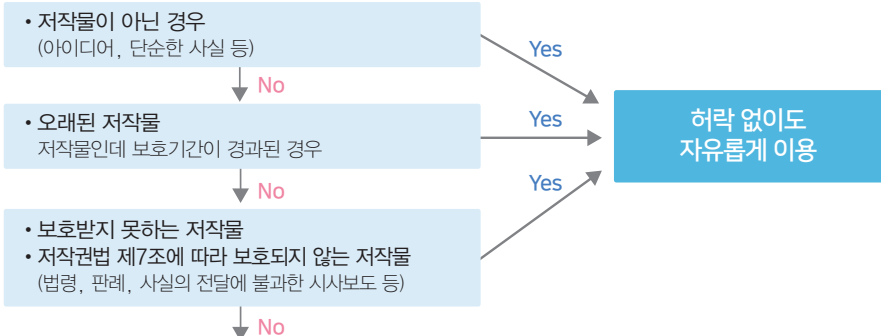
## 제3장

# 창작을 위해 '저작물'을 최대한 활용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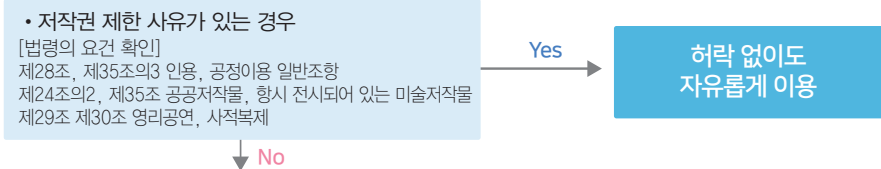
### 가. 저작물 이용을 위한 확인 목록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창작해 보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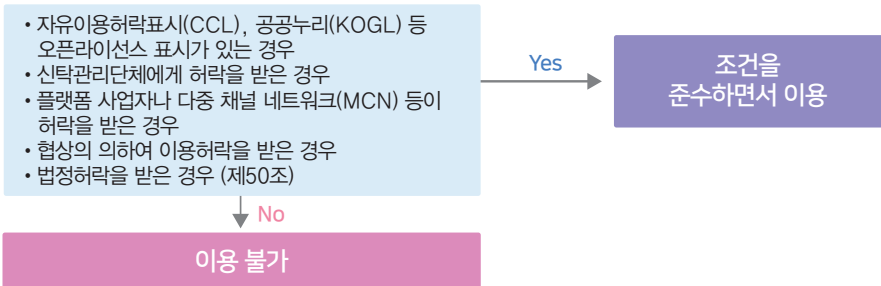
#### ✓ 허락 없이도 이용 가능한 경우 [🔗 제3장 나. 참조](#)



#### ✓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경우 [🔗 제3장 다. 참조](#)



#### ✓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 제3장 라. 참조](#)



## 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 1) '저작물'이 아니라면 마음대로 이용하세요

#### 가)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아요

동일한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거나 역사적 배경이 같아서 유사해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다.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누가 '먹방' 영상이나 인형 뽑기 영상을 먼저 만들었다고 하여 다른 사람이 이와 같은 영상을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자율 감각 쾌락 반응(ASMR)<sup>17)</sup>이 인기를 끌자,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콘셉트의 영상을 만들었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이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과 이를 활용한 새로운 창작을 기대하는 측면을 보여준다.



**유명 작가가 촬영하여 유명해진 섬을 비슷한 위치에서 촬영하려면, 최초 촬영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X** 촬영의 대상이 되는 섬은 누구나 촬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정 다툼까지 간 사례로 '마이클 케나의 솔섬 사진' 사건이 있다. 케나 측은 2007년 강원도 삼척에서 나무가 우거진 작은 섬을 촬영한 자신의 작품 '솔섬'을 대한항공이 2011년에 방영한 광고에서 모방했다며 3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광고에 사용된 사진은 회사가 주최한 여행 사진 공모전에서 수상한 김성필 작가의 사진으로 마이클 케나의 사진과는 전혀 다른 작품"이라고 반박했다. 언뜻 비슷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은 아이디어 부분을 배제하고 보면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며 저작권 침해를 부정했다.

17) 자율 감각 쾌락 반응(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줄여서 ASMR) 또는 자율 감각 쾌감 반응은 주로 청각을 중심으로 하는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후각적, 혹은 인지적 자극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행언하기 어려운 심리적 안정감이나 쾌감 따위의 감각적 경험을 일컫는 말. 위키백과, "자율 감각 쾌락 반응", <[https://ko.wikipedia.org/wiki/자율\\_감각\\_쾌락\\_반응](https://ko.wikipedia.org/wiki/자율_감각_쾌락_반응)>. (최종방문일 : 2019. 10. 8.).

마이클 케나의 솔섬 사진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나2011480 판결>

두 저작물의 전체적인 '관념'을 비교하게 되면 '솔섬의 사진'이라는 사진의 주제 또는 내용을 비교하게 되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까지 비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이러한 접근 방식의 채택에는 신중을 요한다.



대한항공 광고에 사용된 김성필의 '솔섬' 사진(좌)과 마이클 케나의 '솔섬' 사진(우)

**도움말**      **창작자는 권리자인 동시에 이용자**

저작권의 보호가 지나치면 새로운 창작이 가로막힐 수 있다. 창작자는 동시에 이용자이기도 하다. 만약 아이디어까지 보호하게 되면, 새로운 창작이 어려워진다. 예컨대 마이클 케나가 솔섬을 촬영하기 전인 2006년에 제2회 삼척관광 전국사진공모전에서 솔섬을 주제로 한 '호산의 여명'이라는 작품이 입선작으로 선정되었다. 이 작품도 마이클 케나의 작품과 유사한 구도로 촬영되었으며 하늘과 나무의 그림자가 물에 나타나는 것 또한 케나의 그것과 유사하다. 아이디어나 소재도 저작권으로 보호한다면, 마이클 케나의 솔섬 사진도 저작권 침해 분쟁에 휩싸일 위기에 처하게 된다. 창작자는 그만큼 저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최종준의 '호산의 여명'(좌)과 마이클 케나의 '솔섬'(우)

Q

자율 감각 쾌락 반응(ASMR) 영상이 유행을 하여, 다른 사람이 한 것과 같은 소재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개발했다. 저작권 문제가 있는지?

X 아이디어 영역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창작의 '소재'는 독점할 수 없으며,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예컨대 같은 섬을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다면 그 사진은 비슷할 수밖에 없다. 가장 먼저 그 자리를 찾아낸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저작권법의 측면에서 누군가 먼저 촬영을 했다고 하여 그 자리에서 아무도 사진 촬영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먹방’으로 유명한 창작자가 A 식당에 가서 대왕 돈가스를 먹는 방송을 하여 인기를 끌었다. 같은 식당에 가서 같은 메뉴를 먹으면서 개인 방송을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X** 누가 먼저 A 식당에서 대왕 돈가스를 먹으면서 촬영했다고 하여, 다른 사람이 그 식당에서 촬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창작이 위축될 수 있는데, 계속 창작되길 바라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완전히 배치되는 결과가 된다. 이론적으로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 어떤 식당에서 어떤 메뉴를 먹는가는 **아이디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 라면 먹방, 인형 뽑기 방송 등 같은 소재로 촬영된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저작권법 입장에서는 오히려 환영할 일이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즉 ‘표현’ 형식이 아닌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설령 독창성·신규성이 있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1인 방송에는 다양한 '방송 포맷'이 있다. 만약 다른 사람의 방송 포맷을 비슷하게 따라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X** 일반적으로 포맷이라 부르는 무대 형식이나 소품, 진행 방법이나 게임 규칙 등은 '아이디어'에 해당하며, 따라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2003년 독일 연방대법원은 TV-Design v. Südwestrundfunk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예능 쇼 포맷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심화학습**

**방송 포맷이라고 모두 마음대로 베껴도 되는 것은 아니다**

포맷이라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며,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포맷은 그대로 베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일률적으로 답하기가 조심스럽다. 우리나라에서도 에스비에스(SBS) '짹' 포맷 표절 사건에서 방송 포맷 중에도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그 선택·배열·구성이 독창적이라면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판시가 나온 바 있다.<sup>18)</sup>

결혼 적령기의 남녀가 애정촌에 입소하여 함께 생활하면서, '짹'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 '짹'이 유명해지자, CJ E&M은 SNL코리아에서 약 6분 분량의 콩트 '짹'을 방영하였다. 이에 SBS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이유로 침해는 부정하였지만, 저작물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하여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무대, 배경, 소품, 음악, 진행 방법, 게임 규칙 등 다양한 요소들이 그 자체로만 보면 창작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지만, 구성 요소의 선택이나 배열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위에서 본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과는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자세한 사항은 이어지는 판례의 내용 참조).

18) '조합의 독창성(originality by combination)' 이론은 이미 18세기 영국의 인쇄물에서 발견되고, 1950년대의 방송프로그램 분쟁에서 자주 적용되었던 논거이다. 홍승기(2018),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저작물성 - 대법원 2014다49180 판결을 중심으로 -", 『정보법학』 제22권 제2호.

## SBS '짜' 포맷 표절 사건 &lt;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gt;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은 무대, 배경, 소품, 음악, 진행방법, 게임규칙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고, 이러한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으로써 다른 프로그램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원고 영상물을 이루는 개별적인 요소들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미 사용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그 자체로만 보면 창작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나 원고 측의 축적된 방송 제작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프로그램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된 요소들만을 선택하여 나름대로의 편집 방침에 따라 배열한 원고 영상물은 이를 이루는 개별요소들의 창작성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구성요소의 선택이나 배열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위에서 본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과는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SBS '짜'(좌)과 tvN '짜'(우)

##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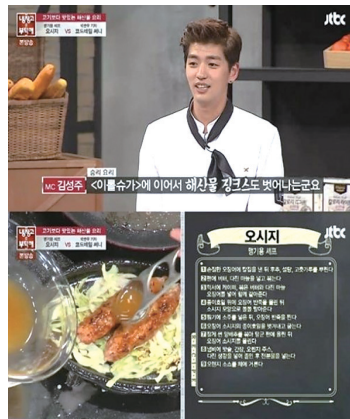
요리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게시하려고 한다. 요리책에 있는 '레시피(요리법)'를 그대로 따라하여 요리를 만드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X** 요리 레시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이를 베끼는 것이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표절 등 윤리적 비난의 여지는 남아 있다.

요리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레시피를 도용하고 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유명한 사례로 제이티비씨(JTBC)의 인기프로그램인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맹기용 셰프의 오시지 요리가 유명 블로거의 '오징어 소시지' 레시피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물론 윤리적 문제와는 별도로, 요리 레시피를 설령 베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는 않는다.

미국에서는 관련 판례도 있다. 로즈메리 캐럴은 미국 레스토랑 그룹인 '토메이도-토마흐도'(Tomaydo-Tomahhdo)의 조리법 책 <토메이도 토마흐도 레시피 북>의 저자다. 캐럴은 전 비즈니스 파트너인 래리 무어가 음식 출장 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요리책과 유사한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어 팔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오하이오북부연방지방법원은 "레시피는 어떤 결과물(음식)을 얻기 위한 기능적인 설명에 불과하고 미국저작권법 제102조에 의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하였다. 레시피를 표현한 해설이나 묘사, 그림 등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레시피 자체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유명 블로거의 '오징어 소시지' 레시피(좌)와 JTBC 냉장고를 부탁해의 '오시지' 레시피(우)

**도움말** 요리 레시피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요리 콘텐츠를 만들 수는 있지만, 요리책이나 요리 사진 등을 도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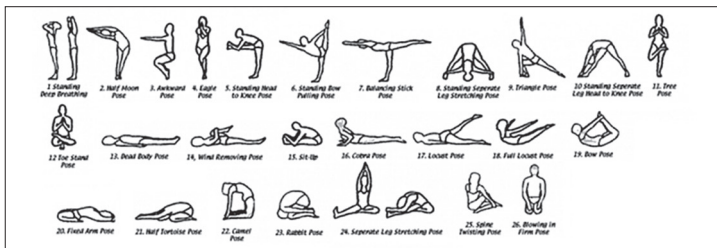


최근 건강 관련 콘텐츠, 그 중에서도 헬스나 요가 등 운동 영상이 인기가 많다. 다른 사람의 ‘운동 방법’을 참고하여, 내가 운동 순서를 바꿔가면서 촬영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X** 운동 방법은 아이디어에 해당한다. 같은 방법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 해당 운동법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게시하더라도 저작권 문제는 없다.

미국에서는 요가 동작 문제로 소송까지 진행된 적이 있다. 비크람 인도 요가 칼리지(Bikram's Yoga College of India) 사건이다. 법원은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한다며 저작물성을 부정하였다(Bikram's Yoga College of India v. Evolution Yoga, LLC, 2015 WL 5845415 (9th Cir., Oct. 8, 2015)).

인도에서 1971년에 미국으로 건너 온 비크람 차우드리는 26개의 일련의 요가 동작과 2가지 방식의 호흡법을 개발하고 자신의 요가 스튜디오에서 비크람 요가 수업을 개설하였다. 비크람으로부터 요가 강사 연수 과정을 이수한 드로스트와 샘슨은 에블레이션 요가(Evolution Yoga)사를 설립하여 비크람의 기본 요가 체계와 유사한 요가 수업을 제공하였다. 이에 비크람 측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요가 순서(시퀀스)는 사실과 아이디어를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비크람 요가 자세의 예<sup>19)</sup>

19) Thomas Huthwaite, “Copyright law not flexible enough to protect Bikram Yoga Sequence Article”, <<https://www.baldwins.com/news/copyright-law-not-flexible-enough-to-protect-bikram-yoga-sequence>>, (최종방문일 : 2019. 10. 8.).

나) '창작성이 없는' 표현도 보호받지 못한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없어서, 창작 과정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미국의 유명한 사례인 파이스트(Feist) 사건에서<sup>20)</sup> 연방대법원은 'ABC순으로 정렬된 전화번호부'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였다. 누가 하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다면 창작성이 없고, 이를 베껴서 쓰더라도 저작권법은 문제 삼지 않는다. 전화번호를 수집하느라 많은 비용이 들었겠지만, 저작권은 '노동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것이다.



**제품 자체를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한 '광고 사진'도 허락 없이 가져다 쓰면 안 되는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법원에서 창작성을 부정한 몇 안 되는 사례 중에 대표적인 판례로 '광고용 햄 사진' 사건이 있다. 햄 제품을 단순히 흰 상자 속에 넣고 촬영한 사진에 대해 이례적으로 저작물성을 부정하였고, 무단 이용을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다.

그런데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 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면 저작물에 해당되고(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법원은 그 기준을 높게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사진들도 대부분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이에 광고용 사진이라고 하여 모두 창작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20) Feist v. Rural,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 499 U.S. 340 (1991)

'광고용 햄 사진' 사건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피사체인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 분야의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고의 사진기술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의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제품 자체를 충실하게 표현한 일반적인 광고 사진의 예

Q

일반인이 해외여행을 가서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고 싶다. 사진작가나 전문가의 사진도 아니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사진'이므로, 허락 없이 이용해도 되는지?

X 개인이 촬영한 사진들도 대부분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는 이유로 보호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Q

유명한 책이나 TV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목을 유튜브 '채널 이름'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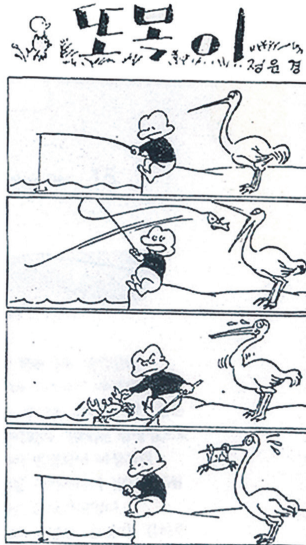
X 제호(제목)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어린 왕자, 빵빠레, 인생술집 등이 '제호'라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보호가 안 되는 것이다. 단순한 표어,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등도 일반적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힘들다.<sup>21)</sup>

21) 송영식·이상정(2015), 『저작권법 개설』, 세창출판사, 61면.

과거 만화 '또복이'의 제명을 이용하여 삼립 또복이빵을 제조 판매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15년간 또복이 만화를 그려왔던 정운경 씨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500만 원과 사과 광고를 요구하며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또복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애마부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등의 제목도 저작물성이 부정되었다. 최근에는 가수 투애니원(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노래 제목을 이용한 삼양라면의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 광고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삼립 또복이빵 사건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90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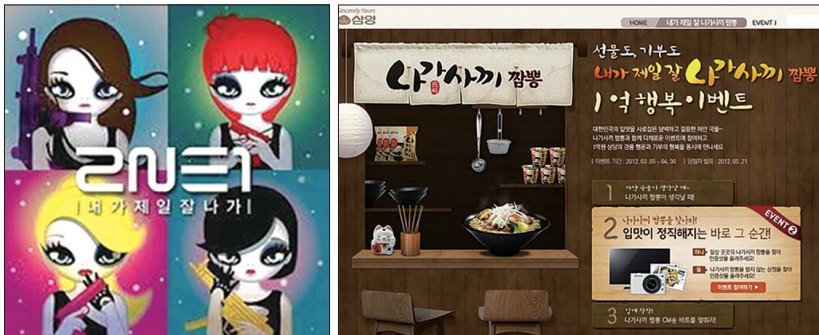
원고가 창작한 만화의 제명(題名)을 피고가 유용하였다 할지라도 원래 작품의 제호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성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원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원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정운경 화백의 또복이.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다.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3.자 2012카합996 결정>

음악저작물인 대중가요의 제호 자체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호 역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설령 현대 사회에서 제호가 갖는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호의 저작물성을 일률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제호 중 창작적 사상 또는 감정을 충분히 표현한 것을 선별하여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하는 입장에 선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호는 '내가 인기를 많이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였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하여 어떤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이 사건 가요에 이 사건 제호와 동일한 가사가 반복되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제호가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가수 투애니원(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좌)와  
 삼양식품의 나가사끼 짬뽕 이벤트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우)

Q

'채널 태그'에 유명 채널 이름이나 유튜버 이름 등을 적어 검색이 잘 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내 '채널명'을 태그에 넣어서 구독자를 유치하는 유튜버를 발견했는데, 방송하는 내용도 나와 동일한 먹방이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는지?

X 채널명이나 유튜버 이름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되기 어렵다.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힘들다.

다만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은 고려해 볼 수 있다. 단순히 태그를 붙이는 것만으로 상표법 위반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플랫폼의 내부 운영 기준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플랫폼에 문의해 볼 필요는 있다. 나아가 사람들이 내 채널 또는 나와 관계있는 채널로 오해할 정도로 태그를 이용하고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



심화학습

TV프로그램 이름인 '인생술집'을 유튜브 채널명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사람들이 티브이엔(tvN) 인생술집 프로그램과 같은 '술처'라고 오인을 한다면, 저작권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등에 걸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 실제로 '인생술집'은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가 다수의 상표·서비스표 출원 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싶다면 해당 유튜브 채널이 티브이엔(tvN)의 인생술집과는 관계가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등록 상표 검색은 한국특허정보원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에서 가능하다.

창작을 위해 '저작물'에 최대한 활용하자

**인생술집**

상세정보 | [출원공고](#) | [등록공고](#) | [등록사항](#) | [등록행정정보](#)

**상지정보** | [의정정보](#) | [도청본부\(비엔-이\)코드](#) | [합정처리](#) | [상표출원/지정상품](#)

(511) 상품분류	10만	38	<a href="#">다운로드</a>	<a href="#">크게보기</a>
(220) 출원번호(일자)	4020160117828(2016.12.26)			
(731) 출원인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111) 등록번호(일자)	4012788030000(2017.08.22)			
(260) 출원공고번호(일자)	4020170050738(2017.05.19)		<a href="#">전문다운</a>	
(112) 등록공고번호(일자)	4020170078514(2017.08.28)		<a href="#">전문다운</a>	
(641) 원출원번호(일자)				
(300) 우선권 주장번호(일자)				
관련출원번호				
공동상태지표	등록/발행 및 효력발생			
발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일자)	등록결정(일반)(2017.08.04)			
소급구분(일자)	(2016.12.26)			
심판사항				
구분	국내상표, 도형복합, 일반상표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가 상표 등록한 '인생술집'

## 2) 저작물 중에도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이 있어요

### 가) 오래된 저작물: 보호기간 만료

저작권은 소유권과 달리, 오래된 저작물은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다. 즉 보호기간이 경과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여부를 계산하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이 경과했다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무명(無名)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本명 외의 다른 이름)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도 마찬가지로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특이한 점은 영상저작물의 경우 저작자가 사망한 때부터가 아니라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는 점이다.

**참고** 저작인접권도 실연을 한 때, 음반을 발행한 때, 방송을 한 때 등으로부터 70년(방송은 50년)이 지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 저작권법

-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제86조(보호기간)** ②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12. 2.>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할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할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일반저작권	사후 30년	사후 50년	사후 70년
사전저작물	창작후 10년		
무명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	발행/공연후 30년	공표후 50년	공표후 70년
영상저작물			
저작인접권			
방 송		방송한 후 20년	방송한 후 50년
실 연	사후 30년 (저작물로서)	실연한 후 20년	실연한 후 50년
음 반	사후 30년 (저작물로서)	고정한 후 20년	고정한 후 50년
			발행한 후 50년
			발행한 후 70년

• 개정 저작권법 시행일 1957. 1. 28      1987. 7. 1      1994. 7. 1      2013. 7. 1

2007. 6. 29      저작권접권은 2013. 8. 1부터

음반의 고정과 발행의 분리

③ 창작을 위해 '저작권'에 최대한 활용하자

보호기간 연장 추이 일람표<sup>22)</sup>



베토벤의 교향곡도 저작권이 살아 있는지?

**X** 베토벤은 사망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가 작곡한 곡들은 모두 보호기간이 끝났고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22)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보호기간 안내서』, 2017, 30~31면.



책을 읽어 주는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오래된 책'은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읽어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오** 보호기간은 흔히 사후 70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30년 → 50년 → 70년으로 개정되어 왔고, 업무상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의 경우 기준으로 계산되는 지점이 달라져, 계산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누리집에서는 보호기간 만료 작가를 안내해주고 있으며, '보호기간 간이계산기'도 제공하고 있다.

보호기간이 만료된 책을 읽어줄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번역된 소설의 경우 번역자의 권리를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는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이를 번역한 사람이 아직 생존해 있다면, 번역문을 이용할 때 번역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원문을 이용하는 것만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이다.

더불어 저작물을 마음대로 '바꿔서' 작가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법률 이전에 상식의 문제이기도 한데, 저작권법은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고 저작물이 원상태 그대로 전해지기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저작권법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옛날 만화 영상(1990년대 말~2000년대 초)을 유튜브에 게시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오** 오늘날에는 20~30년만 지나도 오래된 느낌이 들겠지만, 저작권 보호기간은 최소 70년 이상이고 저작자가 젊은 시절에 창작한 작품이라면 더욱 길어진다. 1990년대 말~2000년대 초에 공표된 만화 영상은 보호기간이 만료되려면 앞으로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한다.

Q

그룹 퀸(Queen)의 보헤미안 랍소디(Bohemian Rhapsody)는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나?

X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가 관객 천만에 가까운 흥행 이후, 우리나라에서 퀸의 음악들이 다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젊은 층에서는 그룹 퀸(Queen)이 무척 옛날 사람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퀸이 1집 앨범을 발매한 때가 1973년이므로 보호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한다.

도움말

'1962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무명·이명·업무상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 영상저작물이 공표된 경우 등은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작가연대기

출생기준 사망기준

1920이전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1962

1963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작가연대기'

3 창작을 위해 '저작물'에 최대한 활용하자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저작권보호기간 간이계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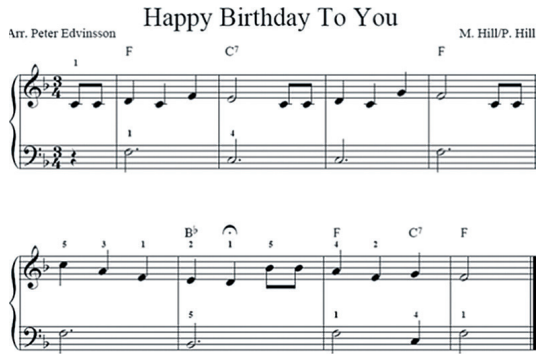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노래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났을까?

**Q**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노래는 창작된 지 100년이 지나도록 사랑받는 저작물이다. 영화에 사용될 때 지급하는 저작권료만 연간 수십억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생명력을 가진 노래이다. 이 노래는 1893년 밀드레드 힐과 패티 스미스 힐 자매가 만들었다. 학교 선생님이었던 이들은 '굿 모닝 투 올'이란 노래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멜로디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가 된다. 1988년 워너채플이 2500만 달러에 인수하였고 이후 방송, 영화 등을 중심으로 연간 200만 달러 이상 저작권료를 벌어들였다. 이는 사용료 총액으로는 비틀즈의 '예스터데이', 빙 크로스비의 캐롤 '화이트 크리스마스'보다도 더 많이 벌어들인 노래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2013년 제니퍼 넬슨 감독과 프로덕션은 이 노래의 보호기간을 거론하며 이미 지불한 1500달러의 저작권료를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보호기간이 끝났는데 저작권료를 받았으니 워너뮤직에 이를 돌려달라고 한 것이다. 넬슨이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지역법원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저작권이 무효란 판결을 하였고, 워너채플은 이미 받은 저작권료를 반환해주고 더 이상 권리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 영화를 수출할 때에는 미국 저작권법에

다른 보호기간 산정을 고려해야 하고, 2009년 영화 '7급공무원'에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어 저작권료를 납부한 사례가 있었다. 이제는 미국에서도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영화나 방송, 영리적 공연 등에서도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다.



보호기간 만료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소송까지 벌어졌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도움말**

저작권 보호기간의 만료 여부 판단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나라마다 저작권법이 다르므로, 해외에 콘텐츠를 수출하거나 해외 이용자를 겨냥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해당 국가의 저작권법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 나) 법령, 판결 등은 마음대로 가져다 쓰세요

법률·조약·고시·법원의 판결·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은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제7조 5호에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열거되어 있다.

###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신문 기사, 칼럼' 등을 보여주면서 소개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려고 한다. 신문 기사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허락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는지?

**X** 저작권법 제7조 5호에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자유 이용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주식 시세, 일기 예보, 인사/부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신문 기사나 칼럼은 사실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기자 등 작성자의 사상,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신문사들은 신문 기사를 무단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대대적인 저작권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 다.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경우

### 1) 인용, 공정이용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조항을 두고 있다(저작재산권의 제한과 공정이용: 제23조~제35조의3). [\[제2장 가. 3\] 나. 참조](#)

그 중에서도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알아두면 크게 도움이 되는 조문으로 '인용(제28조)·공정이용 일반조항(제35조의3)'을 소개한다.

#### ☑ 인용의 허용과 공정이용 일반조항

근거 조문	주요 요건 및 기준	법원이 문제없다고 판단한 사례
인용(제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범위</li> <li>• 공정한 관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색창에 4cm×3cm 정도의 크기로 이미지가 보여지는 것 (해상도가 높으면 불가)</li> <li>• 5살 아이가 여행 중 노래 부르는 모습을 촬영하여 블로그에 올린 것</li> </ul>
공정이용 (제35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을 것</li> <li>•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을 것</li> </ul>	

### 가) 인용의 요건

#### (1) 영리적 이용도 가능한가

인용이란 어떤 주장의 근거나 비판 또는 참고자료 등으로 삼고자 다른 사람의 말·글 등을 일부 가져오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①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②'정당한 범위 안에서 ③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그 밖의 목적도 가능하며 영리적 이용도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범위 안'인지 여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르는데, 이때 영리적인 경우가 비영리적인 경우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취미와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는' 전업 창작자이다.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28조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인용'할 수 있는지?**

**O** 영리적인 경우에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때보다,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은 인용 목적의 '예시'이다. 영리적 목적도 불가능하지 않다. 법원은 '인용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루어지는 한, '인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sup>23)</sup> 따라서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도 제28조에 따른 '인용'이 가능하다.

즉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때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때보다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영리적 콘텐츠에서의 '인용' 가능성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등>

구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략]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23)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35260 판결(확정).

(2) 정당한 범위의 판단 - 주종(主從)관계설/종합적 고려설

저작권법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정당한 범위', '공정한 관행'의 해석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되고, 따라서 선행 판례에서 그 기준을 가능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법원은 과거 인용의 대상이 되는 원저작물이 인용을 하는 원저작물과의 관계에서 부종적 성질을 가져야 한다는 이른바 '주종관계설'에 입각하여 정당한 범위 여부를 판단하여 왔다. "정당한 범위"에 들기 위하여서는 그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 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주종관계가 없으면 인용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하지만 주종관계가 없더라도 인용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오면서 인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컨대 대입 보고서 입시 문제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종관계가 없더라도' 합법적 인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하였다. 이 두 가지 기준과 판례들을 참고하여 '합법적 인용'의 범위를 예상해 볼 수 있다.

**Q** 개봉 예정 영화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면서 영화 장면을 삽입하였다. '합법 여부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의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원의 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법원은 크게 2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① 하나는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 즉 주종관계설이고 ② 두 번째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3 창작을 위해 '저작물'에 최대한 활용하자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① 과거 정당한 범위 요건을 충족하는 인용이 되려면,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인용된 부분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며 보족, 부연, 예증, 참고 자료 등으로 인용저작물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주종(主從)관계’를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예컨대 소설마당 사건에서 법원은 인용된 분량이 많아 인용된 부분이 추가 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이 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정당한 인용의 범위를 넘어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것이다. 누드 사진 전재 사건에서도 보도를 하려고 사진을 참고 자료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화보 형식의 독자적 감상용이라면 정당한 범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② 주종관계가 없더라도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용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판시도 있다. 이는 사실상 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3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정이용 일반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인용 조항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이다.

#### 주종관계 - ‘소설마당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 7. 12. 선고 95나41279 판결>

단편의 경우에는 전문을, 중·장편의 경우에도 상당한 분량을 인용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그 인용부분이 추가 되고 있다면, 이는 정당한 인용의 범위를 넘어 원저작물의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것이고,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부종적 관계에 있다거나 정당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 종합적 고려 -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나) 공정이용 일반 조항 신설

2011년 '공정이용 일반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제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①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②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 제한 입법의 한계 - 국제조약 '3단계 테스트' 참조]

저작권법은 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sup>24)</sup>

이 조문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이용(fair use) 조항과 매우 비슷하다. 따라서 미국 법원의 판단 또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1997년 미국의 유명 영화배우 로버트 미첨(Robert Mitchum)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미첨의 대표작 '지 아이 조(G. I. Joe)'의 주요 장면을 보여준 것을 공정이용(fair use)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로버트 미첨의 사망 소식을 전하고자 부수적으로 일부 영상이 삽입된 것으로 영화 자체를 대체(supersede)하는 것은 아니라는 등의 판단 근거가 부여되었다.

###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12.2.]

24) 다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부담은 있다.



나도 전문가

## 저작권 제한 입법의 한계 - 국제조약 '3단계 테스트'

저작권 제한은 다른 나라와 약속한 국제법의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베른협약,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WTO TRIPs),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CT),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 조약(WPPT) 등의 국제조약에서 저작권의 제한은 ① 저작물 등의 통상적인 이용(normal exploitation)과 충돌하지 않고 ② 저작권자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 ③ 특별한 경우(certain special case)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른바 '3단계 검사법(3 Step Test)'이다.<sup>25)</sup>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역시 이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1항은 아예 소위 '3단계 테스트'를 명문으로 반영해 두고 있다.

## 다) 인용·공정이용 확률 높이기

이상의 기준과 판례를 참고하여, 창작자들이 실무적으로 인용·공정이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 (1)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수록 유리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피인용저작물의 피해를 고려한 판시가 자주 발견된다.<sup>26)</sup>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서는 “인용의 정도에 있어서도 피인용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거나 전부 인용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되는 등** 인용이 상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1996. 7. 12. 선고 95나41279 판결:확정).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는 아예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도록 명문화하였다.

25) 더욱 깊은 내용을 알고 싶다면, 정찬모(2004), “국제저작권법상 3단계 테스트의 변천”, 계간저작권 제17권 제1호, 44면 이하 참조.

26) 미국의 공정이용(fair use) 판결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면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 사건을 살펴보면, 기출문제를 무단 수록한 것이 문제된 '대학입시용 문제집' 사건에서 법원은 '본고사 문제를 전부 수록함으로써 본고사 문제에 대한 일반수요자들의 시장수요를 상당히 대체'하였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학입시용 문제집 사건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 일부분으로서 위 대학입시문제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위 대학입시문제의 질문과 제시된 답안을 그대로 베꼈고, 이로써 문제집의 분량을 상당히 늘릴 수 있었으며, 특히 위 대학입시용 문제집에 학교법인들이 저작권을 보유한 본고사 문제를 전부 수록함으로써 본고사 문제에 대한 일반수요자들의 시장수요를 상당히 대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인용을 가리켜 교육을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수록 인용·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다. 감상용으로는 쓸 수 없을 정도로 사진의 '해상도를 낮추면' 인용이나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O** 해상도가 낮다고 하여 100% 자유이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인용이나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두 개의 판결을 비교해보면, 적법한 인용·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커다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두 건의 소위 섬네일(미리보기 이미지) 사건에서 법원은 사진의 크기·해상도에 따라 침해 여부를 상반되게 판결하였다. 4cm×3cm 크기로 섬네일 이미지를 이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반면, 400×300 픽셀로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sup>27)</sup>

27) 이미지 검색엔진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원한다면, 박준석(2011), "이미지 검색엔진의 인라인 링크 등에 따른 複製, 展示, 傳送 관련 著作權侵害 責任", 민사판례연구 제33호, 627면 이하; Kelly v. Arriba Soft Corp., Perfect 10 v. Google 사건 등 해외 사례를 정리해 놓은 자료로는 박영규(2012), "이미지 검색서비스의 저작권법적 문제 - 미국, 독일 및 한국에서의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37호, 127면 이하 참조.

적법한 인용이라고 본 사례 - '4cm × 3cm 섬네일 이미지' 사건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공소외인의 사진작품은 심미적이고 예술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 회사의 사이트에 이미지화된 공소외인의 사진작품의 크기는 원본에 비해 훨씬 작은 가로 3cm, 세로 2.5cm 정도이고, 이를 클릭하는 경우 독립된 창으로 뜬다고 하더라도 가로 4cm, 세로 3cm 정도로 확대될 뿐 원본 사진과 같은 크기로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본 사진과 같은 크기로 확대한 후 보정작업을 거친다 하더라도 열화현상으로 작품으로서의 사진을 감상하기는 어려운 만큼 피고인 회사 등이 저작물인 공소외인의 사진을 그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섬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보다는 이미지와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점, ……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가 공소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인의 사진작품을 이미지검색의 이미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용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정당한 인용이 아니라고 본 사례 - '400픽셀 × 300픽셀 엠파스 섬네일 이미지'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 10. 2. 선고 2006나96589 판결><sup>28)</sup>

피고가 2005년 5월경부터 인터넷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온 상세보기 이미지는 기존의 섬네일 이미지와 달리 그 해상도가 400×300 픽셀에 달하고 있어 그 인용된 내용과 분량의 측면에서 볼 때 원래의 사진작품이 가지는 심미감을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는 점, 피고가 위 무렵부터 제공하는 슬라이드 쇼 기능은 상세보기 이미지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자동으로 순환되게 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자로 하여금 원고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서도 원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사진작품을 용이하게 감상할 수 있게 하는 등 수요대체 효과가 생기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가리켜 구 저작권법 제25조에서 정한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8) 대법원 2007다76733에서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 2010나31862 사건에서 조정 성립.

(2) 이용 분량이 적을수록 유리

상식적으로도 이용 분량이 적을수록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는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을 고려 요소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용된 '분량이 적을수록'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Q** 분량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된 분량이 적다면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다.

러브레터 사건에서 상업용 영화의 러브레터 영화의 일부분을 삽입하였지만 110여분에 달하는 영화 중 30초 정도를 허락 없이 이용한 것이 인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약 53초 분량의 영상 중 초반부 약 15초 분량에 타인의 저작물이 불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용자 창작 콘텐츠(UCC)를 합법적인 인용이라고 본 사례도 있다.

하지만 정확히 몇 초까지는 괜찮다고 일률적으로 단언하기는 어렵다. 지상파 방송의 예능프로그램에서 약 3분간 영화를 보여준 것을 공정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러브레터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3. 18. 선고 2004카합344 결정>

인용 영화의 등장인물이 비디오로 제작된 피인용영화를 시청하는 장면을 통하여 원작인 피인용 영화의 주요장면 중 일부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인용영화에 삽입한 것은 ... 인용부분은 110여 분에 달하는 인용영화의 총 상영시간 중 불과 30초에 불과하다는 사정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인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5살 아이가 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블로그에 영상을 올렸다. 작곡가나 작사가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는데,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X** 노래 부르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게시하려면,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창작을 위해 이용된 노래의 분량이 짧고 시장 수요에 영향이 거의 없다면 인용·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유명한 판례가 있다. ‘미쳤어 UCC’ 사건이다.

다섯 살 된 딸이 의자에 앉아 ‘미쳤어’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것을 촬영한 사용자 창작 콘텐츠(UCC) 형태의 53초 분량의 동영상을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사건인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복제 전송의 중단 조치를 요구하면서 법정 분쟁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허락을 받지 않고 영상에 해당 곡을 이용(복제·전송)한 것은 분명하다. 쟁점은 인용 등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자유이용이 가능한지에 모아졌는데, 법원은 제28조 인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저작물의 양은 전체 74마디 중 7~8마디에 불과하고 녹화 당시 주변의 소음 때문에 약 53초 분량의 동영상 중 초반부 약 15초 정도만 이 사건 저작물을 부르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린 아들이 프린스(Prince)의 노래 ‘렛츠 고 크레이지(Let's go crazy)’를 부르는 것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렸다가 저작권자 유니버설(Universal)의 요구에 삭제된 것이 문제된 바 있다. 소위 렌츠(Lenz) 판결(Lenz v. Universal Music Co. 572 F.Supp.2d N.D.Cal.2008)에서 저작권자인 유니버설이 게재 중지 요청을 하기 전 렌츠의 공정이용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렌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sup>29)</sup>

판결문의 논리 구조에 대해서는 비판과 이견도 있으나, 사용자 창작 콘텐츠 제작 시 음악저작물 사용의 지침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29) 다만 미국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삭제 요구 시 공정한 이용 여부에 대한 고심(a good faith belief)을 요구하여 우리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



손담비의 '미쳤어'를 따라 부르는 UCC<sup>30)</sup>



Prince의 'Let's Go Crazy'를 따라 부르는 UCC<sup>31)</sup>

▶▶▶ 참고 주의사항 : 커버 영상(노래, 춤 등)과 같이 노래의 대부분을 이용하는 경우는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음원이나 뮤직비디오가 삽입되는 편집 영상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제3장 다. 참조]

**Q** 텔레비전 방송에 나온 영상을 '5분 이내'로 사용하려고 한다. 5분 이내의 이용은 공정이용이므로 허락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X**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용된 저작물의 분량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숫자로 '몇 초까지 괜찮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과거에 사용자 창작 콘텐츠(UCC)의 저작권 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때 일부에서 '인용권'의 입법을 주장한 적이 있다. 당시 '인용권'이란 비영리목적 동영상 편집을 사용자 창작 콘텐츠 생산 행위로 보고 기존 동영상을 5분 이내로 편집하는 것은 허용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는 현행 저작권법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며, 입법도 되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 방송사업자들은 과거 관행적으로 용인하던 다른 방송사의 '자료 화면' 사용에 대해서도 저작권 행사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에스비에스(SBS)와 영화사의 분쟁 사례로 '스타UCC 대괴수 용가리' 사건이 있었는데, 예능 프로그램에서 약 3분간 영화를 보여준 것을 공정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큰 참고가 된다. 에스비에스(SBS)의 오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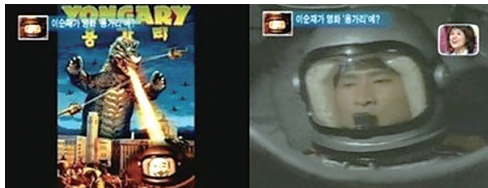
30) 뢰중(yang456),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너무 미워서 떠나버렸어", <<http://blog.naver.com/yang456/140062293006>>  
 31) Stephanie Lenz, "Let's Go Crazy" #1, <<https://www.youtube.com/watch?v=N1KfJHFw1hQ>>

3 창작을 위해 '저작물'에 최대한 활용하자

프로그램에서 이순재 씨가 이 사건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방영하였다. 법원은 이를 이용의 성격이 상업적이고 영리적이라며 구 저작권법 제28조에 정해진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스타UCC ‘대괴수 용가리’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 영화를 일부 인용한 것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피고 에스비에스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료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한 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화의 인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의 위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SBS “신동엽의 있다! 없다?”의 스타 UCC 코너에서 무단으로 인용한 ‘대괴수 용가리’의 장면

(3)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면 유리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새로운 기능을 창출하는 '생산적 이용'의 경우 공정이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애커프 로즈(Acuff-Rose) 사건에서 “단순히 이용되는 저작물을 대체(supersede)하는 것이 아니라, 원저작물을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로 변경하는 변용적인 것이라면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하였다. 미국에서는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사진저작물을 이용하는 것도 감상용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생산적 이용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Kelly v. Arriba 336 F.3d.811). 패러디 역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심화학습

패러디는 공정이용?

저작권 침해 의혹을 '패러디'라며 항변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성공한 패러디'에 해당한다면, 허락을 받지 않은 패러디도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 프랑스는 이례적으로 저작권법에 패러디가 자유이용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프랑스 저작권법 제122조의5). 영국, 미국, 독일 등에서 패러디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패러디는 원작의 시장적 가치를 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인류의 문화유산을 풍요롭게 하므로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 그럼에도 원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풍자·비평하고 비꼬는 것을 허락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른바 '직접 패러디'는 공정이용으로 인정하자는 논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패러디에 대한 별도의 저작권법 조문은 없지만, 패러디를 공정이용으로 볼 여지는 있다. 영리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에서는 랩 그룹 '투 라이브 크루(2 Live Crew)'가 '로이 올비슨'의 '오, 프리티 우먼(Oh, Pretty Woman!)'을 패러디하여 불렀는데, 그 음반이 1백만 장 이상 팔리며 큰 수익을 올렸다.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였지만 연방대법원은 '상업성이 있더라도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sup>32)</sup>

하지만 패러디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사례가 흔하지는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패러디 항변을 주장한 사례는 많으나 이를 인정한 판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법원은 '유혹의 소나타' 사건이나 '서태지의 컴백홈' 사건에서 모두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참고로 미국의 유명한 패러디 가수 '위어드 알 안코빅(Weird Al Yankovic)'은<sup>33)</sup> 패러디에 앞서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으며, 저작권자의 거절로 패러디를 포기한 사례도 많다.<sup>34)</sup>



마이클 잭슨의 'Beat It'(좌)과 위어드 알 안코빅의 'Eat It'

32)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 577-78, 114 S.Ct. 1164, 127 L.Ed.2d 500 (1994).

33) 본명은 앨프리드 매튜 안코빅(Alfred Matthew Yankovic)이다.

34) 예컨대 프린스의 경우는 허가를 내주지 않아 패러디 음악은 만들 수 없었다고 알려져 있다.



유명한 음악을 ‘패러디’하여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려고 한다. 패러디므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지?

**X** 우리가 일상적으로 ‘패러디’라고 말하는 것들 모두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패러디의 대부분은 원저작물의 유명세를 이용하는 소위 ‘매개 패러디’ 라는 것인데, 이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법원에서 패러디 항변을 받아들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과거 음치 가수로 유명해진 이재수 씨가 서태지의 히트곡 컴백홈을 컴배콤으로 바꿔 부르고 패러디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법원은 ‘원곡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원곡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저하나 잠재적 수요의 하락이 전혀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라며, 패러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컴배콤’ 패러디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1. 11. 1. 선고 2001카합1837 결정>

패러디로서 저작물의 변형적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저작권법 제25조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원저작물에 대한 비평·풍자 여부, 원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성격, 이용된 부분의 분량과 질, 이용된 방법과 형태,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 내지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중략] 신청인의 이 사건 원곡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패러디로서 보호되는 것은 당해 저작물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인 경우라 할 것이고 당해 저작물이 아닌 사회현실에 대한 것까지 패러디로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신청인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원곡을 이용하였으며, 이 사건 개사곡이 신청인의 이 사건 원곡을 인용한 정도가 피신청인들이 패러디로서 의도하는 바를 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개사 곡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원곡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저하나 잠재적 수요의 하락이 전혀 없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결국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개사 곡은 패러디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것…….



서태지의 '컴백홈'(좌)을 패러디했다고 주장했던 이재수의 '컴배콤'(우). 법원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였다.

Q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패러디'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는지?

O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패러디는 공정이용(제35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가 흔히 패러디라고 부르는 매개 패러디는 공정이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해당 저작물을 직접 조롱, 풍자하는 '직접 패러디'는 공정이용이 인정될 여지가 높는데, 이때 저작권 침해 여부와는 별개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도록 한다.





**‘사회 비평’을 하고자 널리 알려진 영화의 장면들을 이용하는 것도 적절한 패러디인지?**

**X** 저작권법에서의 패러디란 ‘원작품’을 비평, 조롱, 풍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은 ‘패러디로서 보호되는 것은 당해 저작물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인 경우라 할 것이고 당해 저작물이 아닌 사회현실에 대한 것까지 패러디로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원작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사회 비평을 한다거나, 광고 홍보에 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출처 표시는 잊지 마세요

인용·공정이용에 해당하더라도, 출처 표시는 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sup>35)</sup> 또한 저작자의 이름도 표시해 주어야 한다. [\[제2장 가. 3\) 나\) 참조\]](#)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인터넷에서 ‘펌글’한 경우, 출처 명시는 ‘사이트 주소’를 적어 두는 정도로 하면 되는지?**

**O** 저작권법은 출처 명시 방법에 대해 단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방법은 관행을

35)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된다.

따른다. 인용한 저작물에 저작자, 수록 매체 등을 적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터넷에서 검색된 자료의 경우 '인터넷에서 검색된 이미지의 출처 명시는 원래의 이미지가 수집된 웹사이트의 주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 판례가 있는데, 큰 참고가 된다.

드림위즈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5. 선고 2004가합86819 판결>

섬네일 이미지에 저작자인 원고의 실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사진과 같이 인터넷에서 검색된 이미지의 출처명시는 원래의 이미지가 수집된 웹사이트의 주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섬네일 이미지를 선택하면 큰 이미지가 나타나고 그 아래에는 제목, 이미지 설명과 더불어 원고 웹사이트의 주소와 원본 이미지의 주소가 표시되므로, 피고들이 출처명시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 2) 영상에 함께 찍히는 저작물들

### 가) 거리의 건축물·조각상 (파노라마의 자유)

촬영을 하는 과정에 미술저작물이나 건축저작물 등 저작물이 함께 찍힐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미국에서는 영화 '배트맨 포에버' 사건이 대표적이다. 워너브라더스사는 영화 '배트맨 포에버'에서 엘에이(LA) 시내에 있는 특이한 건축 조형물을 배경으로 촬영했는데, 이에 건축 조형물의 저작권자가 수백만 달러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능 프로그램에서 광화문의 세종대왕상·이순신 장군상이 촬영되었는데, 이것이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위 파노라마의 자유라고 하여, 영상의 배경으로 촬영되는 것이 대부분 허용된다. '배트맨 포에버' 사건에서도 미국 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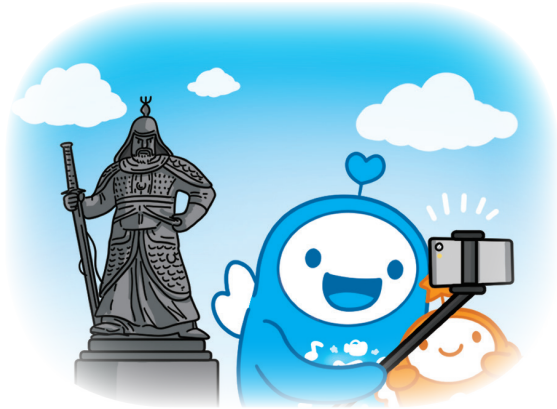


**촬영을 하는 과정에 이순신 장군상이 함께 찍혔다.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X**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이순신 장군상은 촬영 과정에 배경으로 나오더라도 문제가 없다.

광화문을 지키는 이순신 장군상은 아직 저작권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저작물이다. 따라서 이 동상을 이용하려면 저작권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다면' 허락을 받지 않고도 이용이 가능하다.

업서 판매용으로 촬영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락을 받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 나) 배경에 '그림 하나': 부수적 이용

의도치 않게 배경 화면에 저작물이 찍히는 경우가 있다. 그림이나 조각 심지어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어도 되는지도 논란이 되곤 한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부수적 이용은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해당 저작물을 중심으로 촬영하여 판매하는 등 부수적 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이 물론이다.



**'저작물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개인 방송을 진행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X** 티셔츠에 그려진 그림이 어렵듯하게 나오더라도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부수적 이용을 극소성의 항변(de minimis)이라며<sup>36)</sup>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다. 비록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이용된 저작물의 비중이 매우 작은 경우와 같이 부수적 이용에 대하여 실질적 유사성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영화 '세븐'에서 범인의 방안 희미한 불빛 아래 어렵듯하게 보이는 사진 작품에 대하여<sup>37)</sup> 1심에서는 공정이용의 항변으로 접근했지만, 2심 법원은 아예 피고의 극소성 항변을 인정하여 공정이용 여부를 다룰 필요도 없다고 하였다.<sup>38)</sup> 마찬가지로 영화 '왓 위민 원트(What Women Want)'에서 주인공 사무실 안에 핀볼 기계의 뒷유리 디자인,

36) 이는 “법은 사소한 것에 관여하지 않는다(De minimis non curat lex)”라는 법언에서 온 것이다. 연방항소법원은 극소성의 항변이 적용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권리침해가 너무 하찮아서 법이 그것에 어떠한 효과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이다. 둘째는 복제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서 침해를 구성하기 위한 실질적 유사성의 양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극소성 항변이 공정이용 항변과 관련된 경우이다(Ringgold v. Black Entertainment Television, 126 F. 3d 70, 74-76 (2d Cir. 1997)). 상세한 설명은 문건영(2019), “미술저작물 등의 부수적 이용”, 계간저작권 제32권 제1호, 129면 이하 참조.

37) 원고의 사진들은 1분 30초간 짧게 11개의 장면에서 비춰졌다. 사진들은 초점이 맞지 않았고, 2개의 장면 이외에는 먼 배경으로 촬영되었으며, 또한 배우들로 가려졌다. 2개의 장면에서도 사진 안의 인물들은 거의 인식되지 못했고, 한 장면은 4초간, 다른 장면은 2초간 이어졌다.

38) Sandoval v. New Line Cinema Corp., 147 F.3d 215(2d Cir 1998)

경기장의 디자인이 문제되어 소송까지 간 사건에서도 저작권 침해는 부정되었다.<sup>39)</sup>

영국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이 예술 작품에 부수적으로 포함되어도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sup>40)</sup> 일본도 다른 행위에 따라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저작물의 이용은 침해가 아니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제30조의2). 독일 저작권법에도 제57조에서 “저작물이 복제, 배포, 혹은 공개재현의 본래 대상 이외의 것으로서 중요하지 아니한 부수적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복제, 배포 및 공개재현이 허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화 〈Seven〉에서 문제된 사진 작품(좌)과  
영화 〈What Women Want〉에서 문제된 핀볼 기계 디자인(우)

39) *Gottlieb Dev. LLC v. Paramount Pictures Corp.*, 590 F. Supp. 2d 625 (S.D.N.Y. 2008). 핀볼 기계가 나오는 장면은 총 3분 30초 정도인데, 항상 배경에 있었고 초점도 맞지 않았다.

40)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 31.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모델에게 '비 더 레드(Be the Reds)' 티셔츠를 입고 '비 더 레드(Be the Reds)' 글자가 잘 나오게 촬영하여 그 사진을 판매하려면, 이 도안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는지?

**Q** 부수적 이용이 아니라, 저작물을 중심으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리거나 이미지를 판매하려면 마땅히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비 더 레드(Be the Reds)' 티셔츠·두건 사건에서 *Be The Reds!*가 인쇄된 티셔츠나 두건을 착용한 인물을 촬영한 사진을 판매한 것이 문제된 적이 있다. *Be The Reds!*는 2001년 '붉은 악마'의 광고 대행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박모 씨가 창작한 것으로, 저작권자는 티셔츠, 운동화, 두건 등에 이 사건 저작물의 사용료를 받아 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 저작물이 새겨진 티셔츠, 두건 등을 착용한 모델 사진을 판매하자,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이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사진 중 일부 사진들에는 *Be The Reds!*의 원래 모습이 온전히 또는 대부분 인식이 가능한 크기와 형태로 사진의 중심부에 있어 창작적 표현이 그대로 느껴지고, 대상 도안의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응원의 느낌이 사진들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사진의 개성과 창조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바, 이처럼 이 사건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 그대로 느껴지는 이상 위 사진들과 이 사건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저작물 이용이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특히 문제된 것은 저작권법 제28조 인용에 해당하는가 여부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부정한 것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침해사진들을 누리집에 게시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sup>41)</sup> 이 사건 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촬영하여 만든 것'이라는 점, 이 사건 저작물의 원래 모습이 온전히 또는 대부분 인식이 가능한 크기와 형태로 사진의

3 창작을 위해 '저작물'에 최대한 활용하자

41) 영리적 이용이라고 하여 제28조 인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원은 영리적인 경우 그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임을 지적하였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등.

중심부에 위치하여 양적·질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자유이용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프랑스에서도 르 코르뷔지에가 디자인한 가구를 촬영한 사진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던 게티 이미지(Getty Images)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가구가 사진의 중앙에 있으며 가구의 창작적 특징이 사진에 드러나 있어 부수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sup>42)</sup>



법원은 위 사진<sup>43)</sup>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유죄)라고 판단하였다.

‘Be the Reds’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42) Le Corbusier v. Getty Images (Paris Court of Appeals, Pole 5, 2nd chamber June 13, 2014).

43) 문건영(2019), “미술저작물등의 부수적 이용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제32권 제1호, 138면.

## 라. 허락 받고 이용하기

### 1) 저작권자에게 허락 받기

#### 가) 사전 허락의 원칙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유이용 사유가 특별히 없더라도, 허락을 받으면 이용이 가능하다. 저작권법 또한 이용허락에 대한 조문을 마련하고 있다. 비영리·공익 목적이라도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허락은 이용 전, 즉 사전에 받아야 한다. 권리자가 나타나면 사용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어 두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 저작권법

-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을 영상에 활용하려고 하는데, 출처만 잘 표기하면 문제가 없는지?

**X** 공정이용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은 사전에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한다.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저작물이어도 마찬가지이며, 출처 표시를 잘 했다는 것만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 Q

질병관리본부의 홍보 포스터에 마블 캐릭터가 이용된 것을 보았다. '공익적 목적'이면 캐릭터를 허락 없이 이용해도 되는가?

**X** 캐릭터도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는다. 공익적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캐릭터란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에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한다. 해당 캐릭터에 별개의 개성(identity) 즉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영화 등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원도 마시마로가 애니메이션으로부터 독립된 저작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sup>44)</sup>

따라서 마블 캐릭터 형상이 복제되어 이용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만화나 영화의 캐릭터들의 모습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된다. 특히 디즈니는 캐릭터 저작권 관리에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2018년 말, 질병관리본부가 만든 손 씻기와 기침 매너 등 감염병 예방에 필수적인 개인 위생 관리법을 담은 광고 영상에 어벤져스 캐릭터가 대거 등장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아이언맨·헐크·캡틴아메리카·토르 등 디즈니 마블의 인기 캐릭터를 무단 사용한 것이 아니라, 1년여의 시간 동안 디즈니를 설득하여 허락을 받아 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질병관리본부의 손 씻기 홍보 포스터

44) 정진근(2017), 『사례로 알아보는 창작자와 이용자를 위한 저작권안내서』, 한국저작권위원회, 88면.



**내가 유명 캐릭터를 '직접 그려서' 이용하는 것은 괜찮은지?**

**X**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간혹 내가 직접 비슷하게 그리면 괜찮은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명 캐릭터와 동일한 모양의 인형을 만들거나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물론, 캐릭터를 '똑같이 따라 그리는 것'도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한다.

**나) 권리자를 찾아라: 권리자 탐색 방법**

허락을 받기에 앞서 상대방이 '권리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상식적으로도 권리자가 아닌 사람에게 허락을 받는다고, 저작권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다.

다음으로 권리자가 누군지 알았다면, 권리자와 '연락'이 되어야 협의와 허락이 가능하다. 현실에서는 저작권자를 탐색하고 연락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거래 비용은 종종 저작권료보다 더 큰 부담이 되기도 한다.

**(1) 작가님, 권리자가 맞으십니까: 저작자≠저작권자**

흔히 창작자를 찾아가 허락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책의 저자나 작곡가, 화가 등 '저작자'가 항상 '저작권자'인 것은 아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상속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저작권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3 창작을 위해 '저작물'을 최대한 활용하자



책을 읽어 주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항상 책의 '저자'에게 허락을 받고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무시해도 되는지?

**X** 작가가 저작권자가 아닐 수도 있다.

저작권재산권에 대한 허락은 '저작권자'에게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저자가 항상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저작자는 창작한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보유한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므로 창작자는 저작자인 동시에 저작권자가 되지만, 저작권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하므로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달라질 수 있다(저작자≠저작권자).

## (2) 신탁관리단체

신탁관리업자란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 등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권리를 신탁<sup>45)</sup> 받아 관리하는 자이다.<sup>46)</sup> 권리자가 단체에 신탁을 해두었다면,<sup>47)</sup>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를 알게 되어도 연락처와 같은 개인 정보를 얻기는 어려우며, 실제 협상을 하며 허락을 받는 과정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저작권이 집중되어 있는 신탁관리단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45)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 두산백과, "신탁",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19268&cid=40942&categoryId=31721>>, (최종방문일 : 2019. 10. 10.)

46)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신탁을 받지는 않고, 권리의 이용에 관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자이다.

47) 권리자가 신탁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용허락을 할 수 없으며, 신탁관리단체만이 정당한 이용허락의 권한이 생긴다. 즉 신탁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자가 아니라 신탁관리단체를 찾아가야 한다.

도움말

주의사항

신탁관리단체는 저작재산권만 허락해 줄 수 있다. 저작권격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저작권격권의 일신전속성<sup>48)</sup>).

저작권법

제14조(저작권격권의 일신전속성) ① 저작권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분야별 신탁관리단체와 연락처

분야	단체명	집중관리 분야	허가일	연락처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자(작곡, 작사, 음악출판사)의 권리	1988. 2. 23.	02-2660-0400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자(작곡, 작사, 음악출판사)의 권리	2014. 9. 12.	02-333-8766
	한국음반산업협회	음반제작자의 권리	2003. 3. 17.	02-3270-5900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음악실연자(가수, 연주자 등)의 권리	2000. 11. 14.	02-745-8286
어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어문, 연극, 영상, 미술, 사진 저작자의 권리	1989. 3. 16.	02-508-0440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작가의 권리	1988. 9. 20.	02-782-1696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영화시나리오 작가의 권리	2001. 9. 12.	02-2275-0566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어문저작물의 복사권, 전송권의 관리	2000. 11. 14.	02-2608-2800
영상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상제작자의 권리	2005. 11. 9.	02-2267-9983
방송	한국방송실연자협회	방송실연자(탤런트, 성우 등)의 권리	2002. 2. 20.	02-784-7802
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자의 권리	2006. 6. 7.	02-2001-7114
공공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2013. 9. 23.	02-3153-2873

48) 법률에서 권리나 의무 등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귀속되는 성질을 일신전속성이라고 한다. 권리나 의무의 내용이 특정인에게만 귀속되므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상속되지 않는 특성이 있으며,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의 정신적·인격적인 이익의 보호와 관련이 있는 '저작권격권'이 일신에 전속되는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3 창작을 위해 '저작물'을 최대한 활용하자

# Q

## 저작권격권도 신탁관리단체에서 허락받을 수 있는지?

**X** 저작권격권은 저작자에게 별도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격권은 양도가 되지 않고 항상 '저작자'(창작자)가 보유한다. 따라서 신탁관리단체에 신탁이 불가능하다. 법원도 '저작권격권은 성질상 저작권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될 수 없으므로, 신탁 관리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하고 저작권격권은 신탁 관리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소셜마당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 7. 12. 선고 95나41279 판결>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은 '저작권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저작권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양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탁법상으로도 특정의 재산권만이 신탁의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어 재산권이 아닌 권리는 신탁법상 신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 중 저작권격권은 성질상 저작권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될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 제78조에 의하여 신탁관리 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하고 저작권격권은 신탁관리 될 수 없다.

### (3) '권리자 찾기' 누리집

**도움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 저작물과 저작권 위탁관리업자 관리 저작물의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권리자 찾기' 누리집(<https://findcopyright.or.kr>)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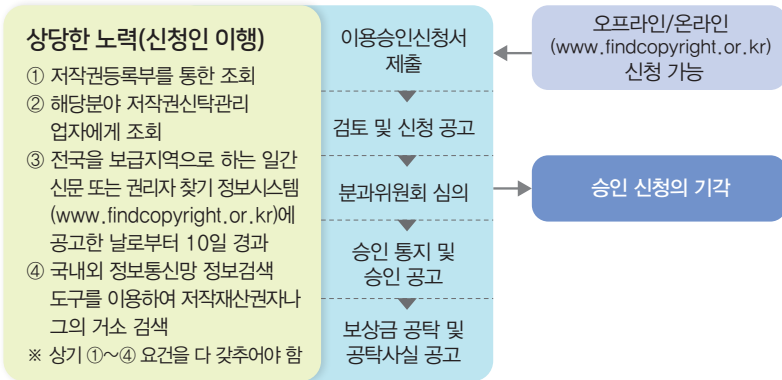


한국저작권위원회 권리자 찾기 누리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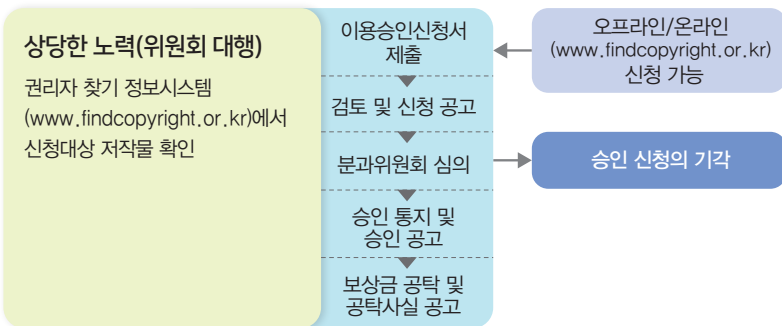
(4)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면: 법정허락

신탁관리단체에 문의해보고, 저작권 찾기 누리집에서 검색도 해보고, 권리자를 수소문해 보았는데도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때에도,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라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저작권법은 이처럼 권리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는데, 이를 '법정허락'이라고 한다. '법정허락'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찾을 수 없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관련 문의: ☎ 055-792-0085).

✓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에 대하여 권리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신청인이 이행하여 신청하는 경우 (법 제50조 및 영 제18조 제1항)



✓ 상당한 노력이 완료된 3년경과 미분배 보상금 저작물, 그 밖의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법 제50조 및 영 제18조 제2항)



법정허락의 절차(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3 창작을 위해 '저작물'에 최대한 활용하자

**저작권법**

**제50조(저작권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권리자를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연락을 주면 언제든지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라고 쓰고 내 연락처를 남겼다. 침해의 의사가 없음을 표현한 것인데, 이 경우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

**X** 저작권자의 허락은 '사전'에 받아야 한다. 또한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이용을 못하게 되므로, '연락주면 언제든지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라고 쓴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권리자를 열심히 찾아보았으나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경우, 이용을 포기하지 않도록 '법정허락'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법정허락'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찾을 수 없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저작권자를 알지 못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이기에, 권리자의 허락 대신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 문의(☎055-792-0085)도 가능하다.

참고로 영화 '해어화'를 보면 배우 차지연 씨가 이난영 역으로 출연해

'목포의 눈물'을 부르는 장면이 나온다. 영화 제작 과정에서 이 노래의 작사가를 찾을 수 없어 고민하던 차에, 법정허락 제도를 활용하여 저작권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sup>49)</sup> 최근 절판된 도서나 오래된 노래·영화 등에 대한 법정허락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 다) 조건 협의와 계약 체결

권리자를 찾고 연락이 닿았으면, 조건을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사용료에 대하여 이견이 큰 경우가 많다.<sup>50)</sup> 적정 사용료 협상의 시작점은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징수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신탁단체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

계약서에는 계약의 대상, 이용허락 기간, 자료 인도 등 권리자의 의무와 사용료 납부 등 이용자의 의무 등을 적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저작권 표준계약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접속 후 [메뉴] - [이용안내] - [서식 다운로드] - [저작권 표준계약서]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저작권 표준계약서

49) 법정허락 제도를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이영록·최진원(2010), 『법정허락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참조(www.copyright.or.kr 자료 게시판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

50) 신탁관리단체의 경우 사용료가 미리 공표되어 있으므로 어렵지 않으나, 에이전시나 개인 권리자의 경우 권리자와 이용자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다.

## 2) 미리 허락 의사를 밝힌 '고마운 사람들'

### 가) 저작권자가 미리 허락의 의사를 밝힌 경우

#### (1) 허락의 방식은 상관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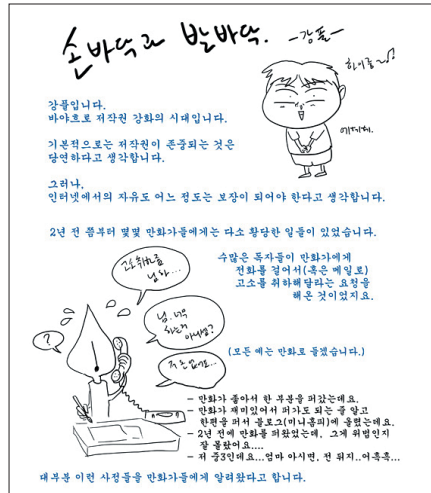
저작권자가 미리 '허락의 의사'를 밝혀 놓는 경우가 있다. 이용자는 권리자가 제시한 조건만 지키면 바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sup>51)</sup>



#### 이용허락과 오픈라이선스

**이용허락 절차:** 권리자 탐색 → 범위 및 조건 등 개별 협상 후 합의 [계약 체결]  
**오픈라이선스(권리자의 이용허락 포괄적 의사표시):** 교섭 없이 이용(범위, 조건 준수)

예컨대 강풀 작가는 포털 사이트 다음에 올린 '손바닥과 발바닥'이라는 글에서 자신의 만화 '핼짚'을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신의 만화 맨 아래 손바닥 모양을 그려 놓으면 손바닥 크기 정도의 '부분 핼짚'을, 발바닥 모양을 그려 놓으면 '전체 핼짚'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는 것이다. 이용자는 별도로 강풀 작가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사용료를 협의할 필요 없이, 만화를 '퍼가도' 된다.



강풀 작가의 이용허락 표시  
 '손바닥과 발바닥'

51) 정진섭 외, 『CCL과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 저작권보호센터, 2009, 35면.

(2) 공개되어 있다고 허락한 것은 아니에요

웹툰과 같은 경우에 무료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역시 허락 없이 '퍼가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 공개하는 것이 곧 허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수능 문제나 교과서와 같이 널리 알려진 저작물도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한다.

고소·고발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허락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도 물론이다. 일부 '저파라치'들이 이미지나 영상 등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을 알고도, 차단하지 않다가 추후 이용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흔하다.

Q

인터넷에 글자체(폰트) 파일이나 이미지가 '공개'되어 있다. 이미 무료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것인데, 이를 이용할 때에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O

공개 여부는 저작물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저작물도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한다.

Q

웹툰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으므로 마음대로 퍼가도 문제가 없는지?

X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고 하여, 저작권을 포기했다거나 자유이용을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Q

수능 시험 문제나 교과서 등의 해설 영상을 제작하고자 시험 문제와 교과서를 이용하려고 한다. 교육 목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것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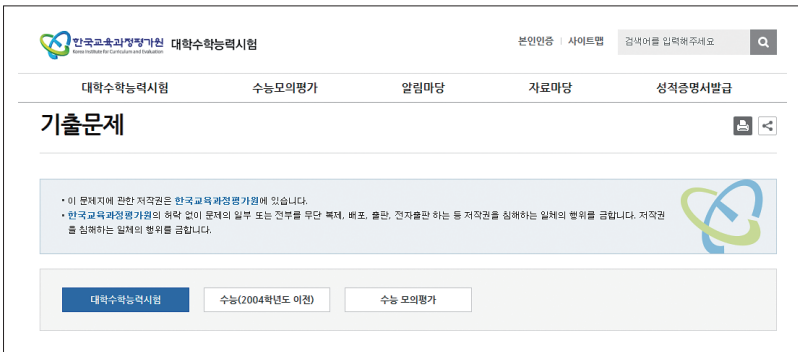
X

시험 문제나 교과서에도 당연히 저작권이 있다. 수능 기출문제를 풀이해주는 유튜브 영상 등은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런데 수능 기출문제의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다. 평가원

누리집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허락 없이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라고 안내되어 있다.<sup>52)</sup> 허락을 받고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 043-931-0114).

과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둘러싸고 학원과 출판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이 벌어진 바 있다. 법원은 고등학교 교사들이 소속 학교 학생들의 학업 수행 정도를 측정하고 내신 성적을 산출하려고 출제한 시험 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였다.<sup>53)</sup>

교과서의 저작권은 해당 출판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익 목적의 이비에스(EBS) '교과서 과외'에서도 출판사들에 사용료를 주고 허락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서와 관련한 민원 상담은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1566-8572)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 수능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 안내가 되어 있다.

52)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대해서는 최진원(2019),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보법학』 제23권 75면 이하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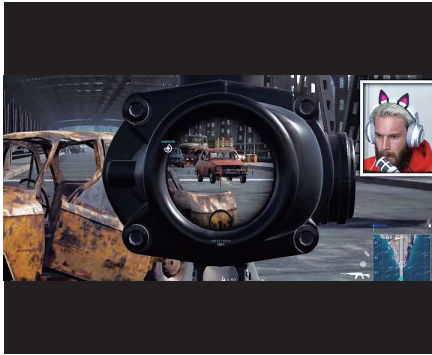
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8. 선고 2005가합733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2. 12 선고 2006나11027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다5004 판결(족보닷컴 사건)

Q

저작권자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는데, 허락한 것으로 봐도 되는지?

**X** 고소·고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허락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지금까지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문제 삼지 않으리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구독자가 9,900만 명에 이르는 인기 유튜버 퓨디파이(PewDiePie)는 게임 '배틀 그라운드'를 방송하던 중 흑인을 비하하는 말을 하여 문제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게임 '파이어워치(Firewatch)'의 개발사인 캠프 산토(Campo Santo)는 퓨디파이가 예전에 유튜브에 올린 파이어워치 게임 영상을 내려달라고 구글에 요청하였다. 퓨디파이의 '파이어워치' 영상은 6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지만,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영상들은 차단되었다.



문제가 된 퓨디파이 배틀 그라운드 스트리밍<sup>54)</sup>



'파이어워치' 개발사 캠프 산토의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인 '숀 매너먼'의 트윗

54) <http://www.thisisgame.com>

## 나) 자유이용허락표시(CCL), 공공누리(KOGL)

미리 허락의 의사를 밝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자유이용허락표시(CCL)는 허락의 의사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이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저작물에 적용하려고 공공누리(KOGL)를 개발하였는데 내용은 자유이용허락표시(CCL)와 유사하다.

### (1) 자유이용허락표시(CCL : Creative Commons License)

로렌스 레식 미국 스탠포드대학 교수가 창안한 오픈라이선스의 표준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방식이다.

자유이용허락표시(CCL)에는 4가지 이용 방법과 조건이 있다. 첫째, 저작권정보 표시, 둘째, 비영리적 목적, 셋째, 변경 금지, 넷째, 동일조건 변경 허락 등이다. 저작권자의 의지에 따라 4가지 조건 가운데 필요한 것을 조합해서 쓰면 되는데, 총 6가지 라이선스가 가능하다.

이용자는 권리자가 미리 밝혀놓은 조건만 준수하면, 별도로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6가지 유형의 표준라이선스

심벌마크	유형 및 이용허락의 범위
	<b>저작권정보 표시(CC BY)</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정보 표시</li> <li>· 상업적 이용 가능</li> <li>· 변경(2차적저작물 작성 포함) 가능</li> </ul>
	<b>저작권정보 표시+비영리(CC BY-NC)</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정보 표시</li> <li>· 상업적 이용 금지</li> <li>· 변경(2차적저작물 작성 포함) 가능</li> </ul>
	<b>저작권정보 표시+변경금지(CC BY-N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정보 표시</li> <li>· 상업적 이용 가능</li> <li>· 변경(2차적저작물 작성 포함) 금지</li> </ul>

심벌마크	유형 및 이용허락의 범위
	<p><b>저작권정보 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CC BY-SA)</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정보 표시</li> <li>· 상업적 이용 가능</li> <li>· 변경(2차적저작물 작성 포함) 가능하나 동일 이용조건 적용해야 함</li> </ul>
	<p><b>저작권정보 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CC BY-NC-SA)</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정보 표시</li> <li>· 상업적 이용 금지</li> <li>· 변경(2차적저작물 작성 포함) 가능하나 동일 이용조건 적용해야 함</li> </ul>
	<p><b>저작권정보 표시+비영리+변경금지(CC BY-NC-ND)</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정보 표시</li> <li>· 상업적 이용 금지</li> <li>· 변경(2차적저작물 작성 포함) 금지</li> </ul>

※ 저작권정보 : 저작물명, 저작자명, 출처, 자유이용허락표시(CCL)

**Q 자유이용허락표시(CCL) 표시가 있으면, 항상 영리적으로 이용해도 되는지?**

**X** 자유이용허락표시(CCL)의 유형도 6가지가 있다.  
비영리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NC) 표시를 해두었다면, 영리적 이용은 불가하다.

(2) 공공누리(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려고 노력한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KOGL)는 자유이용허락표시(CCL)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등이 미리 저작물 이용허락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4가지 유형을 마련하고 공공누리 표시마크를 개발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다. 공공누리 표시가 되어 있는 저작물은 공공기관 등이 이용허락의 의사를

3 창작을 위해 '저작물'에 최대한 활용하자

밝힌 것이므로, 이용자들은 별도로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자유이용허락표시(CCL) 등 여타 오픈라이선스와 마찬가지로, 제시된 이용 조건은 준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용허락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에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용자는 즉시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sup>55)</sup>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23호)

유형 및 심벌마크	이용허락의 범위
<p>[제1유형: 출처 표시]</p>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다.</p>
<p>[제2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p>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p>
<p>[제3유형: 제1유형+변경금지]</p>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공공저작물의 내용을 변형 또는 변경할 수 없다.</p>
<p>[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p>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p>

55)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23호).



## 공공누리 이용 조건

### 1. 출처 표시 의무

- 가.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 기관명과 작성자(해당 저작물에 표기된 바에 따름), 공표된 연도(발행일 기준)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나.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다. 자료를 제공한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라. 자료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자료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기관명 ○○○’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 해당저작물은 ‘기관명 ○○○, 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 저작인격권의 존중

공공저작물을 변경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변경 이용의 예시>

- ①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창작된 저작물을 외설적 광고에 이용하여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② 연구보고서의 연구성과나 통계수치 등을 수정하여 제3자로 하여금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
- ③ 일부를 잘라 이용한 사진저작물이 원저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현저한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 등

### 3. 공공기관의 면책

- 가.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나.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 이용허락조건 위반의 효과

이용자는 공공누리의 이용허락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용자는 즉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국가의 공공저작물인 것이 분명한데, '공공누리(KOGL) 마크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는지?

**X** 공공누리 마크가 없어도,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국가·지자체의 공공저작물이라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허락 없이 이용해도 된다고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저작권법 제24조의2).

그런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공공누리 마크가 없다면, 공공저작물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때문에 국가·지자체도 공공누리 마크를 붙여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공공저작물에 해당하는 저작물을 알려주는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공공누리 누리집(<http://www.kogl.or.kr>) 참조).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 다) 저작권 포기/기증

저작권자는 아예 저작권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저작권 포기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저작권이 포기된 저작물을 찾아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저작권 포기과 유사한 제도로 '저작권 기증'이 있다. 기증된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관리하므로 이를 쉽게 확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기증저작물은 2005년 고(故) 안익태 선생의 유족들이 기증한 '애국가'이다. 이전에는 축구장이나 야구장에서 국민의례를 할 때에도 사용료를 지불하였으나, 기증 이후 국민 누구나 쉽게 애국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2018년 12월에는 세종문화회관 서울시합창단을 비롯해 서울시립교향악단, 박인영 작곡가, 이정훈 영상감독, 성윤용 교수 등이 참여해 만든 새로운 애국가 '음원의 권리가 기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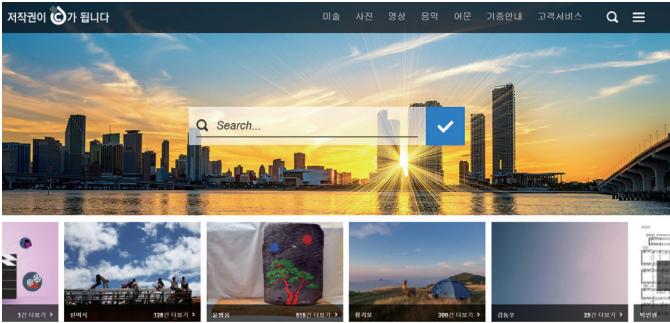
애국가 음원 등 기증식 2018. 12.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

**제135조(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기증된 저작물등의 권리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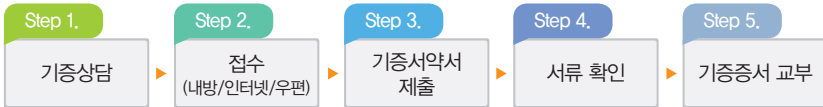
기증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마당에서 검색하고 직접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애국가 음원도 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기증전시관'

**도움말** 나눔의 실천, 저작권 기증에 동참해 보자

경제적 가치나 예술성과 관계없이 누구나 저작권을 기증할 수 있다. 작은 나눔의 실천, 저작권 기증으로 시작해 보자(저작권 기증 관련 문의: ☎ 055-792-0133).<sup>56)</sup>



저작권 기증 방법

라) 무료 저작물의 보고를 찾아서

(1) '무료' 저작물을 활용해보자

렛츠씨씨(Let's CC)에서는 플리커(flickr), 유튜브(youtube), 씨씨믹스터(ccMixer), 자멘도(jamendo) 등 자유이용허락표시(CCL)가 적용된 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다.<sup>57)</sup>

56) 저작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하면 기증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관리한다. 기증 후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변경되고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증 권리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57) 렛츠씨씨(Let's CC)는 글로벌 서비스의 API를 이용하여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진, 클립아트, 음악, 문서의 대표 서비스들을 모아 하나의 화면으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자유이용허락표시(CCL) 저작물 전문 검색 서비스로서 사단법인 코드(C.O.D.E)가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도 벤사운드(Bensound), 모션엘리먼트츠(Motion Elements) 등에서도 일정한 조건만 지키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들을 찾을 수 있다.



렛츠씨씨(Let's CC) 누리집

**Q** 소위 '잘방'에 일본 만화의 이미지를 사용했다가 저작권 문제가 되었다. '이미지를 무료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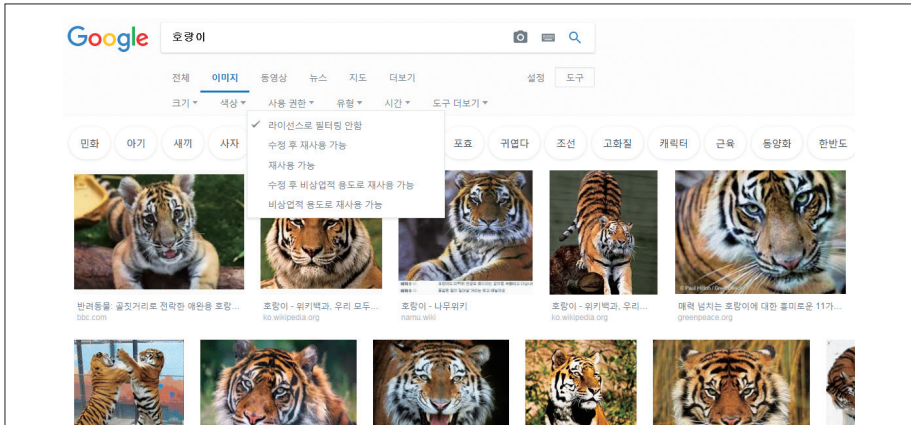
**O** 자유이용허락표시(CCL) 등을 표기하여 미리 허락해 놓은 이미지나 보호기간 만료 이미지, 기증저작물 등을 활용하면 된다. 예컨대 '모션엘리먼트츠(www.motionelements.com)'와 같이 유료 회원을 모집하면서, 일부는 무료로 지아이에프(GIF)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도 많다.

3 창작을 위해 '저작물'을 최대한 활용하자



모션엘리먼트츠(Motion Elements) 누리집

‘픽사베이(pixabay.com)’나 ‘TED(ted.com)’ 등에도 자유이용허락표시(CCL)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들이 많다. 구글이나 네이버 등 검색 사이트에서도 자유이용허락표시(CCL)가 적용된 저작물을 다수 찾아볼 수 있고, 특히 이미지 검색 결과에서는 라이선스별로 필터링이 가능하다. 예컨대 ‘수정 후 재사용 가능’을 선택하면, 영리적으로 수정하여 이용하는 것까지 가능한 이미지를 보여 준다.



구글 이미지 검색 화면. 라이선스별로 필터링이 가능하다.

**도움말** 주의사항

‘무료’ 저작물이라고 안내되어 있어도 저작권자가 제시한 조건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만 자유 이용이 가능하다.

**Q** 인터넷에서 무료 음원 사이트를 찾았다. ‘편곡 등 변형’해서 ‘영리적’으로 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X** ‘무료 음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어도, 관리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하세요’와 같이 조건을 붙여 놓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무료 음원의 경우에도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

자유이용허락표시(CCL)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을 불허하는 경우가 많다.

(2) 공유마당·공공누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저작물'의 보고(寶庫)도 존재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과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공공누리(<http://www.kogl.or.kr>)에서 창작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사진, 그림, 음악, 글자체 파일 등을 내려받을 수 있다. 공유마당과 공공누리에서 제공하는 공유·기증·공공저작물 등은 일정한 이용 조건(출처 표시 등)만 준수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사이트를 찾고 있는데, 국가·공공기관에서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무료 저작물을 모아 놓은 사이트'도 있는지?**

**O**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과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공공누리**(<http://www.kogl.or.kr>)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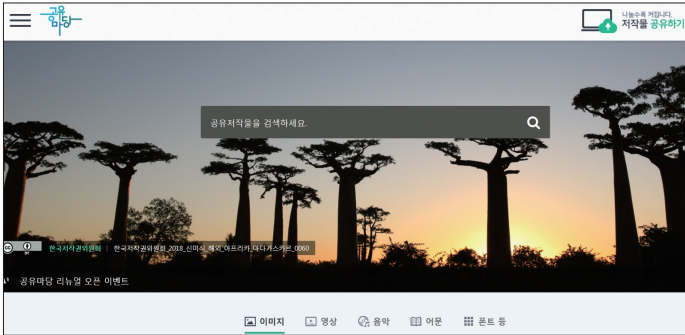
저작권법에서는 공공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4조의2). 하지만 일반 국민이 공공저작물인지 아닌지 자체를 알기가 어렵다. 이에 공공저작물에 해당하는 저작물에는 '공공누리(KOGL)' 표시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이 중에서 활용성이 높은 저작물은 공유마당, 공공누리 누리집에서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이미지나 음원, 어문저작물뿐만 아니라 무료 글자체 파일도 정리되어 있다.

**저작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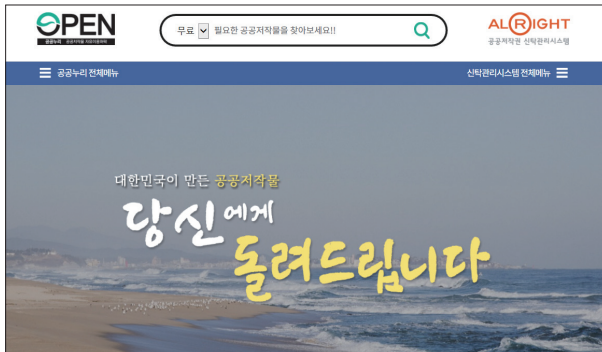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3 창작을 위해 '저작물'에 최대한 활용하자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누리집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 누리집

### 3) 저작권 문제를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들

아프리카TV나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창작자를 도우려고 저작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들이 저작권 허락을 받아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 부담을 덜어 더 좋은 창작물이 만들어지면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다. 또한 일부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의 경우 소속 창작자를 위해 글자체 파일이나 이미지, 음악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아오기도 한다.

다만 저작권 이용허락의 책임은 1차적으로 '창작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광고 수익의 일부를 유튜브가 가져가고 있는데,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대가로 받아 가는 것인지?

**X**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플랫폼 사용 비용을 가져가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저작권료와는 관계가 없다**. 다만 유튜브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 선택 옵션 중 관리자에게 광고 수익을 전달하는 경우는 있다. [심화학습 : 유튜브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 선택 옵션 참조]

가) 스포츠 중계방송 등 방송 프로그램

방송 중계 영상은 엄연히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영상저작물'이다. 따라서 이를 무단 전송 시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스포츠의 중계권은 매우 높은 가격에 판매되며 실무상 개인이 스포츠 중계권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1인 창작자들이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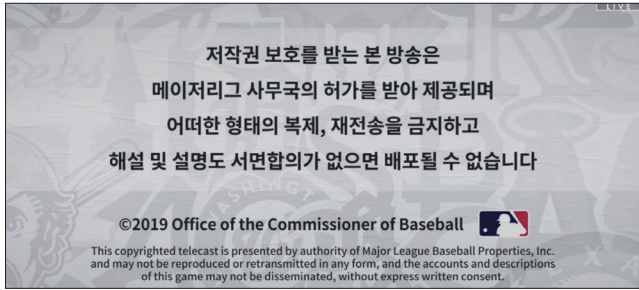
그런데 방송사가 송출하는 축구나 야구 등 스포츠 중계를 실시간으로 방송하면서, 창작자들이 해설하는 채널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예컨대 아프리카TV 등에서 1인 창작자의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중계가 가능한 것은, 아프리카TV가 중계권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개인 채널에서 '편파 중계방송'을 하고 싶다. 지상파 방송의 야구 중계 영상을 수신하여 내 목소리를 더빙한 뒤 중계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O** 야구 중계영상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영상이다. 다수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이를 편집하여 방송한다. 슬로우 모션이나 3D캠과 같이 가공된 영상도 첨부된다. 지상파 방송에서 중계하여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인터넷에서 재송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류현진 선수 경기를 보면, 아래와 같이 '어떠한 형태의 복제, 재전송도 금한다'라는 저작권 경고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개인 채널에서 중계하고 싶다면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 창작자가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3 창작을 위해 '저작물'에 최대한 활용하자



중계방송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 받는다. [MBC 스포츠 방송화면(2019. 8. 17.)]

Q

‘문화방송(MBC)에서 방송하고 있는 음악 프로그램’을 해외에서도 볼 수 있도록 아프리카TV로 재송신하였다.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O 지상파에서 방송되고 있다고 하여, 저작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문화방송에서 방송되는 영상물은 영화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Q

‘아프리카TV에서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중계’를 하고 있는 비제이(BJ)이다. 축구 중계영상의 저작권 문제를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지금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

X 위법이 아니다. 아프리카TV 플랫폼에서 저작권 문제를 처리해 주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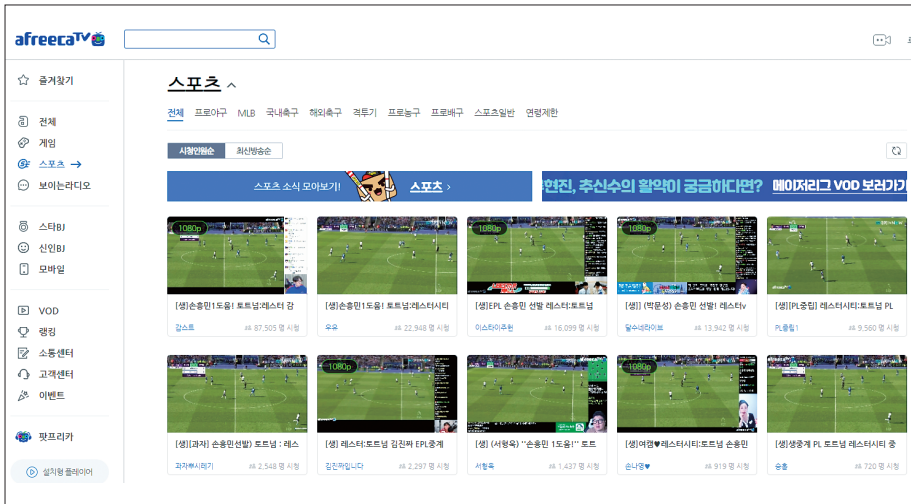
영국 프리미어리그(EPL)의 중계권을 개인이 협상하여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아프리카TV 등 플랫폼 사업자가 거액을 지불하고 중계권을 구입하여, 비제이(BJ) 중계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 플랫폼의 차별화, 경쟁력 강화 방법으로 다른 플랫폼에서는 방송할 수 없는 중계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결과이다. 예컨대 아프리카TV는 2018년 이후, 2019년에도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중계권을 확보하였다.<sup>58)</sup>

58) [http://afwbbs1.afreecatv.com/app/index.php?board=notice&b\\_no=6407&control=view](http://afwbbs1.afreecatv.com/app/index.php?board=notice&b_no=6407&control=view)

프리메라리가(라리가)도 중계권을 확보한 바 있다. 야구, 축구, 배구, 농구뿐만 아니라 격투기 로드 에프시(ROAD FC) / 로드 에프시 영 건즈(ROAD FC YOUNG GUNS) 등도 중계권을 확보하여, 비제이(BJ)의 '편파 방송'이 가능했다. 따라서 아프리카TV에서 중계한 영상을 다른 플랫폼에서 브이오디(VOD)로 올리는 것은 심각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해당 플랫폼이 중계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기를 중계할 수는 없다. 예컨대 아프리카TV의 경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분데스리가, 포칼컵' 등은 방송할 수 없다고 공지하였다. 2018 러시아 월드컵도 최종 예선 경기는 방송할 수 없었다.<sup>59)</sup>

주의할 점은 이는 플랫폼의 '계약' 때문인 것이므로, 항상 공지 사항을 잘 확인하고 제시된 조건을 준수하면서 이용해야 한다. 예컨대 엠스플로그가 붙은 영상만 가능하다거나 방송 화면을 캡 화면으로 가리면 안 된다는 등 공지 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아프리카TV 손흥민 경기 중계(2019. 9. 21.)

59) 아프리카TV 공지사항 "[안내] 스포츠 방송 가능 저작권 안내(6월 12일 업데이트)", <[http://afwbbs1.afreecatv.com:8081/app/index.php?board=notice&b\\_no=5637&control=view](http://afwbbs1.afreecatv.com:8081/app/index.php?board=notice&b_no=5637&control=view)>

창작을 위해 '저작물'을 최대한 활용하자

**[안내] 8월 5주차 지상파/케이블 방송 송출 불가 프로그램**

[TV CHOSUN] 만화프로그램 | 2019-08-26 07:00:00 ~ 2019-08-26 07:30:00 (이하 생략)

[MBN] MBN 스페셜 다크 | 2019-08-27 01:40:00 ~ 2019-08-27 02:40:00 (이하 생략)

[EBS] EDIF 걸작선 | 2019-08-31 01:05:00 ~ 2019-08-31 05:00:00 (이하 생략)

- JTBC의 경우 뉴스룸, 정치부 회의, 뉴스ON, 아침& 外 모든 프로그램 송출 불가 합니다.
- KBMTV는 별도 송출 제한이 없습니다.
- 지상파/케이블 방송 송출은 본 공지 내 송출 불가 프로그램만 송출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프리카TV에서 이용 가능한 방송 프로그램 안내

afreecaTV

2019-2020시즌

해외축구  
중계권 서비스 안내

Premier League  
프리미어리그

UEFA CHAMPIONS LEAGUE  
챔피언스리그

중계 화면 훼손은 No!

사용 불가: 방송화면을 가리는 웹 화면

사용 가능: 방송화면을 가리지 않는 웹 화면

- 중계 화면 훼손(캠 화면 혹은 배너 이미지 등으로 중계 화면 일부를 가리는 행위)이 불가능합니다.

기타

- 방송 송출 및 중계 방송시 카테고리리는 반드시 '해외축구'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 중계 방송 녹화 및 송출은 불가능합니다.
-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다시보기&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은 비저작권에 해당합니다. (송출 불가)

아프리카TV, 2019-2020 해외축구 신규 중계권 안내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

## 나) 게임 영상, 게임 방송

게임 영상이나 게임 대회 방송 등도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 간혹 게임 홍보에 도움이 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창작자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물론 현실에서는 홍보 효과 등으로 저작권자가 묵인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홍보비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지만, 허락 없는 이용은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허락을 받고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게임 회사 등 저작권자가 미리 허락의 의사를 밝혀 놓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 경우에도 플랫폼 사업자가 저작권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아프리카TV는 2019 오버워치 리그, 리그오브레전드(LOL)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 등과 계약을 하여 이를 비제이(BJ) 누구나 방송 송출이 가능하도록 저작권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이처럼 플랫폼 사업자마다 계약 내용이 다르며, 그나마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용이 불가능하니, 공지 사항 등 허용되는 범위와 조건을 잘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 [안내]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안내 (7월 1일 업데이트)

2019년 e스포츠 방송이 가능한 콘텐츠 저작권 안내드립니다.  
해당 콘텐츠들은 아프리카TV BJ 누구나 방송 송출 및 재송출이 가능합니다.

- 2019 리프트 라이벌즈
- LoL 챌린저스 코리아 서머
- ASL 시즌8
- Liiv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톤 리그 : 리바이벌 시즌2
- 2019 GSL 시즌3
- 2019 오버워치 리그
- LoL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
- e스포츠매거진 GG

아프리카TV에서 중계 가능한 게임(e-스포츠) 경기 안내



게임 방송을 하고 있는데, '게임 홍보에도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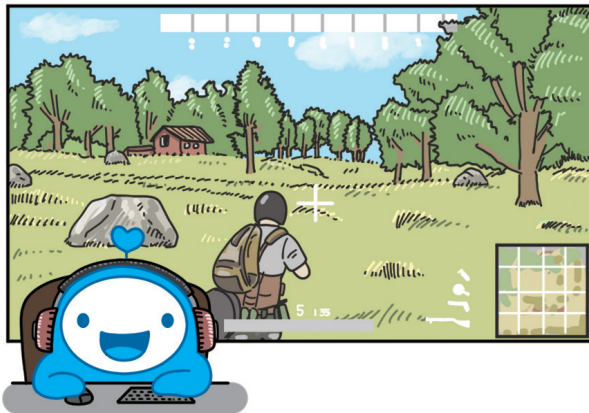
**X** 저작권자인 게임 회사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게임 플레이 장면을 방송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다만 게임 방송은 게임사 입장에서도 굳이 막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미리 몇 가지 조건하에 이용해도 좋다는 허락의 의사 표시를

해두기도 한다. 예컨대 게임 ‘어쌔신 크리드(Assassin's Creed)’와 ‘파크라이(Far Cry)’ 시리즈로 유명한 유비소프트의 경우에는 누리집에 몇 가지 조건을 내세우며 유튜브에 게임 영상을 올려도 된다고 공지하였다.



### 유비소프트의 유튜브 유사 서비스 관련 정책





영화 리뷰 채널을 운영하면서 최신 개봉작을 소개하고, 스틸컷 이미지를 활용하여 재미있게 편집하여 영화사의 '수익 창출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

**Q**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라디오에서 신곡을 소개하는 것도 홍보 효과가 크지만, 방송사들은 저작권료를 내고 있다.

### 다) 음악저작물의 이용

1인 창작 영상물 중에는 '음악'을 이용한 저작물이 매우 많다. 하지만 음악저작물은 이용허락을 받기가 매우 까다롭다. 글이나 이미지 등과 비교하여, 허락받아야 하는 권리자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최신 유행하는 케이팝(K-Pop) 음원을 영상에 활용하려면 작곡·작사·편곡 등에 대한 저작권자 외에도 가수와 연주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서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장 나. 2\) 저작인접권자에게 허락받기 참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나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신탁관리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개인 창작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제3장 라. 1\) 나\) 권리자를 찾아라 : 권리자 탐색 방법 참조\]](#) 대다수 창작자들은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에 플랫폼에서 음악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창작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 예컨대 유튜브에서는 ①저작권 정보 제공, ②무료 음원 소개, ③음원 교체 툴 제공 등 저작권의 문제없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① 저작권 정보 제공

곡마다 저작권 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시아(Sia)의 상들리에(Chandelier)의 경우, 리메이크는 물론 원음 그대로 재생하는 것을 모두 허용하고 있고 광고 표시도 가능하다. 이 정보를 신뢰할 수 있다면,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반면 머룬파이브(Maroon 5)의 슈거(Sugar)는 유튜브에서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지 않는 한 이용할 수 없는 음원이라는 의미이다.

Chandelier Sia	HandClap Fitz and The Tantrums	Sugar Maroon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노래를 사용하는 경우 재생 전 세계에서 재생 가능 광고 광고가 표시될 수 있음</li> <li>리메이크 곡을 연주할 경우 재생 전 세계에서 재생 가능 광고 광고가 표시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노래를 사용하는 경우 재생 249개 국가에서 차단됨 광고 광고가 표시될 수 있음</li> <li>리메이크 곡을 연주할 경우 재생 2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재생 가능 광고 광고가 표시될 수 있음</li> </ul>	<p>YouTube 동영상에서 사용할 수 없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사용할 경우 동영상이 차단되거나 음소거 될 수 있습니다.</p>
<p>광고 수익을 저작권자에게 주는 대신 음원 이용이 가능한 경우</p>	<p>광고 수익을 저작권자에게 주더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음원 이용이 불가한 경우</p>	<p>저작권자에게 별도로 이용허락을 받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경우</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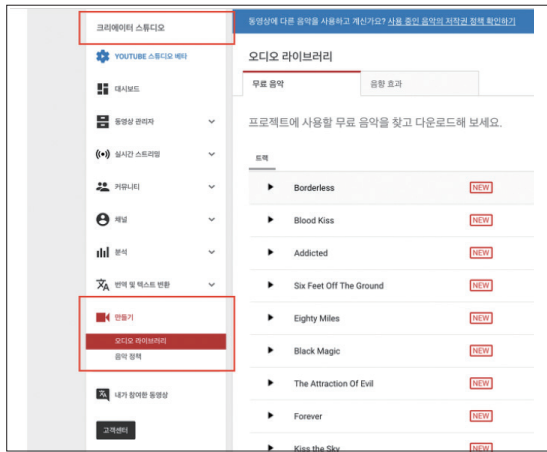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 [만들기] - [음악 정책]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트와이스의 '치어업(Cheer up)'은 247개 국가에서 재생이 차단되지만, 리메이크는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다.

## ② 무료 음원 소개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의 '오디오 라이브러리'는 무료 음악과 음향 효과를 소개하고 나아가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다. 다만 유튜브가 아닌 다른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음원에 따라 '저작자 표시' 등 요구하는 조건을 잘 보고 지켜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의 오디오 라이브러리 메뉴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있는 오디오 라이브러리 음원을 이용하여 만든 영상을 '페이스북'에도 올리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O**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오디오 라이브러리에 있는 음원들은 유튜브가 '유튜브에서 사용해도 되는' 음원들을 모아 준 것이다. 이 중에는 다른 곳에서 사용해도 되는 공유저작물(Copyright Free)도 있겠지만, 일부는 유튜브가 계약에 의해 허락을 받아온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자유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어도 다른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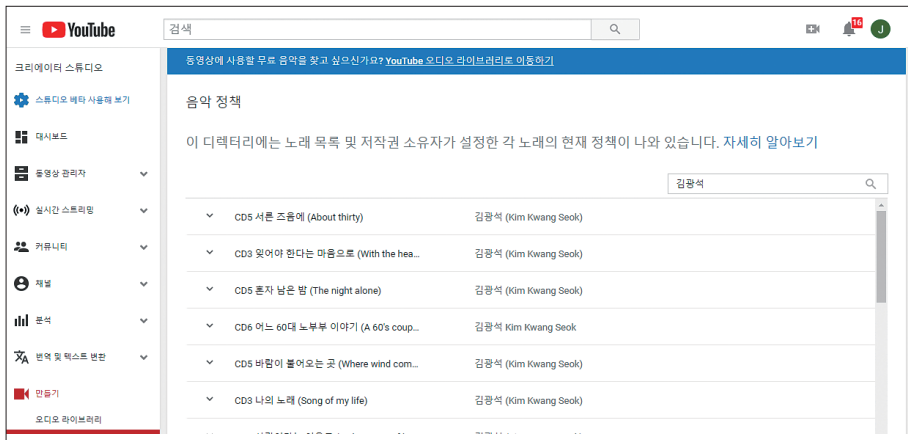
# Q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 없는 음원을 허락 없이 이용하면 모두 차단되는지?**

**X** 오디오 라이브러리에 없는 음원 중에도 저작권자가 사전에 이용을 허락한 경우가 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음악 정책'에서 저작권자가 미리 설정한 저작권 정책을 검색할 수 있다. 예컨대 김광석이 부른 '서른 즈음에'를 이용하고 싶다면, 이를 검색창에 입력하여 저작권 정책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유튜브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를 활용하여 수익 공유를 조건으로 차단하지 않는 권리자들도 많다. 케이팝(K-Pop)뿐만 아니라 해외 곡도 다수 검색되나, 모든 곡의 저작권 정책이 게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검색이 되지 않는 음원은 별도의 이용 방안을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음악 정책 검색 화면

### ③ 음원 교체 툴 제공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음원이 포함된 경우, 유튜브에서는 문제가 되는 구간의 오디오 트랙을 찾아 쉽게 바꿀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가 되었던 오디오 트랙이 교체되면 제기되었던 저작권 주장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동영상의 시청 또는 수익 창출 제한 역시 해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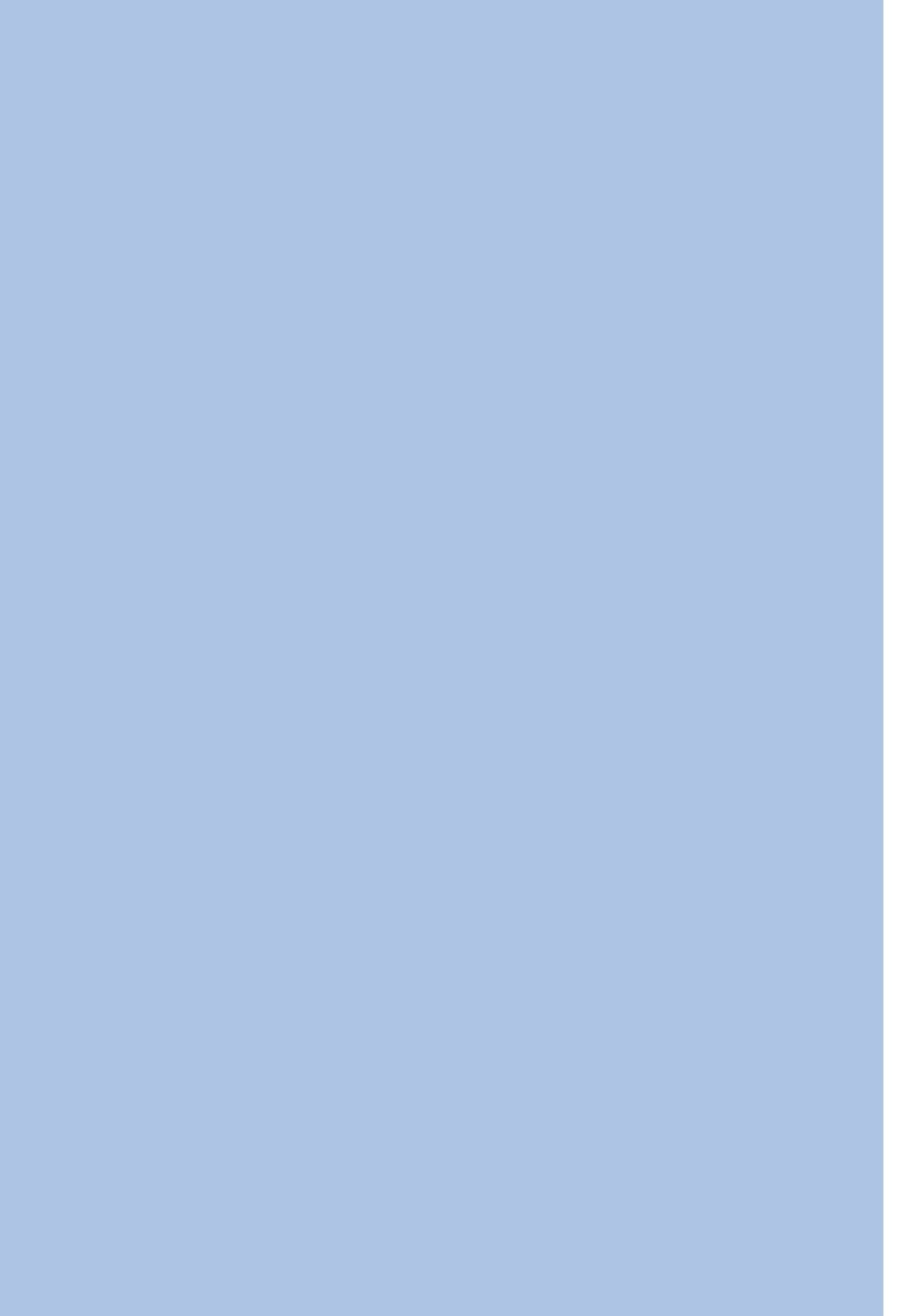
**도움말** 영상에 저작권 문제가 있는 음원이 포함된 경우, 유튜브의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 [동영상 관리자] - [동영상] 메뉴([https://www.youtube.com/my\\_videos](https://www.youtube.com/my_videos))로 접속하면 문제가 되는 음원을 손쉽게 교체할 수 있다.

### 라)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의 글자체 파일, 이미지 등 저작권 지원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회사들은 소속 창작자들에게 세무 관계를 비롯한 법률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중 일부는 글자체 파일이나 이미지, 음악 등에 대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내거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창작을 지원하기도 한다.

예컨대 국내 대기업 계열의 ○○ 다중 채널 네트워크는 같은 계열사가 유통하는 음원이나 방송물에 이용허락을 대신 받아다준 사례가 있다고 한다. 외국계 ○○ 다중 채널 네트워크는 특정 회사의 음원들의 이용 권한을 받아 소속 창작자들에게 주기도 했다.

아직 다중 채널 네트워크에서 적극적으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례는 많지 않아 보인다. 상세한 사항은 각 다중 채널 네트워크 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 제4장

# 내 창작물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쓰네요

### 가. 내 저작권이 침해되었어요

- 1) 나도 권리자
- 2) 침해당한 게 맞나: 의거 + 실질적 유사성
- 3) 침해 여부를 유튜브가 판단해 주나요

### 나. 이렇게 대응하세요

-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게시 중단 요청
- 2) 민사: 침해정지(예방), 손해배상청구
- 3) 형사 고소
- 4) 소송까진 부담스러운데: 조정

### 다. 분쟁의 예방 - 교육, 저작권상담센터



## 제4장

# 내 창작물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쓰네요

### 가. 내 저작권이 침해되었어요

#### 1) 나도 권리자

창작자들은 모두 저작자이다.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가지게 된다.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으며, 콘텐츠의 예술성이나 경제적 가치와도 관계없다.



'4살인 딸이 그린 그림을' 게시하였는데, 그 그림을 허락도 없이 캡처해서 사용하는 게시물을 발견했다. 잘 그린 그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양해도 구하지 않고 가져다 쓰는 사람에게 화가 나는데,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O** 저작물성 판단을 할 때 저작자의 나이는 상관이 없다.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잘 그렸는지에 대한 평가와도 무관하다. [제2장 가. 1) 저작물의 개념 참조]

4살 아이가 그린 그림을 무단 이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는 물론,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침해도 될 수 있다. [제2장 가. 3) 나) 저작자의 권리 참조]



'내 동영상의 일부'를 잘라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서 게시하고 있다. 이 사람들에게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할 수 있는지?

**O** 인용 등 공정이용의 요건을 충족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가 맞다(저작권재산권). 뿐만 아니라 일부를 잘라 사용하는 과정에서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저작권인격권).



영화 하이라이트를 편집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영화사로부터 저작권 경고를 받아 영상을 내린 상태이다. 그런데 '내가 편집하여 올렸던 하이라이트 영상'을 무단 게시한 사람을 발견했다. 나도 내가 편집한 영상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O** 편집을 하면서 사상 감정이 표현되었다면, 편집을 한 사람 역시 저작권이 있다. 설령 영화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편집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이더라도, 선택과 배열 등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며 내가 추가한 창작성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2) 침해당한 게 맞나: 의거 + 실질적 유사성

내 창작물을 무단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형사 고소를 비롯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파장이 적지 않으므로, 구제 절차를 밟기에 앞서서, '정말 내가 저작권 침해당한 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① 의거와 ② 실질적 유사성, 두 가지를 모두 입증할 수 있어야 저작권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다.

가) 의거: 내 것을 '보고' 베꼈어요

내 것을 '보고 베낀'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가 된다. 이를 **의거**라고 한다.

즉 독자적으로 창작한 경우라면, 우연히 비슷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독자적 창작의 항변).<sup>60)</sup> 실무에서는 '의거'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법원은 의거관계는 이를 입증할 직접증거로 인정될 수도 있고, 직접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라도 A 저작자가 B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기회, 즉 이를 보거나 접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었음이 인정되면 추인될 수 있다고 하여 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6나16757 판결).



**내가 그린 그림과 비슷한 그림을 누군가가 먼저 그렸다면, 나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인지?**

**X**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의지, 즉 '의거'한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 내가 그린 그림과 비슷한 것을 누가 먼저 그렸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인터넷을 보면 수많은 저작권 침해 의심 사례가 이야기되고 있다. 두 개를 비교해 놓은 것을 보면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거의 동일한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 도움말

**창작할 때, 아이디어나 콘셉트 등은 참고해도 괜찮다.**

창작자들은 기존에 있던 저작물과 조금도 비슷한 부분이 없어야만 한다는 강박 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

60) 특허권의 경우에는 설령 독자적으로 발명을 실시한 경우에도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특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따라서 특허는 어떤 권리가 등록되어 있는지 검색하고 주의해야 하는 반면, 저작권은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라면 예전에 어떤 비슷한 저작물이 존재했는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 나) 실질적 유사성

비슷하다고 모두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반대로 조금 다르다고 하여 모두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도 아니다. 즉 저작권법의 시각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한다.

### (1) 비슷하다고 모두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더라도,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는 아이디어나 콘셉트 등이 유사해서 그런 것이라면, 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만을 비교한다. [제2장 가. 1) 저작물의 개념 참조] 따라서 같은 소재로 창작하거나 아이디어가 동일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이러한 것 때문에 결과물이 상당히 유사해 보이더라도,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같은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역사 소설을 쓰거나 동일한 인물을 다루는 영화를 만들면, 많은 부분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를 저작권 침해라고 해서 안 된다. 드라마 '태왕사신기' 사건에서 법원은 만화 '바람의 나라'와 드라마 '태왕사신기'가 고구려라는 역사적 배경, 사신, 부도, 신시라는 신화적 소재, 영토 확장이나 국가적 이상의 추구라는 주제 등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요소를 공통으로 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로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만화 '바람의 나라'와 드라마 '태왕사신기'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6나16757 판결>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즉 저작권법은 사람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즉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범위만 보호한다.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이들을 비교하여야 한다. 유사성을 비교할 때 창작성이 없거나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는 것들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우리 댄스 팀은 항상 노란색 정장과 빨간색 모자를 쓰고 댄스 공연을 하고 있어서 일종의 상징이 되었다. 그런데 같은 색의 옷과 모자를 쓰고 춤을 추는 영상이 올라왔다. 우리의 '독특한 콘셉트'를 보고 베낀 것인데,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는지?

**X** 콘셉트는 아이디어 영역이기 때문에 설령 베낀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제3자가 아이디어를 차용한 경우, 기분은 안 좋겠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법원도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때 배제하고 비교할 것을 판시하고 있다.

소설 '텐산산맥'과 드라마 '까레이스키' 사건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을 가지고 대비해야 할 것……



'해피 잉글리시(Happy English)'라는 영어 교육 관련 콘텐츠를 창작하고 있다. 나름 인지도를 쌓아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이름으로 블로그'를 만들었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는지? 혹시 저작권 등록을 한다면 유리한지?

**X** '해피 잉글리시(Happy English)'라는 단어만으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창작성이 없기 때문이다. [제2장 가. 1) 저작물의 개념 참조]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면, 저작물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 [제2장 가. 3) 참조]

## (2) 조금 달라도 침해가 될 수 있다.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규범적인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유튜브에는 영화나 드라마, 책 등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채널들이 있는데, 원작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가 될 소지가 높은 경우가 많다. 법원은 책을 요약하여 제공한 '더 파워 오브 위(THE POWER OF WE)' 사건에서 원작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THE POWER OF WE’ 사건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는,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기본으로 되는 개요, 구조, 주된 구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요약물이 원저작물을 이루는 문장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발췌한 것이거나 발췌한 문장들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 원저작물과 비교한 요약물의 상대적인 분량, 요약물의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영문(英文)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한 영문 요약물을 丙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아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피고인 甲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



책이나 영화를 소개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책과 영화를 구입하여 본 뒤, 이를 '요약'하여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한다. 원작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가급적 본래의 내용 그대로 전달하고자 노력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O** 공정이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도서를 요약하여 인터넷을 통해 요약본을 제공한 '더 파워 오브 위(THE POWER OF WE)' 사건에서 법원은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 3) 침해 여부를 유튜브가 판단해 주나요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으로 '유튜브에서 필터링 되지 않는 음악 이용 시간은 몇 초인지?' 또는 '얼마나 이용해도 유튜브에서 걸리지 않는지?'와 같은 것들이 있다. 인터넷에는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 '몇 초까지는 안 걸리더라'와 같은 내용의 조언을 '저작권 도움말(TIP)'이라고 공유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의 내부 정책일 뿐, 법적인 책임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35조의3 공정이용 해당 여부도 최종적인 판단 주체는 법원이자 유튜브가 아니다.



**유튜브나 아프리카TV의 저작권 '필터링에 걸리지 않았으면', 저작권 걱정은 안 해도 되는지?**

**X**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저작권 보호 정책은, 저작권법에 따른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므로 창작자의 법적 책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필터링이 되지 않았다고 모두 합법적인 저작물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필터링이 되었다고 하여 불법 콘텐츠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인터넷에 보면 몇 초 이내는 유튜브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정보가 넘쳐나는데, 유튜브 필터링 기준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따른다.

## 나. 이렇게 대응하세요

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될 때에는 먼저 화면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면서 삭제나 저작권료 지급 등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무에서는 내용 증명으로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도 많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기 어렵거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구글이나 아프리카TV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서 중단을 요청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인터넷에서의 확산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법적인 조치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는 사용금지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된다. 정당한 권리 행사의 방법이라는 하나, 무리한 소송은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므로, 소송 이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 참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안 – 증거 확보 및 당사자 간 협의 우선

- ① 구글, 아프리카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게시 중단 요청
- ② 민사 소송 제기(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제도 검토)
- ③ 형사 고소 : 고소장 접수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로 이유로 유튜브에 신고하여 내 영상은 차단되었다. 유튜브로부터 경고도 받았는데, '저작권자가 추가적으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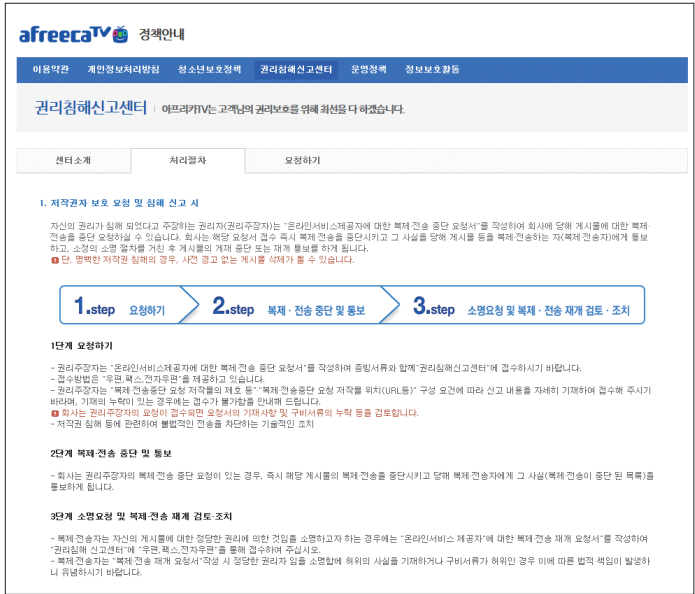
**O** 현재 저작권자가 취한 조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게시 중단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며, 유튜브의 경고나 계정 정지 등의 조치는 내부 규정에 의한 것으로 법적인 조치는 아니다.

법적인 구제조치로는 민사(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형사벌 등이 가능하다. 즉 권리자는 앞으로 민사소송,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권리자들이 저작권 침해를 당하면 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게시 중단을 요구하여 영상 차단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경제적 가치가 높아질수록 소송과 경고장 발송·합의금 요구 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게시 중단 요청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음을 신고하면 구글이나 아프리카TV,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해당 영상을 차단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권리자가 침해 사실을 밝히면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예컨대 아프리카TV의 경우 권리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차단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 준다([http://res.afreecatv.com/policy/policy4\\_1.html](http://res.afreecatv.com/policy/policy4_1.html)). 유튜브 역시 저작권 침해 신고([https://www.youtube.com/copyright\\_complaint\\_form](https://www.youtube.com/copyright_complaint_form))를 하면 차단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 준다.



아프리카TV의 권리침해신고센터

또한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계정은 이를 해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02조, 제103조 참고). 예컨대 2019년 현재 유튜브의 경우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으면, 수익 창출 자격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저작권 위반 경고를 3번 받으면 ① 계정 및 계정과 연결된 모든 채널의 해지 ② 계정에 올려진 모든 동영상의 삭제 ③ 새로운 채널 생성 불가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애써 키워 온 채널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으므로, 저작권 경고는 법적 책임만큼이나 상당한 위하력<sup>61)</sup>이 있다.

61) 범죄에 대한 형벌의 무서움을 보여줌으로써 잠재적인 범죄자인 일반인이 위협을 느껴 범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힘을 의미한다.



네이버 저작권보호센터



수없이 많은 영상물이 인터넷에 올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단 사용한 사례를 찾아내고 또 일일이 신고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사전에 '플랫폼 사업자에게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Q** 대부분의 플랫폼 사업자들은 사전에 저작물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두고 있다. 예컨대 네이버 저작권보호센터에 저작물 사전 보호 요청을 신청하면 음원, 동영상, 글자체 파일 등의 불법 유통을 차단해 준다. 실무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차단'은 권리자의 개별 신고보다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

다만 등록의 절차나 어떤 기술을 적용하는지 등은 플랫폼마다 다르다. 예컨대 유튜브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의 경우,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제출하면 이후 올라오는 동영상은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자동으로 검사된다. 그리고 차단 또는 수익 공유 등 미리 설정해 놓은 옵션에 따라 처리된다.<sup>62)</sup>

62) 아무나 여기에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유튜브가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만이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YouTube는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저작권 소유자에게만 Content ID를 부여합니다. Content ID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YouTube 창작자 커뮤니티에서 자주 업로드되는 원본 자료의 상당 부분에 대해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튜브 고객센터,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797370>



**심화학습**

**유튜브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 선택 옵션**

- 문제의 동영상 전체를 시청할 수 없도록 차단
- 동영상에 광고를 게재해 수익 창출(경우에 따라 업로더와 수익 공유)
- 문제의 동영상 시청률 통계를 추적

**도움말**

**[이용자의 시각] 권리자의 게시 중단 요청으로, 내 영상이 차단되었을 때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데도 권리자의 게시 중단 요청으로, 내 영상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밝힐 수 있다. 이는 법률로 보장되는 절차이다. 만약 침해를 한 것이 맞다면, 이제라도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고 차단을 푸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다. 권리자는 게시물 차단과는 별도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공정이용에 해당하는데 저작권 침해라고 내 영상물이 '잘못 차단'되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이의 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침해를 하지 않았는데 차단되었다면,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공정이용에 해당하는데도 잘못 차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제3장 다. 1\) 인용, 공정이용 침해\]](#)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게시물이 차단되었을 때, 플랫폼 사업자는 이의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의 신청 서식·절차는 플랫폼마다 다른데, 유튜브의 경우 'YouTube 스튜디오'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 심화학습

#### 유튜브의 이의 제기 방법(유튜브 고객센터)

1. Youtube 스튜디오에 로그인합니다.
2. 왼쪽 메뉴에서 동영상을 선택합니다.
3. '저작권 침해 신고' 위에 있는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수익 창출 열의 각 동영상 옆에 저작권 신고가 표시됩니다. 없으면 공개 상태 열에서 이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저작권 침해 신고 세부정보 보기를 클릭합니다.
5. 그러면 동영상의 어떤 항목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주장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저작권 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6. 작업 선택에서 이의 제기를 클릭합니다.



2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게시했는데 그 중 10여초 정도 침해 저작물이 사용되었다고 '영상 전체가 차단'되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O** 침해된 부분을 삭제하여 더 이상 저작권 문제가 없는 영상이라면, 재게시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문제된 부분을 잘라서 편집해주거나 해당 음원의 오디오 음소거 등을 도와주는 툴들도 나와 있으므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예컨대 유튜브에서는 'YouTube 스튜디오'에서 모든 오디오 음소거, 노래만 음소거 등의 편집 옵션을 제공한다.

## 2) 민사: 침해정지(예방), 손해배상청구

민사적 구제 제도는 크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있다.<sup>63)</sup>

먼저 침해금지는 권리자가 침해자에게 행위의 정지를 청구하는 것으로, 일단 더 이상의 침해를 막으려는 것이다. 현재 '침해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침해의 우려가 있는

63) 저작권법상의 제도는 아니지만,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하다(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상세한 설명은 송영식·이상정(2017), 저작권법강의, 세창, 283면 이하.

자에게도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자는 침해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손해액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제31조·제75조·제76조·제76조의2·제82조·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권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당마다 1천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사소송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할 수 있는지?

**Q** 저작권자는 스스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O** 법률 지식이 충분치 않은 사람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하지만 소장을 작성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생각처럼 어려운 일은 아니다. 소장의 서식은 법원 민원실에 비치해 두고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소장 작성 안내 [법원 전자민원센터 : <https://help.scourt.go.kr>]). 더구나 소액사건인 경우 법원에 가서 구두(口頭)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소장 예시 - 출처 : 법원 전자민원센터<sup>64)</sup>

접 수 인

## 소 장

사 건 번 호	
배 당 순 위 번 호	
담 당	제 단 독

### 사 건 명

- 원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1. 피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2. 피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소송목적의 값	원	인지	원
(인지접부란)			

### 청 구 취 지

- (예시)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함.

64)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에 접속하면 첫 화면의 '양식 찾기' 메뉴에서 소장, 소송구조신청서 등 다양한 서식을 내려 받을 수 있다.

### 청 구 원 인

- 1.
- 2.
- 3.

### 입 증 방 법

1. 계약서
- 2.

###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소장부분 1부
1. 송달료납부서 1부

20 . . . .

위 원고 ○ ○ ○ (서명 또는 날인)

####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

20 . . . .

신청인 원고 (서명 또는 날인)

- ※ 종이기록사건에서 위에서 신청한 정보가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전자기록사건은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 동의 후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메시지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그 밖에 팩스번호·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의 연락처는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기재하면 됩니다.
2. 첨부할 인지가 많은 경우에는 뒷면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구조신청서 예시 - 출처 : 법원 전자민원센터

## 소송구조신청서

수입인지 1,000원  
송달료 2회분

구조대상사건 : 20○○가합○○○ 손해배상(자)

신청인(원고, 피고) ○○○

주소 :

전화, 휴대폰, 팩스번호 :

상대방(원고, 피고) ○○○

주소 :

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 1.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인지대 [ 소장  상소장  기타( )]

변호사비용

기타 ( )

위 각 사항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부

### 2. 구조가 필요한 사유

가. 사건 내용 : 별첨 기재와 같다(소장 사본의 첨부로 같음 가능).

나. 신청인의 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증명서)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또는 기초연금 지급내역이 나오는 거래은행통장 사본)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연금 지급내역이 나오는 거래은행통장 사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위 대상자 외의 자 : 재산관계진술서 및 그 밖의 소명자료 첨부

신청인은 소송진행 중이나 완결 후에 신청인의 직업이나 재산에 중대한 변동이 생긴 때, 소송의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을 받게 된 때에는 법원에 즉시 그 내용을 신고하겠습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부(단독) 귀중

### 3) 형사 고소

저작권을 침해하면, 형사벌의 대상이 된다. 저작권을 잘 알지 못하면, 1인 미디어 창작자들도 자칫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14세가 넘으면 형사성년자가 되어, 청소년 역시 성인과 동일하게 형벌을 받을 수 있다.

- 저작재산권 침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저작인격권 등 인격적 권리 침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출처 명시를 하지 않은 자 -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도

다만 실무상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저작권 침해 고소 각하' 등의 제도로, 실형을 선고 받는 사례는 흔치 않다.



#### 내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가 어렵지는 않다. 아래와 같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고소 사건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원칙적으로 고소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저작권 침해 문제로 고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면 6개월의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고소장 예시 - 출처 : 검찰청<sup>65)</sup>

## 고 소 장

(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1. 고소인\*

성 명 (상호·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소사무소 소재지)	(현 거주지)		
직 업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 메 일			
대리인에 의한 고소	<input type="checkbox"/> 법정대리인 (성명 : _____, 연락처 _____ ) <input type="checkbox"/>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_____, 연락처 _____ )		

-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2. 피고소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현 거주지)		
직 업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 메 일			
기타사항			

- ※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5) 검찰청(<http://www.spo.go.kr>)에 접속하면 첫 화면의 '민원 서식' 메뉴에서 고소장, 합의서, 고소취하장 등 다양한 서식을 내려 받을 수 있다.

### 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범죄사실\*

※ 범죄사실은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5. 고소이유\*

※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6. 증거자료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 없습니다 <input type="checkbox"/>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input type="checkbox"/>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내 저작물이 유튜브에서 무단 공유되고 있는데, 게시자를 찾아서 고소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힘든 것 같다. 유튜브에서 불법 저작물이 공유되고 있고, 유튜브는 광고 수익의 많은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데 '유튜브를 고소'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

**X** 게시한 콘텐츠 때문에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는 사람은 1차적으로 게시자이지 유튜브·아프리카TV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아니다.

저작권법은 'OSP 책임 제한' 조항을 마련하여, 유튜브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유튜브에 1분 동안 올려지는 동영상의 분량은 400시간이 넘는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되는 콘텐츠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적 검열로 발전할 우려도 있어 바람직하지도 않다. 즉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관리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때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시켜주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몇 가지 협조 사항만 준수하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저작권법 제102조, 제103조).

[제4장 나.1] 참조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비아콤 대 유튜브(Viacom v. Youtube) 사건'에서도 미국 법원은 유튜브는 책임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170여 개의 채널과 430여 개의 미디어 제작 관련회사들을 소유한 비아콤은 유튜브에 1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다. 유튜브 사이트에서 비아콤 소유의 프로그램이 무단으로 게재되면서, 대규모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유튜브에 비아콤의 저작물이 게시된 것은 분명하고 이 때문에 이익을 얻은 것도 부정할 수 없었지만, 법원은 결국 유튜브의 손을 들어주었다. 불법저작물이 서비스 공간 내에 존재한다는 일반적 인식만으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모니터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비아콤의 불법저작물을 지적한 통지(notice)들을 유튜브가 그 다음날 모두 차단(takedown)했다는 등의 이유로 유튜브에는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프리카TV에서 '가짜 뉴스'로 나를 비난하는 내용의 방송을 발견했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는지?

**X** 내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다만,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가능성은 남아 있다. 최근 1인 미디어에서 특정인을 비난·비방하는 사례가 많은데, 저작권 문제는 아니지만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심화학습

유튜브의 '노란 딱지'

수익창출로 설정되지 않음

수익형

광고제한 또는 배제

유튜브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 충족 여부에 따라, 광고 수익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으면 수익 창출 \$ 아이콘이 녹색(수익 창출 중)에서 노란색(광고 제한 또는 배제)으로 바뀌고, 광고가 제한되어 수익 창출이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저작권 문제와는 별도로, 경제적 이익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욕설이나 과도한 노출, 특정인을 모욕하는 목적의 콘텐츠, 약물이나 총기 관련 등 유튜브가 제시한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은 11개 주제는 아래와 같다.

- 부적절한 언어
- 폭력
- 성인용 콘텐츠
-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
- 증오성 콘텐츠
- 도발, 비하
- 기분 전환용 약물 및 마약 관련 콘텐츠
- 담배 관련 콘텐츠
- 총기 관련 콘텐츠
-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및 민감한 사건
- 가족용 콘텐츠에 포함된 성인용 콘텐츠



취미로 유튜브에 케이팝(K-Pop) 영상을 올리는 16세 학생이다. '14세가 넘으면' 성인과 똑같이 처벌된다고 들었는데, 몇 년 전에 올린 영상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고소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너무 무섭고 두렵다. 나는 이제 교도소에 가게 되는 것인지?

**X**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와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 각하제도'가 있어서, 형사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질문에 언급한 것처럼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이다. 따라서 14세가 넘었다면, 저작권 침해로 성인처럼 형사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다.

다만 청소년 저작권 고소건수가 급증하고 형사벌로 위협하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건도 일어나자, 청소년에게 형사벌을 제한하는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와 ‘**저작권 침해 고소 각하제도**’ 등이 그것이다.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거나, 침해 행위가 우발적인 경우 조사 없이 각하하고 있다.

#### 4) 소송까진 부담스러운데: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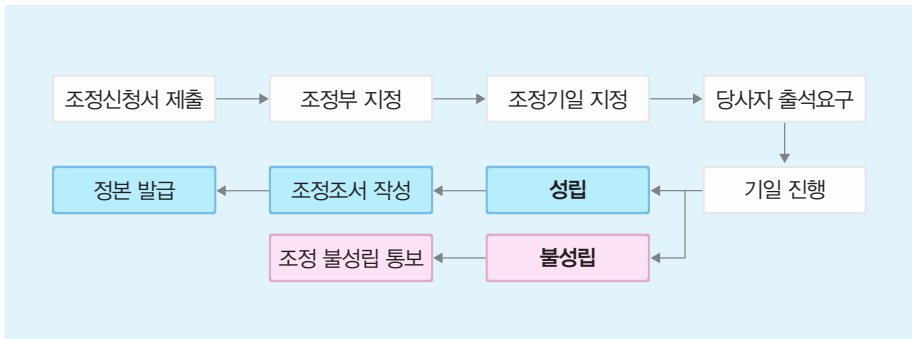
‘최선의 재판보다 최악의 조정이 낫다’는 말이 있다. 재판은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승자가 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법정의 문턱이 높고, 소송 제기의 부담감도 크다. 이럴 때 적합한 제도가 ‘조정’이다.

조정제도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가 저작권 분쟁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 당사자가 분쟁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3조 제1호, 제114조 내지 제118조에 근거하여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비용은 1만 원~10만 원에 불과하고 재판보다 매우 신속하게 진행된다. 조정이 성립하면 법원 확정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생기므로,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조정은 침해자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경고장을 받은 창작자도 활용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제도**

- 오프라인 신청(직접 방문 또는 우편)
  - [우:04323]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
- 온라인 신청
  - 위원회 누리집 접속 후, [업무포털] - [분쟁조정] - [제도안내] - [신청안내]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신청  
(<https://www.copyright.or.kr/kcc/adr/application/online-application/apply.do>)



저작권 분쟁조정 절차

**다. 분쟁의 예방 - 교육, 저작권상담센터**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되려면 저작권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저작권과 관련한 최소한의 지식을 갖추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교육연수원(<https://edu-copyright.or.kr>)을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무료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website with a navigation bar and a main content area titled '저작권 교육의 중심!' (Center of Copyright Education!). Below the title, it says '저작권교육연수원 방문을 환영합니다.' (We welcome your visit to the Copyright Education Institute). The main content is organized into a grid of program cards:

- 원격저작권아카데미** (Remote Copyright Academy): 산입 대학·공공·청소년. Includes courses like '수강신청방법', '수강신청', '교육일정', '동영상 특강', and '회원 탈퇴자 수료증 발급'. Available online.
- 원격교육연수원** (Remote Education Institute): 교원직무연수. Includes '연수안내', '연수일정', and '연수신청'. Available online.
- 원격평생교육원** (Remote Lifelong Education Center): 전문심화 교육(유료). Includes '과정소개', '수강신청방법', '교육일정', and '수강신청'. Available online.
- 청소년 교육 콘텐츠** (Youth Education Contents): 청소년 저작권 교실.
-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It's Coming to You Copyright Education): 저작권 강사 파견 교육. Includes '전국 초·중·고등학교 등에 강사를 파견하는 눈높이 교육 서비스'. Available offline.
- 저작권 체험교실** (Copyright Experience Classroom): 체험 위주 학교교육 운영. Includes '학교에서 교사가 저작권 체험교육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Available offline.
- 저작권 직무능력 향상 교육** (Copyright Job Ability Improvement Education): 기업·단체 제작자 교육. Includes '저작권 기업·단체 제작자 등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Available offline.
-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문의** (Online/Offline Education Inquiry): 학습지원센터.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분쟁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전문가의 조언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 전화 상담: 1800-5455
- 서신 상담: [우: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 내방 상담
  - 진주 본부 ▷ [우: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층 종합민원센터
  - 서울사무소 ▷ [우:04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 종합민원센터
  - 상담 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저작권 문제, 당신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전화상담 1800-5455**

- 1번 저작권 법률상담
- 2번 문화예술인 전문상담
- 3번 저작권 등록상담
- 4번 저작권 불공정거래상담
- 0번 기타문의

 **유형별 자동상담**

 **서신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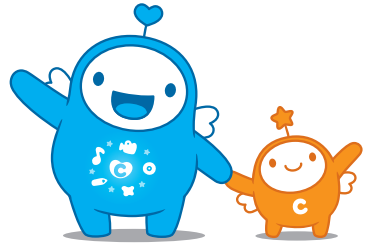
 **게시판 상담**

 **내방 상담**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  
사업 > 저작권상담센터

진주본부  
(우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층 종합민원센터

서울사무소  
(우 04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 종합민원센터



저작권관계자료 2019-05

##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펴낸날	2019년 11월
기 획	신창환(한국저작권위원회) / 남유원(한국저작권위원회)
집 필	최진원(대구대학교)
펴낸곳	한국저작권위원회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1, 2, 5층) (04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9 (케이트웨이타워 5, 16층) 전화 : 1800-5455(대표) 홈페이지 : <a href="http://www.copyright.or.kr">www.copyright.or.kr</a>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나누리(전화 : 055-256-4378)

ISBN 978-89-6120-426-2

ISBN 978-89-6120-038-7 (세트)

